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上尊號의 정치·의례적 기능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강 영 민

2018년 2월

조선시대 上尊號의 정치·의례적 기능 연구

지도교수 김 동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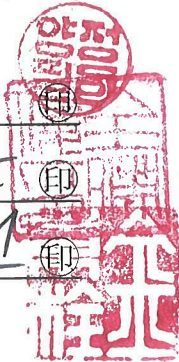
강 영 민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강영민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양정필
위 원 진영관
위 원 김동전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7년 12월

목 차

Abstract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2

II. 상존호의 의례적 기능

- 1. 왕이 아닌 先代 養父의 추존 7
- 2. 왕실 여성의 徽號 10

III. 상존호의 정치적 기능

- 1. 왕이 아닌 先代 親父의 추존 20
- 2. 先王에 대한 加上尊號 및 追上尊號 29
- 3. 現王에 대한 加上尊號 50

IV. 결론 69

참고문헌 74

부록

- 〈부표 1〉 조선시대 왕의 존호 77
- 〈부표 2〉 조선시대 왕후의 존호 86

표 목 차

〈표 1〉 왕 私親의 존호.....	16
〈표 2〉 왕에게 존호를 올린 횟수.....	48

주제어 : 존호, 시호, 존시, 휘호, 예호화, 조선 정치

Abstract

The new era of the Joseon Dynasty began on the basis of ideology of Confucianism. Joseon was managed by the order of Seongrihak(性理學), neo-confucianism, which was the ideological base of kings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led the Joseon Dynasty. One of the primary features was Myeongbunron(名分論), justification, which defined the statue and role of individuals.

Especially in the case of names after king's death, the names were for clarifying the justification of the power of the country and the royal family according to the order of Seongrihak(性理學), neo-confucianism and showing off the legitimacy of the long history of Joseon Dynasty.

Jonho(尊號) was a name for praising king and queen's virtuous achievement. When there was something to congratulate the previous king or queen for the first time, Jonho was dedicated to them. After their death, it was called Chusangjonho(追上尊號) to dedicate Jonho. King's Jonho was usually consist of 4 or 8 Chinese characters and queen's Jonho was 2 Chinese characters. Whiho(徽號) was a kind of Jonho which was dedicated to a queen with Sangsiho(上諡號) after queen's death. When Jonho was dedicated to kings and queens, there was respectful ceremony to offer Ockbo(玉寶) on which Jonho was inscribed and Ockchaek(玉冊) which was consist of Ockgan(玉簡) on which Songdeokmun(頌德文) was carved.

Studies of Jonho which was for paying reverence to kings are generally about analysis of Jonho itself which was offered to kings in Joseon dynasty and the ceremony to dedicate Jonho. However, there is a lack of the study about the ecumenic role of Jonho and the explanation about the change of Jonho with examining the discussion to dedicate Jonho. As Jonho was offered when there were big political changes, some ceremonial occasions and the cases of praising virtuous achievement, it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change of royal authority. In Joseon Dynasty, Jonho was used to express the justification of royal authority, so Kings consistently accepted Jonho to use it as a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king's power even though they sometimes refused Jonho for a reason of Gyeomdeok(謙德), the virtue of modesty.

This study is to stereotype the role of Sangjonho in detail and find out the role of Jonho in realistic politic by specific examples.

First, offering Jonho to previous king was for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Seongrihak, the right of succession was succeeded not only by the bloodline but also by adopted son as the legitimacy of Wicha(位次), the order of rank, was secured. A successor to the throne tried to make sure of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by offering Jonho to his real father or adoptive father. In this process, Kings derived an agreement about the power with the discussion of offering Jonho.

Second, offering Jonho used to rectify a political vacuum resulted from domestic political chaos, resolving postwar situation, etc. In

this case, offering Jonho meant the end of an affair.

Third, Jonho was dedicated to establish the order of rank of a queen, Wangdaebi(王大妃), king's mother, and Daewangdaebi(大王大妃), king's grandmother. As a successor to the throne who was adopted son and a king who died at an early age had increased, there were much more women in the high rank of royal family. Jonho was used to classify the rank of these women in royal family.

Fourth, Jonho was dedicated when there was a happy occasion or an virtuous achievement. Especially, in the case that kings and queens lived a long life, Jonho was dedicated to kings and queens to celebrate their longevity. When a queen lived a long life, the queen became Daewangdaebi(大王大妃), king's grandmother, and received a lot of Jonho.

Finally, Jonho became the names of manners. At first, kings ususally refused to receive Jonho for a reason of Gyeomdeok(謙德), the virtue of modesty. However after the period of Yeongjo reign, Jonho became the names of manners and was offered too frequently. So Jonho had less meaningful and only ritualistic ceremony was left.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Sangjonho and finds out the political role of Jonho by examining many specific examples. Still there is a lot of need to analyze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and the role of Jonho in realistic politic with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many historical records.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조선은 지배사상인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禮治의 시대에 조선시대를 주도한 왕과 양반관료들의 사상적 기반인 性理學 질서에 따라 운영되었다. 성리학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三綱五倫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하는 名分論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사후 호칭의 경우, 성리학 질서에 맞추어 국가와 왕실 권력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유구한 역사적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¹⁾ 왕과 왕후에게 올리는 호칭을 尊號, 徽號, 諡號라고 하며 이때에 존호를 올리는 일을 上尊號라 한다.

尊號는 왕과 왕비의 덕을 칭송하는 호칭이다. 존호는 왕이나 왕후가 慶賀할 일이 있을 때 上尊號하는 것이고, 이후 존호를 더 올리는 것을 加上尊號라 한다. 또한 승하한 후에 올리는 존호를 追上尊號라고 한다. 또 追尊도 하며 復位上尊號하기도 한다. 왕의 존호는 대체로 4자 또는 8자이며 왕후의 존호는 2자이다.

徽號는 왕후가 승하한 후에 諡號와 함께 올리는 존호이다. 존호를 올릴 때 공덕을 기리는 頌德文을 玉簡에 새겨 칠한 玉冊과 존호를 새긴 玉寶를 올리는 의식을 정중하게 거행하였다.²⁾

1) 신명호, 「조선시대 국왕호칭의 종류와 의미」, 『역사와 경계』 52집, 부산경남사학회, 2004, 48-52쪽.

2) 신명호, 「조선시대 국왕호칭의 종류와 의미」, 『역사와 경계』 52집, 2004, 56-60쪽.

존호나 휘호를 올리는 횟수가 왕권이 강력함과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존호가 왕과 왕비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존호가 왕의 권력 표현과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상존호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겸덕을 이유로 왕이 수차례 거절할 때 재청을 하면서 신하들은 왕의 공덕을 치하하며 위대함에 대한 극찬하여 이에 대해 사관이 비판하기도 하였다.

예치의 시대에 왕을尊崇하여 올리는 존호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의 왕이 받은 존호 자체와 존호를 올리는 의식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당시 현실정치에서 존호를 올리는 과정상 오간 구체적인 논의를 살펴며 그 사례를 유형화하여 상존호의 정치적·의례적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연구는 부족하다. 존호는 주로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나 경사나 공덕을 치하하는 경우에 올렸기 때문에 왕권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예치사회인 조선에서 존호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표출하기도 하며 왕은 謙德을 이유로 거절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존호를 수용하는 등 왕의 권력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존호를 통한 권력의 표현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를 유형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례를 분석하여 상존호의 정치적, 의례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조선시대의 왕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 아래서 諸侯王이면서 조선의 국왕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국왕의 호칭은 유교사회의 호칭의 의미를 보여주고 국왕의 위치를 나타내며 양반의 호칭과는 다르다. 특히 사후에 받는 호

칭들은 생전의 행적과 공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와도 관계가 깊었고 왕의 지위를 상징하였다. 또한 호칭을 올리는 과정을 의례로 표현하여 儀軌에 그 기록을 남겨두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선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존호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국왕의 호칭의 의미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신명호에 의하면, 조선시대 국왕의 호칭은 생후에는 이름으로 기약하고 사후에는 또 이름으로 평가하는 유교적 인생관의 표현이다. 冠禮의 전과 후에 얻게 되는 字, 名 등은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기약하는 이름, 自號는 사회적·국가적 책무를 스스로 기약하는 이름, 왕세자와 조선국왕 등의 봉작명은 세습 군주로서의 국가적 책무를 기약하는 이름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왕이 이러한 호칭을 받을 때에는 그 의식을 국가적 행사로 거행하였다. 다시 말해 왕으로서의 책무에 합당한 이름을 짓고 그에 상응하는 의례 절차를 보여주기 위해 국왕의 호칭을 정하였다고 분석했다.³⁾

둘째, 왕의 존호를 통하여 정치적인 상황을 분석한 연구이다. 임민혁은 고종과 순종이 받은 묘호, 시호, 존호와 추송의례를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고종대는 대한제국 성립 전과 후를 비교하고, 순종대는 한일합병 이후 대한제국 황실의 지위의 변화를 호칭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서구 근대사상의 유입으로 전통 국가의례가 변화하고 대한제국 이후 황제국가로서의 격에 맞는 추송이 이루어졌다.⁴⁾ 정해득은 사도세자의 존호 추상과 태실의 가봉, 국왕 추송 등 정조의 사도세자 현창사업을 통해 정조와 후대 국왕들이 사도세자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정리하였다.⁵⁾ 그리

3) 신명호, 「조선시대 국왕호칭의 종류와 의미」, 『역사와 경계』 52집, 2004, 47-67쪽.

4) 임민혁, 「고·순종의 호칭에 관한 이론과 왕권의 정통성」, 『사학연구』 78호, 한국사학연구회, 2005.

5) 정해득, 「사도세자 현창의 전개과정」, 『역사문화논총』 8호, 역사문화연구소, 2014.

고 이현진은 원종 추승의 배경과 추승론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추승론자들과 왕과 연결된 세력을 설명하였다.⁶⁾ 대체적으로 특정시기의 상존호를 당시의 정치상황을 통해 해석하였다.

셋째, 존호를 올리는 의례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된 가운데, 그중 이 의례에 사용되는 用樂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가 주목된다. 김종수는 大殿, 中殿, 王大妃, 大王大妃의 존호 의례 정비과정과 음악에 대해 정리하였다. 領議政이 대전과 중전의 존호 의례를 주관한 조선 초부터 영조대(1724~1776)까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대전과 중전에게 각각 따로 존호를 올렸고, 대전 존호 의례는 外政殿 한 곳에서 행해졌지만 중전 존호 의례는 두 곳에서 나누어 행해졌음을 밝혔다. 이 시기에 대전 존호 의례에서는 殿後鼓吹와 軒架의 음악이 연주되었다. 단, 雅樂을 연주한 1457년(세조 3)에는 전후고취 없이 헌가만 연주되었다. 과도기를 거친 이후 1772년(영조 48)부터 世子가 존호 의례를 주관하게 되었고, 세자가 없어서 부득이 영의정이 주관한 1863년(철종 14)과 1873년(고종 10)에도 대전 존호 의례에서는 전후고취와 헌가의 음악이 연주되었다. 영의정이 의례를 주관하던 것에서 세자가 주관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세자가 大統의 계승자이자 왕의 버금가는 자로서 百官을 이끌어갈 존재임을 보다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⁷⁾

넷째, 존호 의례를 기록한 儀軌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의례는 행사를 치르고 나서 훗날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행사 후 施賞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면 玉은 어디서 썼

6) 이현진, 「인조대 원종추승론의 추이와 성격」,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99.

7) 김종수, 「조선시대 大殿·中殿·尊號儀禮의 변천과 用樂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49호, 한국음악학회, 2012, 143-179쪽.

_____, 「조선시대 대왕대비·왕대비 尊號儀禮의 정비과정과 用樂의 변천」, 『한국음악사학보』 52호, 한국음악학회, 2012, 5-37쪽.

_____, 「尊號·尊崇·上號都監儀軌 명칭에 대한 소고」, 『온지논총』 12호, 온지학회, 2005, 159-187쪽.

고, 어떤 匠人이 어떤 도구를 써서 일했는지, 품삯은 얼마를 주었는지, 玉冊과 金寶를 운반할 때 몇 명의 差備와 말이 동원되었는지, 어떤 복색을 했고 儀仗은 어떠했는지, 金寶의 치수와 모양은 어떠했는지 등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놓았다. 따라서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히 살필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된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존호·존숭도감의례는 56종 212건에 이른다. 조선 초기부터 존호를 올렸고 이에 대한 의례가 있었지만 임진왜란으로 소실되는 바람에, 1604년(선조 37)의 『[宣祖]再尊號都監儀軌』가 현존하는 『존호·존숭도감의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그런데 표제가 단순히 『존숭도감의례』, 『존호도감의례』, 『상호도감의례』로 되어 있어 각 의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규장각과 장서각 도서목록에서는 존호를 받는 주체를 표기하여, 의례의 특징을 구분하고 있다.⁸⁾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존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의례와 결부하여 이루어졌고, 오히려 의식의 과정에 치중하여 설명되어 왔다. 또한 국왕 호칭의 국가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상존호에 대한 상황은 특정시기에 국한시켜 정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상존호를 올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상존호 상황의 의미 분석을 통해 정치적, 의례적 기능을 파악하여 유형화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존호를 올리는 의식 자체가 의례였으며 이는 조선의 정치 이념인 유교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상존호가 하나의 의례로 정형화된 의식에 따라 선대의 예를 참고하여 올렸다. 그러나 존호를 올리는 것이 정치적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왕과 왕후의 공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의 정치

8) 김중수, 「왕대비 加上尊號儀의 의례와 음악: 정조대(1776~1800) 『尊號都監儀軌』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47호, 한국국악학회, 2011, 71-107쪽.
 _____,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다른 사건과 결부시키거나 자신의 의견에 왕의 동의를 얻어 정권을 주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왕도 추존을 하여 존호를 올림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정당화하였다. 이처럼 상존호는 왕과 왕후의 즉위, 장수 등을 경하하는 의례적 기능 뿐 아니라 정치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왕과 왕후들의 상존호를 유형화하고 문헌 연구 방법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하여 존호의 기능을 해석했다. 또한 조선시대 왕과 왕후의 존호를 설행시기별로 표를 통하여 정리하고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설행이유와 당시의 정치적 상황, 상존호를 결정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존호의 기능을 유형화하였다.

상존호의 정치·의례적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상존호의 의례적 기능과 관련하여 첫째, 왕이 아닌 先代 중 養父에게 존호를 올린 경우, 둘째, 왕실 여성에게 휘호를 올린 경우이다. 다음으로 상존호의 정치적 기능과 관련하여 왕이 아닌 先代 중 親父에게 올린 경우, 선왕에게 올린 가상존호 및 추상존호를 올린 경우, 현왕에게 올린 추상존호를 올린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존호를 올리는 것이 단순한 의례적인 기능 뿐 아니라 정치적 기능으로서 왕과 신하의 권력관계, 정치적 변화, 왕위 계승의 정당성, 성리학적 예학의 흐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상존호의 의례적 기능

1. 왕이 아닌 先代 養父의 추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先代에 대한 존호를 통해 의미 부여를 하여 왕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천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초, 중기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왕위를 계승한 왕들은 강력히 선왕에 대한 존숭을 추진하였다. 왕위의 계승에서 선대에 대한 존숭은 예치사회에서 본인의 지위 격상을 선대의 공덕으로 돌리는 것으로 당연한 의례 행사 인 것이다.

그런데 왕위 계승자가 양자로 입적한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조선시대에 왕이 후대에 의해 추존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건국 시조의 조상⁹⁾을 추존한 경우, 왕위 계승자가 반정을 통해 즉위하거나 계통상 養子로 입적한 뒤 즉위하여 親父 혹은 養父를 추존한 경우이다. 친부와 양부를 추존하여 존호

9) 태조 이성계의 4대조의 경우 건국 이후 정통성 확립을 위하여 각각 목왕, 익왕, 도왕, 환왕으로 추존하였다. 건국 후 왕이 先祖에 대한 추존을 할 경우 왕의 傳敎를 통해 예조에서 논하여 중국의 격식에 따라 논의를 거쳐 존호를 올렸다.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능을 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송나라 乾德 원년(963)에 宣祖의 安陵을 改葬한 『문헌통고』의 예를 들어 조회를 폐하고 음약을 금하는 등의 방법을 예조에서 논의하였다. 태종 11년(1411)에는 예조에서 송나라 제도와 홍무예제, 당나라 제도에 의하여 종묘의 축문 격식을 갖추어 올렸다. 이후 태종 11년에 종묘의 4실에 존호를 가상하고 묘호를 올렸다. 존호를 올리기 위한 별도의 기관 설치나 신료들의 논의에 대한 기록은 없고 왕으로 존숭하고 종묘에 안치한 뒤 신료들이 책호문을 올리고 존호를 가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追上四代尊號: 高祖考曰穆王, 妣李氏曰孝妃; 曾祖考曰翼王, 妣崔氏曰貞妃; 祖考曰度王, 妣朴氏曰敬妃; 皇考曰桓王, 妣崔氏曰懿妃”;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8월 25일 기미, “議改葬之服. 禮曹啓: 謹按《文獻通考》”;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윤12월 1일 정사, “禮曹上祝文式. 啓曰: 宗廟尊號玉冊, 依宋制及《洪武禮制》, 書維永樂九年歲次辛卯, 至祭享祝文則依唐制, 書維太歲辛卯, 有此不同. 右祝文格式, 亦依玉冊例. 從之.”;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4월 22일 임자) “加上宗廟四室尊號: 穆王諡仁文聖穆大王, 廟號穆祖, 孝妃諡孝恭王后; 翼王諡康惠聖翼大王, 廟號翼祖, 貞妃諡貞淑王后; 度王諡恭毅聖度大王, 廟號度祖, 敬妃諡敬順王后; 桓王諡淵武聖桓大王, 廟號桓祖, 懿妃諡懿惠王后” .

를 올리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 조선시대의 왕위 계승과정에서 왕의 후사나 형제가 없어서 계승자가 없어 종친 중에서 선택하여 양자로 입적한 후 계승한 경우이다. 양부는 宗統이기 때문에 대부분 세자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때에는 효의 개념으로 존호를 의례적으로 올린 것이다. 따라서 왕이 아닌 선대 중 친부에게 존호를 올린 경우는 정치적 기능에서 살펴보고 먼저 왕이 아닌 선대 중 양부에게 올린 경우를 살펴보겠다.

왕위 계승자가 養父를 추존한 경우로는 정조의 양부인 진종과 헌종의 양부인 문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왕위 계승자가 宗統의 養子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즉위와 함께 선왕을 존송하며 계통을 이어받으려는 것이다.

효장세자는 영조의 맏아들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10세에 죽어 이복동생 사도세자가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즉위하지 못하고 죽자 정조가 효장세자의 양자가 되어 대통을 이었다. 정조는 영조의 유지에 따라 정조가 즉위한 해에 진종대왕으로 추송하고 존호를 ‘溫良睿明哲文孝章’이라 하고 능호를 ‘永陵’이라 하고 殿號를 ‘延福’으로 의논하여 정하였다.¹⁰⁾

또한 문조는 어머니가 순원왕후 김씨로 순조 12년(1812) 왕세자에 책봉된 효명세자이다. 1819년 조만영의 딸을 맞아 가례를 올리고 헌종을 낳았다. 1827년 대리청정을 하였지만 수행한 지 4년 만에薨하였다. 헌종이 즉위한 뒤에 ‘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의 존호를 받고 익종으로 추존되었다.¹¹⁾ 대한제국이 출범한 뒤에 고종에 의하여 다시 ‘文祖翼皇帝’로 추

10)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3월 19일 경인, “庚寅/遵英宗遺旨, 追崇孝章世子爲眞宗大王, 孝純賢嬪爲孝純王后, 議定眞宗諡曰溫良睿明哲文孝章, 王后諡曰徽貞賢淑孝純, 陵曰永陵, 殿曰延福. 召見議諡諸臣, 命以昌慶宮 孝純廟舊魂殿, 爲延福殿, 入廟前奉安, 告訃使行兼請追崇上號, 追崇都監, 合設於國葬都監”.

11) 『헌종실록』 2권 헌종 즉위년 11월 19일 경진, “庚辰/議大行大王諡曰: 文安武靖憲敬成孝大王魂殿曰孝成, 廟曰純宗, 陵曰仁陵, 追崇孝明世子諡曰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 廟曰翼宗, 神殿曰孝和, 陵曰綏陵.”,
『헌종실록』 2권 헌종 1년 5월 19일 정축, “翼宗大王追崇後, 上御仁政殿, 頒教中外, 大赦”.

존되었다.¹²⁾ 특히 고종은 문조에게 대왕대비의 회갑, 칠순 등의 경하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고종 3년(1866), 고종 4년(1867), 고종 12년(1875), 고종 13년(1876), 고종 15년(1878), 고종 19년(1882), 고종 23년(1886), 고종 27년(1890), 고종 29년(1892), 고종 38년(1901) 등의 시기에 존호를 올렸다.¹³⁾

진종과 문조 모두 세자에 책봉되어 양자를 들였으나 일찍 죽어 왕이 되지 못하였다. 왕위 계승자들은 성리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位次 계승으로 확고한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존한 것이다. 정조의 경우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신의 親父의 추존으로 혈통상의 정통성까지 확립하였다. 그러나 헌종의 경우 어린나이에 즉위한 이후 외척이 시달리며 자신의 권력기반을 장악하지 못하고 양부를 추존하여 왕위 정통을 지키고자 하였다.

자신이 養子로 입적하여 왕위 계승한 이후 養父에 대한 존숭은 순조로

-
- 12)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7일 양력, “翼宗大王廟號望‘文祖’ 【經天緯地曰‘文’】”.
- 13)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4월 3일 신묘, “遣領議政趙斗淳, 攝上翼宗大王, 憲宗大王, 孝顯王后, 哲宗大王追上尊號冊寶于太室”; 『고종실록』 4권 고종 4년 1월 9일 갑자, “詣仁政殿, 親上翼宗大王追上尊號, 大王大妃殿加上尊號, 冊寶, 受賀, 頒赦”;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11월 11일 갑신, “追上尊號都監: 翼宗大王玉冊文製述官鄭基世, 書寫官金炳德, 樂章文製述官申錫禧, 金寶篆文書寫官曹錫雨; 加上尊號都監: 大王大妃殿玉冊文製述官金學性, 書寫官趙秉昌, 樂章文製述官金世均, 玉寶篆文書寫官金輔根”; 『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11월 26일 기미, “賓廳以翼宗大王追上尊號望‘啓天建統神勳肅謨’; 大王大妃加上尊號望‘隆穆’啓”;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11월 11일 무진, “賓廳議啓, 翼宗大王追上尊號望‘乾大坤厚廣業永祚’, 大王大妃殿加上尊號望‘壽寧’”; 『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11월 29일 갑술, “純祖大王追上尊號, 純元王后追上尊號, 翼宗大王追上尊號, 大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 合設舉行, 政官牌招開政, 都監堂郎差出”;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1월 13일 을미, “庸仲祝岡之微忱, 爰稽鏤玉之彝典, 將以翼宗大王追上尊號, 大王大妃加隆尊號, 茲於亞歲令辰, 召見大臣, 宗伯矣”; 『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11월 27일 병진, “翼宗大王追上尊號, 大王大妃殿加上尊號, 謹稽彝典, 要伸情禮, 卿等以爲何如?”; 『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 10월 17일 계축, “追上尊號都監. 翼宗大王玉冊文製述官宋近洙, 書寫官金壽鉉, 樂章文製述官趙康夏, 金寶篆文書寫官金弘集, 神貞王后玉冊文製述官金在顯, 書寫官趙敬夏, 金寶篆文書寫官趙秉世, 啓差”; 『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 7월 25일 병술, “詣勤政殿, 親上加上尊號冊寶于王大妃殿, 親受王世子上加上尊號冊寶”;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2월 26일 양력, “上號都監奏差文祖翼皇帝玉冊文製述官金炳國, 書寫官趙秉鎬, 樂章文製述官李淳翼, 玉寶篆文書寫官李景應...”.

왔다. 세자에서 왕으로 즉위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왕으로 추존하였다. 진종과 문조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들은 왕위 정통성을 이어받은 상태에서 즉위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큰 반발 없이 추존되고 의례적 행사로서 존호를 올렸다. 이처럼 양부 혹은 친부를 추존하고 상존호하는 과정에서 신료들과의 논의를 통해 現王의 권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존호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왕통을 이어가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2. 왕실 여성의 徽號

왕실 여성들에게도 휘호를 올렸다. 휘호는 왕비가 된 이후부터 받게 되었다.¹⁴⁾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의 즉위나 장수에 대한 경하의 의미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의 휘호를 올리기도 하였다.¹⁵⁾ 왕실 여성에게 올리는 휘호는 단순히 의례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왕이 즉위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왕실어른이 政事의 전면이 등장하고 왕실 어른들이 많아지면서 존호를 통해 공덕 치하를 통한 권력 안정화나 위계질서 정리 등의 역

14) 조선시대에 公主, 翁主는 출생하자마자 작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봉작되기 이전까지 이름으로 부르다가 일정 연령이 되어 작호를 받고 자신의 공식 호칭은 某公主, 某翁主라 불렀다. (차호연, 「조선 초기 公主·翁主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논문, 2013, 12쪽.)

15) 존호를 올리는 것 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후궁으로 격하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덕왕후이다. 신덕왕후의 소생 의안대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죽었다. 이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의안대군이 제거되면서 후궁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이후 신덕왕후의 전례문제가 처음 논의된 시기는 선조 연간이다. 1581년(선조14) 11월 李珣와 韓浚謙의 청원으로 시작되어 신덕왕후의 시호와 존호를 복귀시키고 종묘에 祔廟할 것을 청원하였다. 부모 여부에 대한 논쟁이 근 3년 동안 26차례나 이어졌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후 1669년(현종10) 1월 송시열에 의해 다시 신덕왕후의 부모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송시열의 건의 후 三司와 옥당, 성균관 유생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남인 측까지 가세하자 현종은 복위를 윤허하고 그해 10월 1일 종묘에 부모하였다(황정연, 「조선 태조비 神德王后 貞陵의 조성과 封陵 고찰」, 『서강인문논총』 46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253-254쪽).

할을 한 것이다. 또한 왕의 생모였으나 왕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경우 母以子貴의 명분으로 특별히 사당에 모신 만큼 그들에 대한 존숭과 상존호가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대체로 성년이 된 이후에 왕으로 즉위하였으나 어린 나이에 즉위하는 경우¹⁶⁾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 혹은 왕대비, 왕비가 발을 치고 왕과 함께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이 나타났다. 그러나 숙종의 경우 14세에 즉위하였음에도 수렴청정을 하지 않았고¹⁷⁾ 철종은 19세에 즉위하였으나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수렴청정을 한 왕후는 세조비 정희왕후, 중종비 문정왕후, 명종비 인순왕후, 영조비 정순왕후, 순조비 순원왕후, 익종비 신정왕후로 볼 수 있다.¹⁸⁾

정상적인 정치형태가 아닌 임시방편으로 국사를 이끌어 간 수렴청정에 대한 공덕을 치하하여 휘호를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수렴청정의 공으로 올린 것은 순원왕후 때 두 차례가 전부이다.[<부표 2> 참조] 이는 수렴청정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대신들의 만류하고 다시 대왕대비 혹은 왕대비가 강하게 親政을 청하면서 수렴청정의 부당함에 대하여 스스로 강변하였기 때문이다.¹⁹⁾ 그리고 災變이 일어난 것을 수렴청정의 탓으로 돌리는 등²⁰⁾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철종대에 이

16) 19세 이전에 즉위한 왕은 성종(13세), 명종(12세), 선조(16세), 숙종(14세), 순조(11세), 헌종(8세), 고종(12세)이다.

17) 숙종대에 수렴청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임혜련은 어린나이에 영특하였고, 적장자로서 일찍부터 왕위를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있었으며, 10세에 관례를 치르고 11세에 혼인을 해 당시 주자가례의 보급으로 혼례를 치르면 성인으로 인식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며, 당시 대왕대비 장렬왕후 조씨가 남인 성향이고 왕대비 명성왕후 김씨가 서인성향이 강하여 서인, 남인의 대립정국이 수렴청정을 주청하지 않은 요인이라고 하였다. (임혜련, 「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정비과정」, 조선시대사학보 제27집, 조선시대사학회, 2003, 40쪽).

18) 수렴청정에 대해서는 임혜련, 「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정비과정」, 조선시대사학보 제27집, 조선시대사학회, 2003. 참조

19) 『성종실록』 63권 성종7년 1월 13일 무오, “予百思之, 予之處事必非, 故事事指我, 無所暴白. 凡遇水旱, 恐由于我, 廢寢者非一日. 年前時氣尤不順, 予之預政, 尤所嫌焉. 茲具辭謝之情, 以告卿等” .

20)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5월 2일 을축, “災異之變, 垂簾所致” .

르러서야 수렴청정과 관련하여 존호를 받은 것은 세도정치로 외척세력이 강력해지면서 대왕대비 혹은 왕대비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하는 세력이 약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왕비는 배우자인 왕이 사망한 이후에도 살아 있을 경우 존승되어 왕대비가 되고 3대의 왕을 모시게 되면 대체로 대왕대비가 되었다. 그러나 왕위 계승자가 양자인 경우가 많아지면서 왕후의 계열도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후대로 가면서 왕이 어린나이에 즉위하여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왕실에 왕후, 왕대비, 대왕대비 등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大妃’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때 왕후, 왕대비, 대왕대비가 되는 것을 축하하며 휘호를 올렸다. 따라서 왕대비 혹은 대왕대비는 특히 휘호를 많이 받았다. 또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실의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가 많아지고 장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영조 이후 존호가 많아지면서 많게는 정식 시호 글자 수가 56개인 경우도 있었다.²¹⁾ 또한 ‘大妃’ 만으로는 위계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대왕대비 이상 오를 수 없는 경우에도 휘호를 사용하여 존승의 예를 표현하였다.

대왕대비를 2대에 걸쳐 역임한 사람은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헌종, 숙종대), 순조의 정비인 순원왕후(헌종, 철종대), 문조의 정비 신정왕후(철종, 고종대) 총 3대이며 이중 손자와 증손자가 왕이 된 경우는 장렬왕후뿐이다. 또한 손자가 왕이 아님에도 대왕대비가 된 경우는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 순조의 정비 순원왕후, 문조의 정비 신정왕후

21) 신정왕후는 효명세자(추존 익종)의 빈으로 1834년 그 아들(헌종)이 순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름에 따라 왕대비가 되었고, 순원왕후 승하 후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흥선대원군의 차남을 철종의 後嗣로 삼은 분인데, 육순, 회갑, 칠순, 팔순 및 母臨 40주년, 50주년, 혼례 60주년 등의 이유로 생전에 22개나 되는 존호를 받았다. 김종수, 「조선 시대 대왕대비, 왕대비 존호의례의 정비과정과 용악 변천」, 한국음악연구 52호, 한국국악학회, 2012, 13쪽, 신정왕후의 정식 존호는 ‘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禧康顯定徽安欽倫洪慶泰運昌福熙祥懿謨睿憲敦章啓祉景勳哲範神貞王后’로 조선 왕후 가운데 가장 길다.

다. 문정왕후는 인종이, 인원왕후는 경종이 왕에 즉위하면서 왕대비가 되었다. 양자인 인종, 경종뿐 아니라 문정왕후의 친자인 명종, 인원왕후의 영조가 아들이어서 왕대비에 머물러야 하나 대왕대비가 되었다. 이는 인종의 정비인 인성왕후가 명종이 즉위하면서 왕대비가 되고 경종의 계비인 선의왕후가 영조가 즉위하면서 왕대비가 되면서 시어머니인 문정왕후와 인원왕후가 고부간의 관계 설정으로 인하여 대왕대비가 된 것이다. 반면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는 손자인 정조가 즉위하였을 때 왕대비였다가 증손자인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대왕대비가 되었다. 앞서 2대에 걸쳐 대왕대비가 된 순원왕후와 정순왕후 둘 다 아들이 왕에 오르지 못하고 일찍 죽고 손자가 즉위한 이후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였다. 이때 순원왕후도 대왕대비로 추존되었으나 정순왕후는 정조대에도 왕대비였다.

대왕대비에서 더 이상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휘호로서 존송하였다.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에게 한 해에 두 차례나 휘호를 올린 이유는 중종과 인종이 한 해에 승하하였기 때문이다. 명종 즉위로 문정왕후가 대왕대비가 되고 중종을 부묘하면서 명종 2년 ‘聖烈’ 을 올렸는데 같은 해에 인종을 부묘하게 되자 대왕대비 이상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휘호 ‘仁明’ 을 올렸다. 인조 계비인 장렬왕후도 1676년 손자며느리인 현종비 명성왕후가 왕대비가 되면서 ‘徽獻’ 이라는 휘호를 올렸다. 순조비 순원왕후에게는 1851년 ‘正烈’ 을 올렸고 신정왕후도 ‘弘聖’ 이라는 휘호를 올렸다. 이처럼 존호를 올림으로서 지위를 높인 것과 같이 존송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왕비계열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후궁인 왕의 私親에 대한 존호를 살펴보겠다. 조선시대에는 정비 소생의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문종, 단종, 인종, 현종, 숙종뿐이며 대부분 서자출신이다. 이 중에서도 후궁 출신인 왕의 생모는 12명이다.²²⁾ 12명의 私親은 폐위된 왕의 생모, 생전 혹은 사후에 왕비로 존송된

경우, 혹은 왕비로 추존되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폐위된 왕의 생모는 폐비 윤씨와 공빈 김씨이다. 폐비 윤씨는 성종의 계비이자 연산군의 생모이다. 폐비 윤씨는 성종이 첫 번째 왕비였던 공혜왕후가 죽고 2년 뒤 왕비로 책봉하였다.²³⁾ 책봉 뒤 4개월 후 연산군이 태어났고 바로 원자로 책봉되었다.

공빈 김씨도 마찬가지로 선조의 후궁이었으나 산후병으로 27세에 사망하였다. 광해군은 즉위 후 공빈 김씨를 추존하여 ‘慈淑端仁恭聖王后’로 삼았으나 광해군이 반정으로 물러나고 인조가 즉위한 뒤 존호를 삭탈하고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다.²⁴⁾ 이처럼 아들이 폐위되면 당연히 폐비가 되거나 후궁으로 강등되었다.

후궁 출신이나 왕비가 된 경우는 현덕왕후 권씨, 정현왕후 윤씨, 장경왕후 윤씨가 있다. 현덕왕후 권씨는 문종의 추존 왕후이자 단종의 생모이다. 후궁으로 입궁하였으나 문종의 첫째 부인 휘빈 김씨와 둘째 부인 순빈 봉씨가 폐출되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²⁵⁾ 그러나 세자빈으로 책봉된 지 4년 후 단종을 출산하고 2일 후에 사망하였다.²⁶⁾ 따라서 사후에 문종이 즉위한 직후 현덕 왕후로 존승하고²⁷⁾ 아들인 단종이 즉위하고 2년 후에 ‘仁孝順惠’라는 휘호를 더하여 올렸다.²⁸⁾ 문종이 현덕 왕후로 추승하면

22) 현덕왕후 권씨, 폐비 윤씨, 정현왕후 윤씨, 장경왕후 윤씨, 공빈 김씨, 인빈 김씨, 희빈 장씨, 숙빈 최씨, 정빈 이씨, 영빈 이씨, 수빈 박씨, 엄귀비이다. 이 중 인빈 김씨는 원종, 정빈 이씨는 진종, 영빈 이씨는 장조의 私親으로 추존 왕의 생모이다.

23)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9일 기묘, “齋敎命冊寶, 封淑儀尹氏爲中宮”.

24) 『광해군일기』 중초본 26권, 광해 2년 3월 29일 을사, “追尊私親恭嬪金氏爲慈淑端仁恭聖王后”; 『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5월 21일 경자, “光海既廢, 金氏亦追廢爲嬪, 遂革陵號, 而孟之墓, 猶未有封表. 其後孫趙守彝等上疏, 請封墓, 上許之, 仍命毀恭嬪墓石物之違制者”.

25)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8일 기축, “前者世子嬪奉氏廢黜之後, 大臣以爲: ‘嬪位不可久曠, 宜妙選淑德, 早定配匹.’ (중략) 然權氏已生女, 故於義當立”.

26)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24일 무오, “王世子嬪權氏卒”.

27)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7월 8일 경술, “追崇顯德嬪 權氏, 爲王后 (중략) 授爾玉冊, 金寶, 追贈爲顯德王后”.

28)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일 경술, “以世祖爲進冊使, 右議政韓確爲進寶使, 奉

서 성품을 칭찬하며 짧은 수명을 아쉬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추존되었던 것이다. 단종 때 존호는 의정부, 육조 등에서 계청하여 따르는 형태를 보인다. 정현왕후 윤씨는 성종의 후궁이었으나 폐비 윤씨를 이어 세 번째 계비가 되었다.²⁹⁾ 왕비의 자리에 올랐을 때 후에 종종으로 왕위에 오르는 진성대군을 낳았다. 장경왕후 윤씨는 종종반정 공신인 윤여필의 딸로 종종의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종종이 즉위한 후 본처가 쫓겨나고 왕비가 되었다. 세 경우에서 보이듯 대체로 사후에 왕비로 추존된 것은 현덕왕후 뿐이고 후궁에서 간택되어 계비가 되어 왕위 계승자의 생모가 되는 것이다.

반면 왕의 생모임에도 왕후에 오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종묘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신주를 모셨는데 이를 칠궁이라고 한다.³⁰⁾ 왕위 계승 후에는 존숭을 거치게 되는데 조선 후기 칠궁은 추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생모에 대한 별도의 신주를 만들어 모신 만큼 독립적인 지위로 先后의 계보와는 다른 왕의 생모 중심의 계보를 만든 것으로 보아 독자적 지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칠궁이라는 독자적 지위는 생모를 높임으로써 왕의 지위를 높이하고자 한 것이다.³¹⁾ 이들에 대해서는 왕위를 이은 아들이 시호를 올려 존숭하는 모습을 보인다. 후궁 출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계통을 형성해 이를 존숭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다음의 ‘<표 1> 왕 사친의 존호’ 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冊寶詣景禧殿，加上顯德王后尊號” .
 29) 『성종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8일 갑신, “上, 御仁政殿, 百官四拜訖 ° 上, 以封王妃敎命” .
 30) 권용란, 「조선시대 왕실 조상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3, 129쪽.
 31) 母以子貴 명분은 『春秋』에 나오는 구절로 아들은 어머니에 의해 귀해지고, 어머니는 아들에 의해 귀해진다는 것이다. (권용란, 「조선시대 왕실 조상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3, 105쪽.)

<표 1> 왕 私親의 존호³²⁾

후궁(제왕)	즉위한 아들	존호설행시기	존호	비고
현덕왕후 권씨(문 종)	단종	단종 2년	仁孝順惠顯 德王后	추존왕후
폐비 윤씨(성종)	연산군	연산군 10년	齊獻王后	왕비책봉 성 종 7년
정현왕후 윤씨(성 종)	중종	연산군 3년	慈順	왕비책봉 성 종 11년
		연산군 11년	和惠	
		중종 25년	昭懿欽淑貞 顯王后	
공빈 김씨(선조)	광해군	광해군 2년	慈淑端仁恭 聖王后	존호 삭탈 (인조 8년)
*인빈 김씨(선조)	원종	영조 31년	敬惠	諡號
장경왕후 윤씨(중 종)	인종	중종 10년	淑愼明惠	-
		명종 2년	宣昭懿淑章 敬王后	
*희빈 장씨(숙종)	경종	경종 10년	玉山府大嬪	-
*숙빈 최씨(숙종)	영조	영조 29년	和敬	諡號
*정빈 이씨(영조)	진종	정조 2년	溫僖	諡號
*영빈 이씨(영조)	장조	영조 41년 → 고종 36년	義烈 → 昭裕	諡號
*수빈 박씨(정조)	순조	순조 22년	顯穆	諡號/ 徽慶綏妃, (대한제국 추존)
*엄귀비(고종)	영친왕	-	-	皇貴妃 (1903년)

* 『조선왕조실록』에서 재정리함.

* 7궁인 경우 ‘*’ 표시를 함.

32) 사후에 왕비로 추존되었거나 생전에 왕위로 즉위한 경우, 생전에 왕비였으나 폐출된 경우 칠궁에서 빠지게 되었다.

또한 왕후의 長壽에 대해 그 기간에 따라 존호를 올렸다. 왕은 장수하더라도 정치변란으로 인하여 선양하여 상왕이 되거나 폐위되기도 하였으므로 장수가 곧 재위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린나이에 즉위한 경우 수렴청정을 겪기 때문에 왕이 실제로 政事를 돌보는 기간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왕의 경우에는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존호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現王에게 이러한 이유로 존호를 올리는 것은 영조를 제외하고 드물었다. 상존호의 질서가 조선 초기 혼란하다가 점차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성리학적 윤리 속에서 껌덕을 보이기 위해 초반에 존호를 받기를 꺼려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왕후의 경우 대체적으로 60세 이상 장수할 때 재위기간이 길었으며 그에 따라 왕비, 왕대비를 거쳐 대왕대비까지 지위가 격상되기 때문에 이를 경하하기 위해 대체로 휘호를 많이 받았다. [<부표 2> 참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변란이 있거나 스스로 사양하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는 지위 격상에 대한 경하의 의미로 휘호를 받은 것이다. 60세 이상으로 장수한 경우는 조선시대 건국시조의 추존비를 제외한 총 47명 중 17명으로 단종비 정순왕후, 세조비 정희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성종비 정현왕후, 연산군부인 폐비 신씨, 중종비 단경왕후와 문정왕후, 인종비 인성왕후, 인조비 장렬왕후, 숙종비 인원왕후, 영조비 정성왕후와 정순왕후, 장조비 헌경왕후, 정조비 효의왕후, 순조비 순원왕후, 문조비 신정왕후, 헌종비 효정왕후 이다. 그러나 이들 중 재위기간이 길고 존호를 많이 올린 경우는 세조비 정희왕후, 인조비 장렬왕후, 숙종비 인원왕후, 영조비 정성왕후와 정순왕후, 순조비 순원왕후, 문조비 신정왕후, 헌종비 효정왕후 등 8명이다. 물론 왕후에게도 왕과 마찬가지로 영조 이후 조선후기에 이르면 많은 존호를 올렸다.

재위기간이 길면서 장수하였는데도 재위 왕비에게 존호를 올리지 않고

후대에 올린 경우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거나 스스로 사양한 경우이다.³³⁾ 왕실여성들의 경우 권력을 직접 장악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대체로 남편이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함께 지위가 격상되고 이를 경하하는 존호를 받았다. 그러나 권력에서 밀려난 경우에는 함께 강봉되기 때문에 존호를 삭탈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위 격상과 장수에 대한 경사에 대해서 휘호를 올릴 때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체적으로 휘호가 존경과 공덕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 왕과 함께 왕의 보호자로서 국정을 이끌어 간 대왕대비, 왕대비에게 존호를 더 올렸을 것이라 생각되나 그렇지 않았다. 또한 왕의 나이가 어려지면서 왕실 어른들이 많아져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 등의 위계질서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존호를 올려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왕의 私親에 대해 혈통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왕비로 존송하기도 하였으나 존호를 많이 올

33) 단종비 정순왕후는 계유정난으로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양위하자 왕후도 왕대비로 격상되면서 존호 ‘懿德’을 받았으나 단종복위운동으로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자 郡夫人으로 격하되었다가 관비가 되었다. 이후 숙종때 단종이 복위되면서 다시 왕후로 추봉되어 존호를 받은 것이다. 단종비 정순왕후는 조선왕비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오래 생존하였으나 왕비와 왕대비를 거치고도 단 3년간 재위했을 뿐이어서 존호를 두 차례만 받았다. 소혜왕후는 남편 의경세자가 요절하였으나 아들인 성종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지위가 격상되었다. 이때 올린 존호와 자신의 손자인 연산군이 올린 두 차례의 존호가 있다. 연산군 부인인 폐비 신씨는 장수하였으나 존호가 삭탈당하였다. 중종비 단경왕후는 중종반정으로 왕비가 되었으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어서 역대 왕비 중 가장 짧은 7일간 왕비로 재위했다가 영조 때 복위되었다. 또한 중종비 문정왕후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후로도 평가받고 있는데 대왕대비까지 올랐으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명종 재위기간에 두 차례 존호를 받았는데 두 존호가 모두 명종 2년에 올린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문정왕후의 세력이 몰락하면서 존호를 더 올리는 일이 없었다. 인종비 인성왕후는 인종의 요절과 문정왕후의 견제로 장수하여 3대 왕을 지나고도 대왕대비가 되지 못하고 후대에 존호를 올린 경우이다. 또한 장조비 현경왕후는 정조대에 추존된 경우이고 정조비 효의왕후는 1802년(순조2) 정조를 부묘한 뒤, 왕대비(대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리고자 했으나, 효의왕후(정조비)가 ‘정조가 생전에 존호를 받지 않았음’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양하였고, 정순왕후(영조비) 또한 사양하므로 존호를 올리지 않고 왕대비와 대왕대비라는 호칭만 올렸다. (김중수, 「조선시대 대왕대비, 왕대비 존호의례의 정비과정」, 『한국사음악연구』 52권, 2012, 12쪽). 마지막으로 순정효황후는 한 차례의 존호도 올리지 않았는데 순정효황후가 황후로 즉위한 당시 일체에 의하여 국권의 침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는 방법 보다는 왕후와는 다른 계통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후대에 이르러 적장자가 계승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왕비가 장수하면서 재위기간이 긴 경우 또한 이를 축하하여 휘호를 올렸다. 따라서 왕후에게 올리는 휘호의 경우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상존호의 정치적 기능

1. 왕이 아닌 先代 親父의 추존

왕위계승자가 養子인 경우 왕이 아닌 親父의 추존은 왕권이 안정된 후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그만큼 왕위계승자의 친부가 왕이 아닐 경우에는 단지 효심만으로 추존을 하여 존호를 올리는 것이 자칫 왕통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를 추존하여 존호를 올리는 것에 비해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왕위 계승자가 자신의 친부 혹은 양부를 추존하는 것은 성리학적 질서에 입각한 왕위 계승 절차에 맞추어 왕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왕권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³⁴⁾ 따라서 왕은 자신의 친부를 존송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양자로 입적한 왕의 친부를 왕으로 존송하여 존호를 올리거나 대원군이라 불렀다. 왕의 친부를 존송하여 존호를 올려 종묘에 모시는 것에 대한 격렬한 논의과정이 있었고, 또한 왕의 친부에 대한 호칭을 정하는 것도 출생 배경과 정치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이를 덕종, 장조, 원종, 덕흥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왕위 계승자가 자신의 친부를 존송한 경우에 왕세자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논의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왕세자를 거친 경우로 성종의 아버지인 덕종과 정조의 아버지인 장조가 있었고, 왕세자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인

34) 이는 주자성리학의 이해의 성숙과 토착화와 관련하여 位次·世次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성리학의 명분론에 입각한 정통성에 대하여 혈통에 입각한 세차에서 법통에 입각한 위차로 넘어가는 과정 또한 나타난다. (지두환, 「조선전기 묘제에 관한 일고찰」, 한국문화 제4집, 서울대학교 학술문화연구소, 1983, 119-152쪽.) 따라서 왕위계승자가 선왕을 존송하는 것에 자신의 친부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양자로 입적하여 선대왕의 계통을 이어받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를 자신의 친부와 선대왕에게 존호를 올림으로써 정당성을 얻고자 한 것이다.

조의 생부인 원종,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군이 있었다. 왕세자에 책봉되지 않은 경우 인조의 정원군을 제외하고는 왕이 강력하게 추진하여도 정통성과 명분의 문제로 왕으로 추존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대원군’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나타났다.

먼저 왕세자를 거쳤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추존된 덕종과 장조이다. 조선 건국 시조의 조상으로서가 아닌 최초의 추존 왕인 덕종의 경우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하여 세자로서 묘호를 받은 후 성종 즉위 후 신숙주의 청으로 존호를 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성종의 명령으로 신료들에게 논의하게 하여 추존하였다. 이는 이후 중통의 문제와 연관되어 치열한 논의를 거치게 되었다.

덕종은 세자로 책봉되어懿敬이라는 시호를 받고³⁵⁾ 즉위 전 20세의 나이로薨하여 세조 5년(1459) 신료들이 의논하여 의경세자의廟를孝靖廟로, 墓는懿墓로 예조가 아뢰었다.³⁶⁾ 그러나 의경세자의 아들인 성종이 즉위한 후 신숙주의 건의로 의경세자에 대한 추숭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빈의 칭호에 대한 격론을 거치게 된다. 이는 성종이 예종의 양자로 입적한 후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생부인 의경세자와 생모인 인수대비에 대한 예우의 문제였다. 의경세자를 왕으로 삼아 시호를 올리고, 수빈을 왕비 자격으로 왕대비에 추숭할 것인지와,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숭하되 종이라 일컫지 말고 수빈은 다만 왕비라고만 칭할 것인지로 논의가 나뉘었는데 당시 대다수 신하의 의견은 후자였다.³⁷⁾ 의정부, 육조, 춘추관의 2품 이상에

35) 『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1월 15일 을해, “賜世子諡懿敬, 溫和聖善懿, 夙夜警戒敬”.

36)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9월 26일 을사, “禮曹啓: 懿敬世子廟稱孝靖廟, 墓稱懿墓”.

37)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8일 정유, “懿敬世子追崇事及粹嬪稱號事, 麟趾, 昌孫, 叔舟, 明滄, 致寬, 允成議: “帝王入繼大統, 義不得顧私親, 先儒論辨既明. 懿敬世子稱皇伯考而不名, 殿下稱孝姪, 爲當於義. 然天性之親, 其義亦大, 追崇之典, 先儒論之亦詳. 懿敬既爲世子, 無他爵號, 可以尊崇. 宜追王上諡, 別立廟, 爲始祖不遷之主. 廟與陵, 因諡爲號, 而不稱宗, 官備享奠, 別議可主祀者, 使之世襲. 粹嬪於懿敬, 既儷尊東宮, 亦宜上殊稱, 進冊爲

게 시호, 묘호, 능호를 의논하게 하여 시호는 溫文懿敬王 또는 仁順懿敬王, 廟號는 懿敬廟 또는 懿廟, 능호는 懿敬陵 또는 敬陵 중에서 결정할 것을 올리니 성종이 시호와 묘호, 능호를 각각 온문의경왕, 의경묘, 경릉으로 정하여 傳敎하였다.³⁸⁾

그리고 성종 2년(1472) 원상·의정부·육조 판서를 불러 의경왕의 추숭을 주청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논하게 하였으나 논의가 주청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³⁹⁾ 같은 해 전교를 통해 의경묘의 이름을 고쳐서 아될 것을 명하여 예조에서 漢나라 宣帝의 예를 따라 懿廟로 고쳐 올렸다.⁴⁰⁾ 그리고 의경왕의 시호를 의논할 것을 성종이 명하여 ‘宣肅恭顯溫文懿敬大王’을 더할 것과 한나라의 南頓君와 송나라의 濮王이 다르게 추존한 것에 대한 고사와 달리 의경왕은 세조의 적자이며 왕세자에 책봉된 것이므로 皇考로 일컫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의논하였다.⁴¹⁾

또한 의경왕 추봉을 중국에 주청하는 문제를 성종 5년(1475) 승정원에 전교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정인지, 정창손이 개국 후 처음 사대의 추존 후 주청하지 않은 예를 들어 필요 없음을 주장하고 신숙주, 한명회 등이

妃. 但不得稱大, 待喪畢, 備物上冊, 實合情文” .

38)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22일 신축, “懿敬世子諡號, 以溫文懿敬王, 廟號懿敬廟, 陵號敬陵; 粹嬪徽號, 以仁粹王妃, 稱上” .

39)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1일 임인, “命召院相, 議政府, 六曹判書, 會賓廳, 議懿敬王追崇奏請可否. 蓬原府院君 鄭昌孫, 高靈府院君 申叔舟, 寧城府院君 崔恒, 昌寧府院君 曹錫文, 領議政尹子雲, 左議政金國光議: 本國既上尊號, 雖復奏請, 亦無所加, 勿請爲便. 如不得已, 則因赴朝使臣, 乘間問於禮部, 然後更議, 何如? 上黨府院君 韓明滄, 刑曹判書咸禹治, 右參贊徐居正, 戶曹判書金吉通議: 統雖重, 私恩亦不可輕. 奏請何如? 右贊成尹弼商, 禮曹判書金謙光, 工曹判書韓繼純議: 奏請追榮, 揆之於義, 似未穩也” .

40) 『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2월 22일 기축, “禮曹啓: 今承傳敎: ‘懿敬廟改號以啓.’ 謹按漢 宣帝追諡故皇太子史皇孫, 因諡爲國號, 請以懿廟稱上. 從之” .

41)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6일 병진, “命議政府, 六曹, 春秋館二品以上, 議懿敬王諡, 仁粹王妃尊號, 僉議曰: 懿敬王宜加宣肅恭顯溫文懿敬大王, 仁粹王妃宜加仁粹王大妃. 知中樞府事李坡議: 鉅鹿 南頓君, 漢之疎屬也. 光武中興, 義當繼平帝之後, 故不考南頓君, 濮王, 宋之藩王也, 英宗育於宮中, 遂繼仁宗之後, 而稱濮王爲親, 議者非之. 今別立懿廟, 稱伯考, 於義爲當. 但我懿敬王, 世祖之嫡子, 已冊爲王世子, 當繼大統, 但未卽大位耳, 非南頓, 濮王之比. 祔宗廟竝稱兩考, 有妨於義, 既立別廟, 而朝廷又許追王, 稱皇考, 於義, 於情, 似爲兩得. 從僉議” .

즉위 후 몇 년이 지났으므로 주청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성종이 신숙주 등을 따랐다.⁴²⁾ 임사홍이 주청이 잘못된 것이라 상소를 올렸으나⁴³⁾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문관이 상소하고 신숙주 등이 상소에 대하여 불순한 것에 대한 실정을 물어야 한다 하였으나 왕이 용서하였다.⁴⁴⁾ 당시 의경왕의 시호를 중국에 주청하는 것에 대하여 신료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성종이 주청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신숙주, 한명회 등이 이를 지지하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명나라 황제로부터 懷簡이라는 시호를 받아왔다.⁴⁵⁾ 그러나 성종이 회간왕의 부모에 대한 가부를 여러 차례 의논하게 한 후 치열한 논쟁을 통해 성종이 춘향대제에서 회간대왕의 신주를 받들고 부모할 것을 예조에 전지하였고,⁴⁶⁾ 2일 후 회간왕의 묘호를 덕종이라 올렸다.⁴⁷⁾ 덕종의 추존과정에서 성종의 강력한 의지로 몇 차례 의논을 지시하고 이에 반박하는 신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였다.

이는 건국 시조의 조상이 아닌 추존 왕이 종묘에 오르는 일에 대한 사례가 없어 정통의 서열 문제를 들어 대항하여 성종 자신의 친부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덕종의 추존과정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왕이 존시, 존호를 받는 것과 달리 왕세자에서부터

-
- 42)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13일 을미, “申叔舟,韓明澮,洪允成,曹錫文,金礪,尹子雲,成奉祖議: 前日大監有言此事者, 其時臣等竊意, 殿下入繼大統, 義不顧私親, 卽位初年遽請追王, 實爲未安, 今卽位已有年, 奏請何如. 鄭麟趾,鄭昌孫議: 承大統, 不顧私親禮也. 大監雖有奏請之言, 本朝奏請則必下禮部, 禮部據古典必不從請, 非徒無益, 以我朝爲不知禮. 且本朝開國之初追王四代, 亦不奏請, 事雖不同, 其追王一也, 不須奏請. 上從叔舟等議”
- 43)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4일 병오, “藝文館副提學任士洪等上疏曰 (중략) 臣等以爲, 今既尊崇爲王, 則不必請於天子” .
- 44)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8일 경술, “傳曰: 爾等疏語多不順, 然大義言之, 予姑貸焉, 後無狃此爲也” .
- 45)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29일 기묘, “其勅曰: 得奏, 王所生父諱, 先封世子, 早逝, 及所生母韓氏見任, 俱未有名號. 爲人後者, 義不可顧私親, 然顯揚之懷, 不能自己. 等因具悉王之孝忱, 茲特追封故世子諱, 爲朝鮮國王, 諡懷簡, 封韓氏爲懷簡王妃, 以遂顯親之志. 及頒給誥命并妃冠服, 至可欽念” .
- 46) 『성종실록』 60권 성종 6년 10월 7일 계미, “傳旨禮曹曰: 來丙申年春享大祭, 奉懷簡大王神主祔廟” .
- 47) 『성종실록』 60권 성종 6년 10월 9일 을유, “上懷簡王廟號曰德宗” .

시작하여 존시를 올리지 않고 추상존호를 올렸으며 그 과정에서는 큰 반대의 논의가 없었으나 종묘에 부모하는 것에 대하여 격론이 이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사도세자에 대한 추존을 주목할 수 있다. 정조는 효장세자의 양자가 되어 조부인 영조에게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생부인 사도세자를 존숭하였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도세자에게 영조가 시호를 내린 것인데,⁴⁸⁾ 정조는 즉위 후 장헌세자로 시호를 올리면서⁴⁹⁾ 세자에게 올리는 銀印이 아닌 玉印을 올려 차이를 두었다. 두 번째로 정조 7년(1783)에 1782년 9월 원자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빈청에서 논의를 거쳐 사도세자에게 존호를 추상하고 정순왕후와 혜경궁에게 존호를 加上하였다. 사도세자의 존호는 두 글자가 아닌 네 글자인 ‘綏德敦慶’으로 올렸다. 세 번째로 정조 8년(1784) 원자를 책봉하면서 영조, 정성왕후, 사도세자에게 존호를 추상하였고 왕대비전과 혜경궁의 존호를 가상하였다. 같은 해에 사도세자에게 존호를 ‘弘仁景祉’라고 추상하였다. 네 번째는 정조 19년(1795) 사도세자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章倫隆範 基命彰休’ 8자의 존호와 이번에는 金印을 올렸다.⁵⁰⁾ 국왕이 아닌 세자에게 8자를 올리는 것은 파격적이었다. 존호만 따지고 보자면 종묘에만 부모되지 않았을 뿐 국왕과 같은 대우였다.⁵¹⁾

정조가 갑작스럽게薨한 이후로 사도세자의 추숭은 잠시 멈추게 되었다. 순조가 11세에 즉위하면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였는데 정순왕후는 정조의 정책을 계승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하라는 ‘정조의 遺命’이 없는 이상 불가능하였다. 이는 현종과 철종 역시

48)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윤5월 21일 계미, “思悼世子薨逝. 敎曰: 旣聞此報之後, 豈不思近卅載父子之恩乎? 顧世孫之心, 諒大臣之意, 只復其號, 而兼諡以名曰思悼世子. 服制月數雖存, 除成服, 以烏帽黻袍百官淺淡服終月. 世孫雖終三年, 進見時葬後則淡服”.

49) 『정조실록』 2권 정조 즉위년 8월 17일 병진, “上諡于莊獻世子”.

50)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1월 17일 경자, “追上尊號于莊獻世子”.

51) 정해득, 「사도세자 현창의 전개과정」, 『역사문화논총』 8호, 역사문화연구소, 2014, 75-76쪽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철종은 사도세자의 血孫임을 과시하기 위해 철종 5년(1854) 사도세자 재회갑의 해가 되어 ‘贊元憲誠啓祥顯熙’ 8자의 존호를 올렸다. 그러나 사도세자를 추존하고자 하는 유생들의 청원 상소와 권재대의 상소에 대하여 임금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장조로 추송된 것은 고종 36년(1899)에 서상조가 올린 상소를 계기로 한 달 뒤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묘호를 ‘莊宗’으로, 시호를 ‘神文桓武莊獻廣孝’, 능호를 ‘隆陵’, 전호를 ‘景慕獻敬’으로 아뢰어 그대로 시행하였다.⁵²⁾ 그리고 그해 12월에 태조, 장종, 정종, 순조, 익종 황제를 소급하여 묘호를 높이고 황제 칭호를 정하면서 장종은 莊祖로, 제호는 ‘宣皇帝’로 올렸다.⁵³⁾ 고종 역시 이전의 전례대로 하였으나 대한제국으로 국체가 승격하면서 종계만으로 계승한 자신의 취약한 혈통을 극복하고 국격에 따라 선대 왕에게 ‘황제’ 추존을 위해 장조로 사도세자를 추존한 것이다.⁵⁴⁾

이와 같이 왕위 계승자가 친부를 추존한 경우 덕종과 장조 모두 세자에 책봉된 후 사후에 추존된 것이다. 덕종은 태조가 선조들을 추존한 이후 가장 먼저 추존이 된 경우이고 장조는 정조의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왕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추존하였다. 또한 철종과 고종의 추존 사례를 통하여 왕을 추존하고 존호를 올리면서 혈통상의 약점과 정통성을 극복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왕세자를 거치지 않고 왕에 존송된 경우도 있다. 인조의 생부인 정원군의 경우이다. 광해군 15년(1623)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廢黜하고 선조의 5남으로 仁嬪金氏 소생 定遠君瑋의 아들 綾陽君侬을 왕으로 옹립하여 인조가 되자 進號하여 대원군이 되었다. 인조 역시 반정으로 왕

52)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9월 1일 양력, “莊獻世子追崇廟號望 ‘莊宗’ ”.

53)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7일 양력, “莊宗大王廟號望 ‘莊祖’ ”.

54) 정해득, 「사도세자 현창의 전개과정」, 역사문화연구소, 2014, 94-101쪽.

위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친부에 대한 호칭 및 복제에 대한 문제로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대원군을 추송하자는 의견이 올라오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박지계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斬衰 3년복을 입어야 하고, 따로 사당을 세우는 것도 宗統의 뜻에 방해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의길은 ‘전하의 종묘는 전하의 고조·증조·조부와 아버지를 위해 세운 것이다’라 하여 정원대원군을 인조의 아버지로 추송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김장생은 ‘어떤 사람의 後嗣가 되면 그의 아들이 되는 법이니, 전하께서 일단 先王을 아버지로 삼았으므로 대원군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⁵⁵⁾라 하여 인조가 선조를 아버지로 불러야 하고 정원군을 백숙부로 불러야 하며 인조는 선조의 대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추존하는 것을 반대했다. 국초에는 이러한 논의가 계속 이어졌으나 신료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인조는 정원대원군을 왕으로 추존하기를 강행했고 추존에 찬성한 박지계를 학적에서 삭제하고 지계의 제자들이 모두 과거에 응시하지 않게 한 허목 등은 停擧 처분을 받게도 했다.⁵⁶⁾ 이후에도 추송할 것을 상소하는 이원서의 상소⁵⁷⁾에 대해 영의정 오윤겸은 추송을 반대하며 사직을 청하였고, 대사헌 장유가 추송을 반대하며 引避⁵⁸⁾하고 諫院이 추송하자는 이귀와 허적을 파직할 것을 아뢰는⁵⁹⁾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인조는

55) 『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10월 23일 갑진, “朴知誠之議以謂: ‘若稱考則當斬衰三年, 雖別立廟, 亦有妨於宗統之義云. 宜吉所謂殿下之宗廟, 爲殿下之高, 曾, 祖, 考而設等語, 皆此意也, 其無理極矣 (중략) 金長生之議以謂: ‘爲人後者爲之子, 殿下既以先王爲考, 則不可稱考於大院君.’ ”.

56) 『인조실록』 25권 인조 9년 9월 18일 기축, “貴曰: 有許穆者, 以議禮事, 擅削朴知誠於學籍, 故知誠弟子等, 皆不赴擧云, 臣不勝驚駭. 一儒生之妄論, 至於削籍前持平, 事甚怪訝矣. 上曰: 許穆之事, 誠極過當, 停擧宜矣”.

57)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12월 20일 갑자, “殿下之追崇大院君, 其於禮法, 固無不可...중략...伏願先正廷臣沮遏之罪, 亟定大禮, 以明倫紀”.

58)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12월 22일 병인, “而於追崇入廟之論則左矣”, “大司憲張維引避曰: 身爲言官, 顯被詆斥, 不敢晏然仍冒”.

강행하여 대신 모두가 추송은 불가하다고 하고 양사 합계 또한 중국에 주청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나 듣지 않고,⁶⁰⁾ 추송하는 일로 주청하는 일에 반대한 이행원을 국문하기도 하였다.⁶¹⁾ 명을 거두기를 청하는 신하들의 상소를 무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정원군의 추송 신주를 의논하고 행장을 써 중국에 주청했다.⁶²⁾ 결국 정원군을 조선 국왕으로 추봉하고 시호를 받아 인조 11년(1633) 모화관에서 중국황제가 내린 칙서를 받는 영칙례를 거행하였다.⁶³⁾

결국 인조 10년(1632)에 대원군의 시호를 ‘敬德仁憲靖穆章孝’라 하고, 大院夫人의 호를 ‘敬懿貞靖仁獻’이라 하고, 興慶園을 章陵이라 고쳤다.⁶⁴⁾ 박지계의 상소 이후 10여 년 이후에나 원종으로 존호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종대왕을 태묘에 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예조에서 대신들에게 논의할 것을 권하여 인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⁶⁵⁾ 이후 원종대왕을 태묘에 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상소⁶⁶⁾가 올라오면서 마지막까지 신료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강행되었다. 정원대원군 이전의 사례인 덕

59)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12월 25일 기사, “諫院啓曰: 追崇之論, 本非正禮. (중략) 不可以重臣而容貸, 請命罷職不敘. 陽陵君 許禱, (중략) 無以爲國, 請命削奪官爵”.

60) 『인조실록』 24권 인조 9년 4월 20일 계해, “大臣皆以追崇爲不可云”; 『인조실록』 24권 인조 9년 4월 21일 갑자, “甲子/兩司合啓曰: 今此追崇之典, 非但國言皆以爲不可, 求諸前史, 參以禮經, 無可據之例. (중략) 答曰: “既非人後, 則追隆所生, 其於禮義, 少無不可”.

61) 『인조실록』 24권 인조 9년 4월 23일 병인, “古昔帝王, 皆等私親. 況予非爲人後, 追隆所生, 尤無不可. 行遠等語侵臺閣, 以爲脅制上下之地, 事極駭愕. 竝拿鞫定罪”.

62) 『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 3월 9일 병오, “大臣以爲: 當依德宗朝例, 請封, 請謚兩款事, 竝入於奏文, 別爲行狀, 付諸使臣, 呈納禮部. 上從之”.

63)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5월 6일 정유, “丁酉/上幸慕華館, 行迎勅禮”.

64) 『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 3월 11일 무신, “大臣及二品以上會賓廳, 追尊大院君諡號曰, 敬德仁憲靖穆章孝; 大院夫人號曰, 敬懿貞靖仁獻, 改興慶園曰, 章陵”.

65) 『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7월 26일 경술, “事之已定者, 該曹唯當奉行之不暇, 至於入廟之教又下, 則此實莫重之舉, 必須廣議而處之. (중략) 答曰: 名分已定, 恩封又降, 而以入廟爲不可者, 實涉不敬”.

66) 『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7월 28일 임자; 『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7월 29일 계축; 『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8월 1일 갑인;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8월 15일 무진;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8월 26일 기묘; 『인조실록』 30권 인조 12년 윤8월 2일 을유

홍대원군이 왕세자 출신인 것과 달리 왕세자를 거치지 않고 왕으로 추존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인조가 혈통상 할아버지인 선조의 뒤를 이어 반정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고자 추승한 것이다. 또한 성리학과 종법제 유입 이후 位次 중심의 정통론과 일상생활에서 『가례』의 사상적·예학적 배경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배경도 찾을 수 있다.⁶⁷⁾

반면에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군은 중종의 7번째 아들이자 후궁 昌嬪安氏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왕으로도 추존되지 못하였다. 조선 최초의 서자 출신인 선조의 정통성 문제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선조가 즉위 후 덕흥군을 대원군⁶⁸⁾으로 추존⁶⁹⁾하여 최초의 대원군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林栢는 호칭의 근거가 없어 추승해야 한다고 하였다.⁷⁰⁾ 선조는 통정대부 김계가 대원군을 대왕으로 추봉할 것을 상언하자⁷¹⁾ 덕흥대원군을 추존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⁷²⁾ 이는 성리학 이해의 심화와 보편화로 인한 배경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⁷³⁾ 이 외에도 왕으로 추존되지 못하고 대원군으로 추존된 경우는 전계대원군과 흥선대원군이다.

67) 이현진, 「인조대 원종추승론의 추이와 성격」,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99, 66-67쪽.

68) 대원군이라는 호칭은 이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예전에는 封建하는 데 지명을 사용하여 호를 삼아 작호의 격은 國-府-郡-縣의 순으로 國이 제일 높았지만 이를 사용하지는 않아서 왕비의 아버지인 부원군보다 한 단계 높이기 위해 大를 붙인 것이다(『선조실록』 212권 선조 40년 6월 16일 정미, “則周定有天下之號曰周, 而周公因其采邑”).

69) 『선조수정실록』 3권 선조 2년 11월 1일 경오, “尊德興君爲大院君”.

70) 『선조실록』 10권 선조 9년 7월 20일 신해, “德興大院君號無據, 改爲追崇事”.

71) 『선조실록』 203권 선조 39년 9월 2일 무진, “伏願殿下, 體太祖大王以先世四王, 封爲大王, 感太宗大王四王位號之加, 以大(原)君追封大王, 永祀無窮, 而億萬世無疆之享, 與天地休明矣”.

72) 『선조실록』 203권 선조 39년 9월 2일 무진, “左議政許頊以爲: 金稽陳疏, 其於追隆崇奉之意則至矣, 而揆以先王制禮, 竊有所未安. 蓋恩義輕重, 所在自別. 義有所重, 則當屈恩而伸義; 恩或當殺, 則可據義而裁恩. 故, 當自上入承之初, 深思熟講, 考諸典禮, 折之以先儒定論; 參之以廷臣獻議, 尊以殊號, 享於家廟, 義定禮明, 少無所憾. 行之至今, 人無異議, 則其合於天理; 宜於人心者, 斷然無疑矣. 今因一人之言, 輕議而求其說, 恐無所據. 伏惟上裁.’ 大臣之議如此, 上裁施行何如? 傳曰: 啓辭依允”.

73) 이현진, 「인조대 원종추승론의 추이와 성격」, 1999, 5-10쪽.

1849년(헌종 15)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純元王后의 명에 따라 全溪君의 아들 德完君 昇이 왕위에 올라 철종이 되자 전계군을 全溪大院君으로 추존하였다. 그리고 철종에 이은 고종 역시 흥선군의 2남이었는데 대왕대비 조씨의 명으로 왕위에 오르자 이하응이 흥선대원군으로 봉해진 것이다. 대원군 중 흥선대원군만 유일하게 생존에 호칭을 받았다.

왕위 계승자의 친부에 대한 추존은 친부의 출생 배경에 따라 달라졌다. 왕위 계승자의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나 정통성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한 왕들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추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17세기 位次 계승이라는 정통과 성리학적인 윤리의 확립이 배경이 되면서 추존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추존으로 지위가 오르게 되면서 그에 맞는 존호를 올려 추존 과정을 정당화 하였다.

2. 先王에 대한 加上尊號 및 追上尊號

조선의 왕은 왕위를 이어받은 嗣王으로서 先王을 추존하고 존호를 올렸다. 선왕에 대한 존승을 왕위 계승 및 정치적인 변란, 국력의 변화, 선왕의 재위에 대한 공덕을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 보고 점차 존호가 예호화 되어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왕위계승 이후 선대를 추존한 경우이다. 정권을 장악하여 왕위계승자가 된 이후 이전 시대의 혼란함을 수습한 공덕으로 존호를 올림으로써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표적으로 태종, 세조가 존호를 통하여 선대의 왕을 상왕, 태상왕으로 추존하여 정권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조선시대 국왕으로서 생전에 先代왕으로서 가상존호를 받은 최초의 왕은 이성계이다. 태조 7년(1398) 8월 ‘1차 왕자의 난’으로 방석이 죄사되면서 태조는 9월 5일 방과에게 선양하고자 하여 이침에게 교서를 지어 올리게 하고 둘째 아들 방과에게 친히 양위하는 교서를 내리자 방과는 태조에게 상왕의 존호를 올렸다.⁷⁴⁾ 정치적 격변은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져 정종 2년(1400) 정월 방간을 甑山으로 쫓아낸 후로 같은 해 2월 1일 하윤 등이 정안공을 세자로 세우기 청하자 정종이 심히 옳다고 하며 따르고 세자로 삼았다.⁷⁵⁾ 방원은 軍國重事를 맡아 다스리며 실권을 장악하였고 왕위를 위한 과정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우선 태상왕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봉숭도감을 설치하고⁷⁶⁾ 예조에서 태상왕의 존호를 ‘啓運神武太上王’으로 상언하여 그대로 정하여 올렸고,⁷⁷⁾ 정종 2년(1400) 11월 11일 정종이 왕위를 태종에게 선위하였다. 이후 태종이 백관을 거느리고 상왕전에 나아가 옥책과 금보를 올리고 정종에게 ‘仁文恭睿上王’, 定安王后(1355~1412, 정종비)에게 ‘順德王太妃’란 존호를 올렸다.⁷⁸⁾

74) 태조는 정종 2년 7월에 그의 공신(開國·原從) 가운데 방원의 거사(왕자의 난)에 협력하여 정사공신이 된 趙溫·趙英茂·李茂를 배은·불충한 죄로 처벌할 것을 방원에게 요구하여 일단 그들을 유배 보내게 했다. 태조는 그가 개국공신에 책봉하고 卿相의 지위까지 내려준 조온·조영무가 제1차 왕자의 난 당시 禁兵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난을 일으킨 방원에게 내응한 것을 배은망덕한 행위로 질책했다. 또 이무는 원종공신을 내려주었는데, 정도전·남은 등과 한 과였다가 난이 일어났을 때 ‘中立觀變’하다가 방원과 승리하자 방원에 붙은 불충한 자로 질책했다. 태조의 조온·조영무 등에 대한 질책은 두 차례의 정변을 통해 세자의 자리에 오른 방원에 대한 질책이 포함된 것이며, 방원의 세자위에 대하여 태조의 심기가 불편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9월 5일 정축; 崔承熙, 『太宗末 世子廢立事件의 政治史的 意義』, 李載龔博士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91, 307-308쪽).

75)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2월 1일 병신, “丙申朔/參贊門下府事河崙等請曰: 夢周之亂, 若無靖安公, 大事幾不成; 道傳之亂, 若無靖安公, 亦安有今日乎? 且以昨日之事觀之, 天意人心, 亦可知也. 請立靖安公爲世子. 上曰: 卿等之言甚善” .

76)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6월 16일 기유, “設封崇都監. 將以上太上王尊號也. 以政丞成石璘·閔霽, 判三軍府事河崙爲提調” .

77)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6월 20일 계축, “禮曹進太上王尊號. 禮曹上言: ...중략...宜上尊號曰啓運神武太上王, 以彰盛烈, 昭示永世, 具狀以聞” .

78)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2월 1일 신묘, “上率百官詣上王殿, 上冊寶, 仍獻壽...중략...臣不勝大願, 謹上尊號曰仁文恭睿上王. 伏惟殿下, 樂道優游, 凝神怡養, 俯諒由衷之願, 永膺

그러나 정종의 선위에 대하여 31명이 태종 원년(1401) 2월 반대운동이 벌어져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며 태종 2년(1402)에 趙思義亂을 비롯하여 태종 4년(1404) 태종과 연혼한 집안의 李居易와 그의 아들인 태종의 만사위 伯剛이 유배되어 廢庶人 되는⁷⁹⁾ 등 반대세력이 강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 정통성의 부족에도 태종 6년(1406)과 9년(1409)에 상왕, 태상왕까지 있는 상황에서 태종 자신까지 傳位를 표명하는 소동 등으로 태종의 선위 반대 여론을 유도하여 왕권을 유지하는 데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태조가 받은 존호인 상왕과 ‘계운신무태상왕’의 경우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1, 2차 왕자의 난이라는 정치적 격변으로 태종이 조선의 3대 국왕이 되면서 살아 있는 前王에 대한 예우로 받은 것이다. 정종이 왕세자에게 선위하였을 때 태조의 반응을 보더라도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⁰⁾

이후 태상왕인 태조가 승하하고 태종 8년(1408) 8월 7일에 태상왕의 존시를 ‘至仁啟運聖文神武大王’으로 묘호를 ‘太祖’로 정하여 올렸다.⁸¹⁾ 그러나 세종이 1418년(세종 원년) 8월에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았다. 이때 세종이 정종에게 太上皇의 존호를 올릴 것을 아뢰었으나 정종이 지나치다며 거절하였다.⁸²⁾ 따라서 태종이 상왕이 되어 정종과 태

多社之祺” .

79) 태종 2년의 趙思義亂은 親 태조 세력의 反 태종 난이라 할 수 있다. 이 난을 평정한 후 安邊大都護府는 監務로, 永興府는 知官으로 격하되었고 趙思義·康顯·趙洪 등 많은 사람이 복주되었다. 이 난은 태종의 왕위·왕권이 불안했음을 나타내며, 태종 왕위의 명분·정통성의 결여와 관계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태종 4년 10월 李居易와 그의 아들 侗가 鎭州로 유배되고 廢庶人된 사건이 있었다. 이거이와 이저는 정사·좌명 1등 공신이었으며, 이저는 태조의 만사위였고 이거이의 둘째 아들 伯剛은 태종의 만사위였으므로 이거이는 왕실과 연혼을 한 태종의 가장 가까운 공신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이거이가 태종 원년에 태종과 그의 왕자들을 제거하고 정종을 다시 세우려는 모역을 했다는 사실을 태종이 들춰내어 문제를 삼은 것이다(崔承熙, 『신편 한국사』 22권, 국사편찬위원회, 2002).

80) 『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1월 11일 신미, “遣左承旨李原, 告太上王以禪位之意, 太上王曰: 爲之不得, 不爲亦不得. 今已禪位, 復何言哉” .

81)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8월 7일 임오, “上遣知申事李明德, 啓於上王曰: 願上尊號爲太上皇. 上王曰: 當以上王爲太上王, 予爲上王. 予非謙讓, 以天倫也. 主上欲孝於我, 須從我言. 上王亦遣人曰: 太上之號, 非予所敢當也. 於是, 尊太上王之禮不舉” .

중 두 명의 상왕이 있게 되었으므로 세종이 정종을 老上王이라 부르며 구별하였다.⁸³⁾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예조에서 상왕과 대비에게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여⁸⁴⁾ 예조에서 상왕과 대비를 봉송하는 의식 절차를 아뢴 후 세종 원년(1418) 태종에게 ‘聖德神功上王’, 元敬王后(1365~1420, 태종비)에게 ‘厚德王大妃’란 존호를 올렸다.⁸⁵⁾

정종이 세종 원년(1419) 향년 63세에薨하여 세종 2년(1420)에 태종에게 태상왕의 칭호를 올리려 하자 태종이 거절하였다.⁸⁶⁾ 그 이유로 첫째는太祖가 태상왕이 되었다는 것, 둘째는 仁德殿을 太上으로 봉하지 못하였던 것, 셋째는 덕이 미치지 못한 것이라⁸⁷⁾ 설명하였다. 그러나 결국 세종 3년(1421)에 옥책과 금보로써 상왕인 태종에게 ‘聖德神功太上王’이라는 존호를 올리며 존송하였다.⁸⁸⁾ 이 외에도 癸酉靖難으로 정권을 잡은 세조에게 선양한 단종 역시 짧은 시간 상왕의 자리에 있다가 魯山君으로 강봉되었다.⁸⁹⁾ 세조의 경우에는 병이 심하여 세자에게 전위하여 세자가

82)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11일 무자, “初, 上遣知申事李明德, 啓於上王曰: 願上尊號爲太上皇. 上王曰: 當以上王爲太上王, 予爲上王. 予非謙讓, 以天倫也. 主上欲孝於我, 須從我言. 上王亦遣人曰: 太上之號, 非予所敢當也. 於是, 尊太上王之禮不舉”.

83)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16일 계사, “癸巳/上詣上王殿, 還詣老上王殿. 時, 上王及恭靖王皆爲上王, 故恭靖王稱老以別之”.

84)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9월 11일 무오, “傳歸殿下, 寔有今日, 宜上尊號曰聖德神功, 以示永世, 上大妃尊號曰厚德王大妃. 從之.”.

85)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8일 갑인, “百官朝服立于廊廡, 上以袞冕, 御仁政殿, 奉玉冊金寶, 上上王尊號曰聖德神功上王, 大妃尊號曰厚德王大妃”.

86)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1월 13일 임오, “上王聞上欲奉冊寶, 加上太上王之號, 遣尹淮諭上以不可之意曰: 太上者, 至尊之名, 非諸侯所當稱也. 予當不受矣”.

87)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9월 8일 무진, “兵曹參判李明德以右議政李原之言啓上王, 請於十二日行封崇之禮, 上王許之. 兩上還御樂天亭. 上王曰: 予之讓太上者, 其意有三. 一則我太祖爲太上王, 二則仁德殿未封太上, 三則德不及矣.”.

88)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9월 12일 임신, “上具冕服率群臣, 以玉冊金寶, 尊上王爲盛德神功太上王, 親授冊寶于進冊官領議政府事柳廷顯, 進寶官右議政李原, 上送至仁政門”.

89) 『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6월 21일 계축, “仍下教旨曰: 前日成三問等言, ‘上王與其謀.’ 宗親百官合辭以爲, ‘上王得罪宗社, 不宜安居京師’, 累月請之不已, 予固不允, 欲保初心. 到今人心未定, 繼踵煽亂之徒不息, 予豈得以私恩曲大法, 不顧上天之命, 宗社之重? 茲特從群議, 降封爲魯山君, 俾出居寧越, 厚奉衣食, 以保終始, 以定國心. 惟爾議政府曉諭中外. 命僉知中樞院事魚得海, 帥軍士五十護送. 軍資監正金自行, 判內侍府事洪得敬從行”.

즉위하면서 세조는 1468년(세조 14) 9월 7일 태상왕의 존호를 받았으나⁹⁰⁾ 다음 날薨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존시는 주로 8자를 받았는데 세조만 유일하게 12자를 받았다. 예종은 즉위년(1468)에 院相 최항과 도승지 권감에게 전교하여 세조의 존호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묘호는 神宗·睿宗·聖宗 중에서, 존시는 ‘烈文英武神聖仁孝’로, 魂殿은 永昌·長慶·昌慶 중에서, 陵號는 景陵·昌陵·靖陵 중에서 고르도록 올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종이 존시의 자수에 구애받지 말 것을 말하고 先王 중 세종이 있으나 漢나라 때 세조와 세종이 있음을 들어 존호를 ‘承天體道至德隆功烈文英武聖神明睿懿肅仁孝大王’으로, 묘호를 ‘世祖’, 능호는 ‘泰陵’으로, 전호는 ‘永昌’으로 할 것을 명하여⁹¹⁾ 11월 21일 빈전에 시책보를 올렸다.⁹²⁾

왕은 내부적 정치변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선왕에게 존호를 올려 정통성을 인정받고 스스로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신하들과의 논의과정 속에서 정권의 정당함을 확인받은 것이다. 앞서 살펴본 先代의 추존보다 더욱 정통성 문제가 민감하였고 정권 초반부터 왕권이 강력하였기 때문에 존호의 논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었다. 또한 상왕, 태상왕의 존호는 생전에 올리면서 계통의 정당성과 왕위 계승 후 정권장악과 권력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상존호를 통해 정치적 변란이 종결되고 새로운 합의에 의한 권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존호는 왕과 왕비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덕을 치하하기 위하여 올리기도 하였다. 후대의 왕이 선대의 왕이 세운 업적을

90) 『세조실록』 47권 세조 14년 9월 7일 계해, “上已令宦官, 取冕服於景福宮, 親賜世子, 令即位.”

91)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9월 24일 경진, “上曰: 仁孝上加懿肅, 陵號曰泰陵, 殿號曰永昌. 仍命勿待罪.”

92) 『예종실록』 2권 예종 즉위년 11월 21일 정축, “領議政浚率百官, 上諡冊寶于殯殿”.

칭송하기 위해 추상존호를 올리는 것이다. 先王에게 존호를 올릴 때는 왕이 사양하기도 하나 존호를 올릴 것을 왕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덕으로 치하하는 경우 신하들의 반응에 따라 국왕 권력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이를 광해군, 숙종, 영조, 정조, 헌종, 철종, 고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광해군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前王인 선조에게 공덕을 찬양하면서 존시 외에 존호를 광해군 8년(1616)과 광해군 13년(1621)에 두 차례 더 추상하였다.

광해군 8년(1616)에 광해군에게 올리는 존호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될 때 선조에게 추상존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다. 광해군은 선조에게 추상존호를 올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독촉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명을 내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명전전을 수리하는 등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광해군이 존호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신들이 존호를 청하였으나 이를 사양했을 뿐만 아니라 존호를 받는 대례를 미루려고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해군 8년(1616)에 광해군은 비망기를 통해 명령을 전달하여 선조에게 祖號를 올리는 일을 의논하도록 명령하였다.⁹³⁾ 그리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여 선조의 추상존호를 ‘啓統光憲凝道隆祚’라 하고 묘호를 ‘宣祖’라 하였다.⁹⁴⁾ 이후 광해군은 존호를 올리는 의식의 절목을 회계하는 일이 늦어지는 일에 대한 이유가 吉日이 가까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뢰자 회계가 늦음을 지적하며 의례를 독촉하였다.⁹⁵⁾ 또한 先王과 先后의 옥책문을 독촉하며 속히 회계할 것을 이르

93) 『광해군일기』 중초본 105권 광해 8년 7월 12일 경진 “仰惟先王，遭丁應泰構誣，至於待命，幸賴聖天子明照萬里，降勅慰諭，昭雪至痛極冤，則其格天之誠，再造之烈，實無競於前後。今宜先上尊號於先王，先二后，竝上先王祖號，親祭告廟後，定號上箋，合於事理。速爲詳議舉行事，言于該曹”。

94) 『광해군일기』 중초본 106권 광해 8년 8월 4일 임인 “賓廳會議，宣宗大王追上尊號，啓統光憲凝道隆祚，廟號宣祖，懿仁王后追上尊號望，顯淑，莊淑，明德；恭聖王后追上尊號望，顯徽，貞順，明順。單子入啓”。

고 세조대에 존호를 올린 의식에 대해 실록을 자세히 상고하여 보고하라고 전교하였다.⁹⁶⁾ 이후 책문의 형식에 대하여 전교하고 추송 때 늙고 병들었거나 有故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여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과직시키겠다고 하였다.⁹⁷⁾ 그리고 명정전이 대례를 치르기에 협소하여 보충하라는 명을 내렸다.⁹⁸⁾ 이처럼 기일을 독촉하거나 세심하게 과거 실록의 기록을 상고하여 챙기고 대례장소를 신경쓰는 등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광해군 12년(1620)에는 선왕의 공덕을 칭송하면서 존호 추상 거행을 전교하였다. 광해군이 선왕에게 존호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사관은 광해군이 虛號를 받으려 하니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선왕에게 두 차례 존호를 올렸다고 평가하였다.⁹⁹⁾ 또한 영의정 박승종의 사직과 그가 체찰사 임무를 사양하는 것을 불허하는 이유로 존호 추상 문제를 들기도 하였다.¹⁰⁰⁾ 그리고 추송 의식에 출연할 기생을 연습시키게 하고¹⁰¹⁾ 추송날짜가 임박하였는데

95) 『광해군일기』 중초본 106권 광해 8년 8월 6일 갑진 “禮曹啓曰：備忘記：‘世祖以靖亂事，親祀南郊後受尊號。既有祖宗朝故事，詳考實錄，一依世祖朝故事，詳察舉行事，言于禮官’事，傳教矣。實錄相考，春秋館所當舉行，而推擇吉日，則近日無吉日，初八日，十二日平吉，故欲於此兩日中，無公故日，開庫云矣。本曹則待其實錄考出後，應行節目，當爲回啓。而近無吉日，實錄考出，遲延之意，敢啓。傳曰：知道。此事下教五六日，今始回啓，極爲稽緩矣。凡行禮處所及傳教，啓辭，初八日一一詳細考啓”。

96) 『광해군일기』 중초본 106권 광해 8년 8월 8일 병오 “今日實錄考出時，世祖 朝上尊號啓辭，批答，上號壽宴日月，儀節及貞熹王后上號，壽宴，受實處所，一一詳細考啓”。

97) 『광해군일기』 중초본 106권 광해 8년 8월 19일 정사 “傳曰：‘國之大事，在祀與戎，而去五月親祭時，參祭宗室，文武百官甚少，所見埋沒。今此追崇時，預爲知會，分明老病有故衆所共知者外，無故不參者，竝罷職事，各別捧承傳施行，竝言于憲府，使之糾劾’”。

98) 『광해군일기』 중초본 106권 광해 8년 8월 24일 임술 “傳曰：‘明政殿甚爲廣闊，若稍向東退柱善造，則無異於仁政殿，而今則所造制度太狹，御榻亦低微狹窄，大禮則難行於此處，工役甚爲可惜。或加造補簷，而加築月臺，御榻亦稍加補造，則未知何如。更爲詳察議處事，言于繕修都監。’”

99) 『광해군일기』 중초본 158권 광해 12년 11월 7일 경진 “王將受虛號，內不自安，加上先王尊號，至於再次瀆慢，無義甚矣。反正後，儒臣 鄭經世 啓請釐正，上以難於更改，不即從，至癸酉年，因禮曹判書崔鳴吉建白，始改之”。

100) 『광해군일기』 중초본 159권 광해 12년 12월 23일 병인 “領議政朴承宗六度呈辭”；『광해군일기』 중초본 159권 광해 12년 12월 27일 경오， “聖批責臣以追崇議號，臣子職分，敢不扶曳以出(赴都監)盡心督役？至於議政，職當統率百僚，而臣不能統率，體察亦當料理二邊，而臣不能料理”。

101) 『광해군일기』 중초본 166권 광해 13년 6월 26일 병신， “掌樂都監啓曰：追崇大禮，只隔數月，妓生呈才，似當逐日慣習，俾無臨時顛倒之患 (중략) 答曰：允”。

山臺와 蓋覆 등을 전혀 하지 않자 관련자를 처벌¹⁰²⁾하는 등의 정성을 보였다. 드디어 왕이 추승의 친제를 太廟에서 거행하고¹⁰³⁾ 인정전에서 존호를 올렸다.¹⁰⁴⁾

광해군의 경우 공빈 김씨의 소생으로 嫡子가 아닌 상황에서 1606년 인목왕후의 소생인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난 이후 불안함을 느꼈다. 이에 선조에 대한 존호를 현왕의 지위에서 올려 정통성을 이어가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숙종 때에는 두 차례 존시를 올리고 한 차례 존호를 추상하였다. 대신들이 논의를 통해 先王의 존호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전례로 인해 부족한 경우 존호를 올렸다. 송시열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숙종 7년(1681)에 영의정 김수항 등이 공정대왕의 묘호가 아직 없는 것을 지적하며 추가할 것을 논의하였다.¹⁰⁵⁾ 이후 史官이 송시열에게 묘호를 올리는 문제에 대하여 문자 올려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왕이 추가할 것을 전교하였다.¹⁰⁶⁾ 그리하여 숙종 7년 9월 공정대왕의 묘호를 정종으로 올리면서 ‘懿文莊武’를 존호로 정하여 올렸다.¹⁰⁷⁾

102) 『광해군일기』 중초본 169권 광해 13년 9월 21일 기묘, “辛酉九月二十一日己未傳曰：追崇之日已迫，而山臺 蓋覆等事，全不用意舉行云，繕工監色官吏推考重治，令本監提調，各別檢飭”.

103) 『광해군일기』 중초본 169권 광해 13년 9월 29일 정묘, “王行追崇親祭于太廟.”

104) 『광해군일기』 중초본 170권 광해 13년 10월 12일 기묘, “王御仁政殿，行上尊號禮，頒赦.”

105)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8월 25일 을사, “臣等承命，以追上恭靖大王廟號事，與兼吏曹判書金錫胄 行刑曹判書南龍翼 行禮曹判書呂聖齊 行大司憲趙師錫 戶曹判書鄭載嵩 禮曹參判安縝 弘文館副校理朴泰遜 司諫院正言權持相議”.

106)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9월 14일 계해, “史官以恭靖大王追上廟號事，往問于領府事宋時烈，時烈對曰：永寧殿既有祧主，陵寢寒食常有祝辭，此豈非可施之處乎？(중략) 上下教曰：我朝列聖，皆有廟號，而況以恭靖大王之豐功盛德，徽美之稱，尚今闕焉，豈非國家一大欠典乎？追上廟號，少無不可。其令該曹趁即舉行”.

107)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9월 18일 정묘, “議定恭靖大王廟號曰定宗，蓋取諡法，安民大慮之文 (중략) 恭靖大王廟號，臣等與二品以上，館閣堂上齊會，謹此議定以入。而第念，列聖諡號，皆用八字，而獨於恭靖大王只上溫仁順孝四字，未免爲欠闕之典。今當追上廟號之

또한 송시열이 태조와 태종에게 존호를 추상할 것을 청하여 왕이 빈청에서 논의하게 하였다.¹⁰⁸⁾ 그러나 박세채, 박태유 등은 위화도회군의 義는 尊周에서 나온 것이므로 몇 백 년 후에 이것으로 존호를 올릴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국초에 존호와 존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송시열이 지적하면서 숙종 9년(1683)에 태조와 태종에게 각각 ‘正義光德’과 ‘睿哲成烈’의 존시를 4자 더 올렸다.¹⁰⁹⁾ 반면에 영풍군 이식이 인조에게 존호를 추상할 것을 청한 상소에 대하여 효종이 분명하게 하교한 것을 들어 파직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¹¹⁰⁾

그리고 숙종 24년(1698)에 노산군의 왕호를 추복할 것을 신규가 상소한 것을 계기로¹¹¹⁾ 여러 대신들이 인견하여 논의하여¹¹²⁾ 노산군의 추상 존호를 ‘純定安莊景順大王’이라 올렸다.¹¹³⁾

숙종이 선대에게 올리면서 송시열의 의견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예치의 발전과 의례의 정비에 따라 조선 초기 다르게 적용된 의례를 찾아 존호를 가상한 것이다. 숙종이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이기도 하였으나 당시 예론이 정비되어 상존호의 법이 정비되었던 것을 알

日, 加上諡號, 允合典禮. 上答曰: 加上四字宜矣. 遂議進四字”;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12월 7일 병술, “子時以玉冊金寶, 追上恭靖大王, 廟號曰定宗, 加上諡號曰懿文莊武” .
 108)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3월 25일 정묘, “時烈又於筭末, 請追上太祖大王尊號(중략) 且言: 定宗位版, 只是諡號四字, 太宗位版亦以尊號, 諡號合爲八字, 與太祖位版所題同. 而定宗諡號, 則追上廟號時, 既已加上四字, 太祖諡號今又加上, 則獨於太宗諡號, 仍舊無加, 恐欠崇奉之道, 宜爲一體追上. 教曰: 太祖追上徽號事及太宗諡號, 一時加上, 誠爲合禮” .
 109)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6월 12일 계미, “朴世采亦以爲威化回軍之義, 不必添入於諡號中(중략) 加上太祖大王尊號曰正義光德, 太宗大王尊號曰睿哲成烈” ; 김종수,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110)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4월 2일 갑술, “仁祖撥亂反正, 其中興偉烈, 同符太祖 ° 追上徽號之禮, 亦宜竝行(중략) 仍命罷職, 還給其疏” .
 111)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9월 30일 신축, “然則當時魯山之不得復稱王號者, 或由於事勢之所使然也, 而亦豈非有待於今日乎?” .
 112)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10월 29일 경오, “引見大臣, 備局諸臣. 時, 將舉魯山君復位儀節” .
 113)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11월 6일 정축, “追上魯山大君諡號曰純定安莊景順大王” .

수 있다. 그리고 적자로서 정통성을 타고난 숙종에게 선왕의 존호를 올리는 일은 당연히 반길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산군의 존호를 올리는 등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국초가 아닌 집권 안정기에 접어든 영조 16년(1740), 29년(1753), 48년(1772), 52년(1776)에 추상존호를 올렸다.

영조 16년(1740) 종실 하평정 이무가 효종의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신하들을 불러 논의하게 하였다.¹¹⁴⁾ 영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이에 대해 존호를 받기 전에 효종에게 먼저 올리려 한 것이다.¹¹⁵⁾ 그리하여 孝廟에 휘호를 올릴 것을 명하였는데 다른 일을 물리치고 이 분부는 내렸다.¹¹⁶⁾ 효종에게 ‘名義正德’이라 존호를 올릴 것을 정하였다. 이때에 김재로 등이 여러 차례 영조에게도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관은 존호가 말세의 아침이라고 평가하였다.¹¹⁷⁾ 같은 해 6월 22일 종묘에서 親祭를 행하였다.¹¹⁸⁾

또한 영의정 김재로가 숙종의 존호가 미흡하다고 한 말에 영조가 ‘仁德’을 추상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여 신하들이 8자를 올릴 것을 아뢰었다.¹¹⁹⁾ 그리하여 같은 해 12월 26일 숙종에게 ‘裕謨永運洪仁峻德’의 존호를 올렸다.¹²⁰⁾ 또한 영조 48년(1772)에 효종에게 먼저 올린 것을

114)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 5월 15일 갑인, “宗室夏坪正 懋上疏, 請加上孝宗尊號”.

115)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7월 20일 무자, “左議政金在魯率百官, 奉上尊號曰至行純德英謨毅烈”.

116)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 5월 25일 갑자, “上又下封書于大臣曰: 孝廟至德大業, 永有光於萬世. 徽號一節, 既有舊例, 今者追上, 亦繼述寧考, 顯廟之至孝也. 以此既達于慈聖, 其令禮官, 卽爲舉行. 時, 上因誣獄反案事, 轉輒激惱, 至有爲太上王之教, 而拒群臣不見, 然以宗廟禮重, 特下是教”.

117)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 5월 28일 정묘, “時原任大臣, 政府西壁, 館閣堂上, 六曹參判會于賓廳, 議孝宗大王加上尊號曰明義正德 (중략) 既有先朝已行之例, 我殿下鴻功大德, 尤宜揄揚, 願從舉國之請焉 (중략) 史臣曰: 尊號者, 末世諂諛之事也”.

118)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 6월 22일 신묘, “上行親祭于太廟, 以加上孝宗諡號也. 奉冊寶上諡, 禮畢, 還御仁政殿, 受賀頒赦”.

119) 『영조실록』 80권 영조 29년 11월 27일 무인, “領議政金在魯曰: 且以先大王仁德, 當時尊號不入仁德字, 實爲欠典”.

지적하며 현종에게도 존호를 올릴 것을 하교하고¹²¹⁾ ‘昭休衍慶敦德綏成’의 존호를 올렸다.¹²²⁾

영조는 숙종에게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린 정집을 채용하고 그 상소문을 사고에 보관하기도 하였는데¹²³⁾ 이 때문에 유생들이 이와 같은 상소를 계속 올렸는데 영남의 常民이 거창 유생이라 속여 숙종의 존호를 올릴 것을 상소하는 일도 있었다.¹²⁴⁾

이후 영조 52년(1776)에 숙종에게 존호를 추상하는 것에 대한 대신들의 청을 받아 ‘配天合道啓休篤慶’을 올렸다.¹²⁵⁾ 그런데 특이한 것이 꿈에서 선왕이 나와 대신들이 존호를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개탄스러워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에 시임, 원임인 대신과 예조당상이 존호를 일제히 청한 것이다.

그러나 중종의 묘호를 ‘조’로 할 것을 청하는 종신 광춘균 이권의 상소에는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하였다.¹²⁶⁾

이처럼 영조는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들이 존호를 올리게끔

120) 『영조실록』 80권 영조 29년 12월 26일 병오, “上行太廟大享, 加上肅宗大王尊號曰裕謨永運洪仁峻德”.

121) 『영조실록』 119권 영조 48년 10월 22일 계미, “若云繼述, 崇陵爲先, 而差過二代, 其將祧矣. 寧陵已追上徽號, 於今爲此, 其亦繼述之意”.

122) 『영조실록』 127권 부록 영조 대왕 행장, “冬十月, 加上顯宗大王尊號曰昭休衍慶敦德綏成”.

123) 『영조실록』 119권 영조 48년 12월 28일 무자, “京畿儒生鄭堞疏請肅廟追上尊號及昭寧園封陵事, 上命儒生持入疏本讀奏. 訖, 上曰: 能有爲國之心可尙. 然予若許此, 將復請八字, 豈不悶乎? 疏本命藏史庫, 鄭堞命錄用. 自此鄉儒希望, 相繼陳疏”.

124) 『영조실록』 120권 영조 49년 윤3월 13일 임신, “館學儒生元啓夏等上疏, 請肅宗大王追上尊號, 及昭寧園封陵事, 上命入侍賜批, 藏其疏於史庫”; 『영조실록』 122권 영조 50년 1월 22일 병자, “居昌儒生金重鎰等上疏, 請肅廟尊號, 昭寧園封陵, 上召入, 令讀不能句絕, 上曰: 予若有誠, 豈令此輩若此乎? 事當嚴處, 而以忌器參酌停舉. 使京兆卽逐江郊, 其疏藏于史庫. 翌日令京兆考籍, 乃嶺南常民也”.

125)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 1월 7일 기묘, “上曰: 夜夢異常. 陟降臨止, 教以 ‘予知汝孝及坤殿之賢矣, 此時大臣尙無一言. (중략) 且聖人之夢, 本非偶然, 此實陟降之所指導也. 今日則未承俞音之前, 決不敢退去矣’”.

126)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10월 24일 병술, “中宗大王撥亂反正, 應天順人, 廟號宜爲祖而不宜爲宗也. 批曰: 茲事莫重莫大, 二百餘年 列聖朝所不爲. 其敢輕議於今日”.

화두를 던지기도 하고 존호 올리기를 청하는 유생을 채용하여 상존호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존호 올리는 일에 나섰다.

정조는 자신의 친아버지인 장조에게 세 차례의 추상존호를 올리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양아버지인 진종을 추존하면서 존호를 올렸다. 또한 영조에게도 추상존호를 한 차례 올렸다.

정조는 즉위한 해에 장조에게 ‘莊獻’이라는 존호를 올렸다.¹²⁷⁾ 정조 7년(1783) 3월 존호를 올리는 예절을 올리라고 명하고 네 자로 字數를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綏德敦慶’이라는 존호를 빈칭에서 올리자¹²⁸⁾ 같은 해 4월 1일 장헌세자에게 존호를 올렸다.¹²⁹⁾ 그리고 다음 해인 정조 8년(1784)에 영조, 장헌세자에게 존호를 추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올리도록 하고하였다. 결국 영조에게 추상하는 존호를 ‘立經正紀配命凝道’라고 하고 장헌세자에게 추상하는 존호를 ‘純仁景祉’라고 하였다.¹³⁰⁾ 영조에게는 ‘配命垂純景曆洪休’를 올렸다.¹³¹⁾ 존호를 추상한 예식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치하하기도 하였다.¹³²⁾ 정조 19년(1795)에는 장헌세자에게 존호를 추가하여 ‘章倫隆範基命彰休’를 올렸다.¹³³⁾

헌종 13년(1847)에는 1848년(헌종 14) 대왕대비인 순원왕후의 육순과

127)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3월 20일 신묘, “追上思悼世子尊號曰莊獻, 封垂恩墓曰永祐園, 廟曰景慕宮 (중략) 上曰: 先朝以思悼賜諡者, 聖意有在, 今予只欲寓終天之悲慕而已。從古帝王之與聞諡法, 予嘗非之。如或過於溢美, 則豈予本意? 諸臣其知之也”。

128) 『정조실록』 15권 정조 7년 3월 8일 기해, “賓廳, 議進王大妃尊號曰惠徽, 莊獻世子尊號曰綏德敦慶, 惠嬪尊號曰慈禧”。

129) 『정조실록』 15권 정조 7년 4월 1일 신유, “追上尊號于莊獻世子 (중략) 謹奉竹冊, 加上尊號曰綏德敦慶”。

130) 이때 가상한 영조의 존호는 뒤에 ‘配命垂統景曆洪休’라고 고쳤고, 장헌세자의 존호에서 ‘純’ 자는 뒤에 ‘弘’ 자로 고쳤다(『정조실록』 18권 정조 8년 7월 7일 경신; 『정조실록』 18권 정조 8년 9월 17일 기사, “英宗大王追上尊號曰立經正紀配命凝道, 【後改配命垂統景曆洪休。】”)。

131) 『정조실록』 18권 정조 8년 9월 13일 을축, “追上尊號曰配命垂統景曆洪休”。

132) 『정조실록』 18권 정조 8년 9월 18일 경오, “敎曰: 日吉辰良, 廟殿宮追上加上之禮, 次第順成, 群工齊賀, 八方誕誥。予小子幾年忱悃, 今幸少伸耳”。

133)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1월 17일 경자, “追上尊號于莊獻世子”。

왕대비 신정왕후의 망오를 맞이하여 순종과 익종의 존호를 올릴 것을 하고 하였다.¹³⁴⁾ 그리하여 같은 해 11월 19일 빈청에서 순종에게는 ‘體聖凝命欽光錫慶’, 익종에게는 ‘體元贊化錫極定命’의 존호를 올렸다.¹³⁵⁾ 그러자 다음 해 3월 16일에는 순종과 익종의 추상존호를 올렸다.¹³⁶⁾

철종 역시 많은 가상존호를 올렸는데 특히 종법상의 아버지인 순조에게 여섯 차례의 추상존호를 올렸다. 철종 3년(1852)에 왕이 신하들에게 순종의 존호를 가상하는 일에 대한 의견을 물어 존호도감을 합설하여 거행하게 하였다.¹³⁷⁾ 그리고 7일 후 빈청에서 ‘繼天配極隆元敦休’를 올리자¹³⁸⁾ 종묘의 춘향을 행하고 순종의 추상존호와 책보를 올렸다.¹³⁹⁾

또한 익종, 헌종에게 존호를 추상하는 것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철종이 논의를 먼저 제기하였고¹⁴⁰⁾ 빈청에서 익종의 존호를 ‘聖憲英哲睿誠淵敬’, 헌종의 존호를 ‘體健繼極中正光大’로 올리자¹⁴¹⁾ 종묘에서 동향을 행하고 추상존호책보를 올렸다.¹⁴²⁾ 그리고 장헌세자의 탄생 再回甲을 축하하기 위해 존호를 추상할 것을 전교하여¹⁴³⁾ 빈청에서 ‘贊元憲誠啓祥顯

134) 『헌종실록』 14권 헌종 13년 11월 15일 신묘, “敎曰: 明年, 卽我大王大妃殿恰躋六旬, 王大妃殿望五之慶年也 (중략) 純宗大王追上尊號都監, 大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 翼宗大王追上尊號都監, 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 合設舉行”.

135) 『헌종실록』 14권 헌종 13년 11월 19일 을미, “賓廳, 以上號望, 啓, 純宗大王追上尊號望體聖凝命欽光錫慶, 大王大妃殿加上尊號望隆禧, 翼宗大王追上尊號望體元贊化錫極定命, 王大妃殿加上尊號望獻聖”.

136) 『헌종실록』 15권 헌종 14년 3월 14일 무자, “上奉純宗大王, 翼宗大王追上尊號冊寶, 詣太廟”.

137) 『철종실록』 4권 철종 3년 11월 12일 무오, “純宗大王追上尊號都監, 大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 合設舉行”.

138) 『철종실록』 4권 철종 3년 11월 19일 을축, “賓廳啓, 純宗大王追上尊號望, 繼天配極隆元敦休, 大王大妃殿加上尊號望英德”.

139) 『철종실록』 5권 철종 4년 1월 4일 기유, “行宗廟春享追, 上純宗大王尊號冊寶”.

140) 『철종실록』 5권 철종 4년 8월 9일 신사, “上曰: 今日卿等之引進, 欲議典禮也. (중략) 翼宗, 憲宗兩廟, 宜有追陳尊號之舉, 而尙未及舉, 心常缺然”.

141) 『철종실록』 5권 철종 4년 8월 20일 임진, “賓廳啓: 翼宗大王追上尊號望聖憲英哲睿誠淵敬, 王大妃殿加上尊號望正仁, 憲宗大王追上尊號望體健繼極中正光大, 孝顯王后追上尊號望端聖, 大妃殿加上尊號望淑敬”.

142) 『철종실록』 5권 철종 4년 10월 8일 기묘, “行宗廟冬享追上翼宗大王 `憲宗大王 `孝顯王后尊號冊寶”.

熙’를 존호로 의정하여¹⁴⁴⁾ 올렸다.

철종은 대왕대비가 승하하자 휘호를 올리면서 순조 역시 ‘祖’를 올릴 것을 청하는 지돈녕 이학수의 상소¹⁴⁵⁾를 계기로 순조로 묘호를 올리고 존호를 ‘懿行昭倫熙化峻烈’이라 하였다. 그리고 철종 9년(1858) 순원왕후가 칠순이 되는 해를 경하하면서 순조에게도 존호를 ‘大中至正洪勳哲謨’로 올렸다. 철종 12년(1861)에는 순조가 즉위한 지 回甲이 되는 해이자 순원왕후의 왕비 책봉 6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乾始泰亨昌運弘基’라 존호를 추상하였다. 다음 해인 철종 13년(1862)에는 순원왕후의 왕비 책봉 회갑을 경하하며 ‘高明博厚剛健粹精’이라 존호를 올렸다.¹⁴⁶⁾

고종은 가장 많은 추상존호를 올렸는데 한번 존호를 올릴 때 한꺼번에 많은 왕들에게 존호를 올렸다. 또한 문조에게 11회로 가장 많은 추상존호를 올렸다. 특히 일본에 의한 국권 침탈에 맞서 대한제국의 국격과 황제로서 先王에게도 황제로 존송함은 물론 존호를 올렸다.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왕통의 체계를 재정비 하여 대외적으로 국가의 독립성과 안정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1899년 대한국국제를 반포¹⁴⁷⁾하고 대한제국으로 국격이 승격하면서 그 해 12월 태조, 장조, 정조, 순조, 문조 황제를 소급하여 높일 묘호와 황제 칭호를 의정하여 올렸다.¹⁴⁸⁾

143) 『철종실록』 6권 철종 5년 11월 3일 무진, “召見, 時原任大臣禮堂永恩府院君. 教曰: 今日亞歲, 引見卿等, 欲議典禮矣. 明年乙卯, 卽景慕宮誕彌之再回甲也, 予小子追慕倍切. 當追上尊號, 而趁此議行, 於禮允合, 卿等之意何如?” .

144) 『철종실록』 6권 철종 5년 11월 6일 신미, “賓廳啓, 追上尊號議定, 莊獻世子尊號望贊元憲誠啓祥顯熙, 惠嬪尊號望裕靖” .

145) 『철종실록』 9권 철종 8년 8월 9일 경사, “臣亦曰 ‘祖功宗德, 兩隆并美, 祖未必優於宗, 宗未必貶於祖, 而特以所遭之會而異其稱耳.’ 我世祖大王 ‘仁祖大王, 以繼體之君而稱祖, 宣祖大王以辨宗系戡倭亂而稱祖, 此誠吾先君已行之典, 而於我國家禮, 亦宜也. 伏願殿下, 以臣芻蕘之言, 博詢廷臣, 若卿士大夫, 同則斯可爲一國共公之見, 而萬世不易之議也” .

146) 『철종실록』 13권 철종 12년 11월 24일 무신, “賓廳啓: 純祖大王追上尊號望, 高明博厚剛健粹精, 純元王后追上尊號望神運” .

147)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8월 17일 양력, “大韓國國制: 第一條, 大韓國은 世界萬國에 公認되온바 自主獨立호은 帝國이니라” .

먼저 익종과 헌종의 추상존호도감을 실시하도록 전교하여 예조에서 존호를 올리는 절차를 아뢰고 빈전에서 익종에게 ‘隆德純功篤休弘慶’, 헌종에게 ‘至聖廣德弘運章化’, 철종에게 ‘欽命光道敦元彰化’의 존호망을 종묘에서 올렸다.¹⁴⁹⁾

그리고 건국 480년을 기념하여 태조와 태종에게도 존호를 올릴 것을 전교하여¹⁵⁰⁾ 빈청에서 존호망을 올리자 태조에게 ‘應天肇統廣勳永命’, 태종에게 ‘建天體極大正啓佑’의 존호 책보를 올렸다.¹⁵¹⁾

태조, 장종, 정종, 순조, 익종황제를 추존하는 의식을 거행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였다.¹⁵²⁾ 그리하여 의정부에서 태조, 장종, 정종, 순조, 익종황제를 소급하여 높일 묘호와 황제 칭호를 논의하여 상주하였다.¹⁵³⁾

148)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7일 양력, “議政府, 以太祖大王廟號望 ‘太祖’, ‘元祖’, ‘藝祖’, 帝號望 ‘高皇帝’, ‘純皇帝’, ‘烈皇帝’, 神懿王后諡號望 ‘高皇后’, ‘純皇后’, ‘烈皇后’, 神德王后諡號望 ‘高皇后’, ‘純皇后’, ‘烈皇后’, 莊宗大王廟號望 ‘莊祖’, ‘光祖’, ‘興祖’, 帝號望 ‘懿皇帝’, ‘昭皇帝’, ‘哲皇帝’, 獻敬王后諡號望 ‘懿皇后’, ‘昭皇后’, ‘哲皇后’, 正宗大王廟號望 ‘正祖’, ‘聖祖’, ‘敬祖’, 帝號望 ‘宣皇帝’, ‘裕皇帝’, ‘元皇帝’, 孝懿王后諡號望 ‘宣皇后’, ‘裕皇后’, ‘元皇后’, 純祖大王廟號望純祖, ‘熙祖’, ‘肅祖’, 帝號望 ‘肅皇帝’, ‘淳皇帝’, ‘寧皇帝’, 純元王后諡號望 ‘肅皇后’, ‘淳皇后’, ‘寧皇后’, 翼宗大王廟號望 ‘文祖’, ‘德祖’, ‘康祖’, 帝號望 ‘翼皇帝’, ‘章皇帝’, ‘簡皇帝’ 議定上奏. 竝首望敬依”.

149)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2월 16일 병오, “翼宗大王追上尊號都監, 大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 憲宗大王, 孝顯王后追上尊號都監, 王大妃殿加上尊號都監, 哲宗大王追上尊號都監, 大妃殿加上尊號都監, 合設舉行, 議號當日舉行”.

150)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11월 11일 정유, “明年壬申, 卽開國八回甲也. 我太祖, 太宗創業垂統在是年, 嚮明出治在是闕 (중략) 太祖大王追上尊號”.

151)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11월 18일 갑진, “賓廳, 太祖大王追上尊號望 ‘應天肇統廣勳永命; 太宗大王追上尊號望 ‘建天體極大正啓佑’ :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월 1일 병술, “今當太歲壬申, 兩聖朝聖德神功, 方迫闡顯冊矣”.

152)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3일 양력, “太祖大王追尊配天之儀, 莊宗大王, 正宗大王, 純祖大王, 翼宗大王追尊之禮, 令掌禮院博考舉行”.

153)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7일 양력, “議政府, 以太祖大王廟號望 ‘太祖’, ‘元祖’, ‘藝祖’, 帝號望 ‘高皇帝’, ‘純皇帝’, ‘烈皇帝’ 神懿王后諡號望 ‘高皇后’, ‘純皇后’, ‘烈皇后’, 神德王后諡號望 ‘高皇后’, ‘純皇后’, ‘烈皇后’, 莊宗大王廟號望 ‘莊祖’, ‘光祖’, ‘興祖’ 帝號望 ‘懿皇帝’, ‘昭皇帝’, ‘哲皇帝’, 獻敬王后諡號望 ‘懿皇后’, ‘昭皇后’, ‘哲皇后’, 正宗大王廟號望 ‘正祖’, ‘聖祖’, ‘敬祖’, 帝號望 ‘宣皇帝’, ‘裕皇帝’, ‘元皇帝’ 孝懿王后諡號望 ‘宣皇后’, ‘裕皇后’, ‘元皇后’, 純祖大王廟號望純祖 ‘熙祖’, ‘肅祖’ 帝號望 ‘肅皇帝’, ‘淳皇帝’, ‘寧皇帝’, 純元王后諡號望 ‘肅皇后’, ‘淳皇后’, ‘寧皇后’, 翼宗大王廟號望 ‘文祖’, ‘德祖’, ‘康祖’, 帝號望 ‘翼皇帝’, ‘章皇帝’, ‘簡皇帝’ 神貞王后諡號望 ‘翼皇后’, ‘章皇后’, ‘簡皇后’,

또한 영조에게 ‘祖’를 올리면서 존호를 올릴 것을 의논하여¹⁵⁴⁾ 빈칭해서 존호 망단자를 올렸다.¹⁵⁵⁾ 숙종에게 고종 27년(1890)¹⁵⁶⁾에, 선조에게 소급하여 고종 29년(1892)¹⁵⁷⁾에 존호를 올렸다. 또한 고종 36년(1899)에는 정조와 장조에게 존호를 올렸으며 특히 장조는 이때에 장종으로 추상되었다.¹⁵⁸⁾ 같은 해에 인조, 효종에게도 존호를 올렸다.¹⁵⁹⁾

이후 고종 역시 순종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고 선위하면서 상황이 되었다.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 이상설, 이위중, 이준을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려 한 사건을 빌미로 일본의 압력에 의해 순종에게 선양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순히 순종이 대리로 정사를 보다가 황제의 자리를 이어 받았으며 태황제로 존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⁰⁾ 당시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위원이 일본인을 비롯한 친일세력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고종과 순종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⁶¹⁾ 이와 같이 순종이 즉위한 다음 해에 1908년 진중, 헌중, 철중에게 황제의 존호를 올렸다.¹⁶²⁾

議定上奏. 竝首望敬依. 又以神貞王后尊號中‘翼謨’, 改以‘懿謨’, 議定上奏, 敬依.” .
 154)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11월 28일 경오, “有功稱祖, 乃是不易之典, 而今日追闡, 尙云晚矣” .
 155)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12월 5일 병자, “賓廳議啓: 英宗大王廟號望‘英祖’, 謚號望‘正文宣武熙敬顯孝’, 尊號望‘中和隆道肅莊彰勳’, 貞聖王后尊號望‘元烈’, 貞純王后尊號望‘正顯’.”
 156) 『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 1월 4일 을사, “賓廳啓: 肅宗大王追上尊號望‘正中協極神毅大勳’, 仁敬王后追上尊號望‘純懿’, 仁顯王后追上尊號望‘元化’, 仁元王后追上尊號望‘正運’” .
 157) 『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 4월 25일 계축, “仍攝上宣祖大王, 懿仁王后, 仁穆王后追上尊號冊寶後, 經宿” .
 158)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9월 1일 양력, “議政府以莊獻世子追崇廟號望‘莊宗’” .
 159)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30일 양력, “議政府以仁祖大王追上尊號望‘開天肇運正紀宣德’(중략) 孝宗大王追上尊號望‘欽天達道光毅弘烈’” .
 160) 『순종실록』 1권 순종즉위년 7월 19일 양력, “承命代理聽政, 仍受禪”
 161) 『순종실록』 4권 부록 편찬위원, “編纂委員. 委員長: 李王職長官從三位勳一等法學博士篠田治策. 副委員長: 李王職次官從三位勳一等男爵李恒九. 監修委員: 京城帝國大學教授從三位勳三等小田省吾 (하략).” .
 162) 『순종실록』 2권 순종 1년 5월 11일 양력, “內閣以眞宗大王帝號望昭皇帝, 裕皇帝, 安

고종과 순종은 일제의 위협으로 인한 국가의 위태로움과 외세에 의한 왕위 선양의 정당성을 국격의 격상과 그에 따른 선대의 황제 추존을 통해 대외적으로 안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와 직계 선대 왕과 추존왕을 황제로 국격에 맞게 존송하여 대한제국이 정통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선왕조의 계통을 공인받은 것이다.

한편 존호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는 기본적인 이유가 의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성리학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조선사회에서는 의례가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 따라서 의례화가 되었던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호를 올리는 의례가 형식화 되어가면서 禮號化되었고 조선 전 중기까지 왕권 강화의 상징성 또한 점차 잃어갔는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尊號는 왕의 공식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다.¹⁶³⁾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전에 수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왕에게 존호가 많이 올라가거나, 대비가 여러 명 생존했을 때의 왕들이 존호를 많이 받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수차례의 존호를 받은 왕의 호칭은 수십 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追上尊號와 追上諡號는 더욱 더 늘어났다. 그것은 후대 왕들이 자신이 존호를 받거나 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경우에 의례적으로 선대왕에게 존호나 시호를 追上了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추상존호와 추상시호는 선대왕에 대해 엄밀한 재평가의 결과라기보다는 의례적인 행사로 변질되어 갔다.

皇帝, 孝純王后諡號望昭皇后, 裕皇后, 安皇后, 憲宗大王帝號望成皇帝, 桓皇帝, 熙皇帝, 孝顯王后諡號望成皇后, 桓皇后, 熙皇后, 孝定王后諡號望成皇后, 桓皇后, 熙皇后, 哲宗大王帝號望章皇帝, 靖皇帝, 康皇帝, 哲仁王后諡號望章皇后, 靖皇后, 康皇后, 議定上奏, 竝首望敬依.”

163)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경우에는 尊號를 반드시 썼다. 존호를 여러 차례 받은 경우, 왕에게 상소문 등을 올린다면 존호를 받은 순서대로 썼다. 예컨대 세 차례 존호를 받았다면 8자씩 순서대로 하여 24자의 존호를 쓰고 맨 후에 主上殿下이라고 썼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초에는 존시와 존호에 대한 혼동으로 생전의 존호를 존시와 함께 8자로 쓰기도 하여 태조, 정종, 태종의 경우 숙종 때 송시열의 건의로 4자를 더 올렸다.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와 폐위된 광해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명종, 선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들이 존시를 올렸다. 그리고 선왕이 살아 있던 정종과 세종의 경우 선왕을 존송하면서 추상존호를 올렸다. 이 외에 추상존호의 경우는 성종이 즉위하면서 덕종을 추존하며 올린 것이다. 이 시기에는 尊諡를 받는 것 외에는 왕 생전에 존호를 받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대체적으로는 부담스러워 하며 사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⁶⁴⁾ 이처럼 국초에는 존호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신하들 역시 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거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인 변화가 컸던 국초와 세조, 선조, 광해군대에는 現王에게 존호를 올리기도 하였다.

경종대까지도 존호 및 시호를 올린 것은 조선 초기와 유사하다. 숙종 때 재위 40년을 경하하기 위하여 올린 ‘顯義光倫睿聖英烈’을 제외하고는 생전에 존호를 받지 않았으며 사후에 영조, 고종이 추상하여 올렸다. 마찬가지로 왕들은 겸양지덕의 예를 들어 생전에 거절했음은 물론 추상존호도 같은 이유로 받지 않았다. 또한 신하들도 존호를 가상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했고,¹⁶⁵⁾ 숙종처럼 생전에 존호를 받았을 때 존호를 받지를 말 것을 청하거나 비난하기도 하였다.¹⁶⁶⁾ 이처럼 경종대까지 존호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164) 연산군도 신하들이 존호를 올릴 것을 의논하자 “헌천 홍도의 칭호는 나에게 지나치다”며 거절하였다(『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9일 입술, “傳曰: 憲天弘道之號, 於予殆過矣”).

165) 『효종실록』 1권 효종 즉위년 6월 8일 병신, “禮曹參判許啓上疏以爲: 大行大王諡號, 無植綱常, 敘彝倫, 正名分, 定民志等字義, 請追上尊號上下廟堂議之. 左議政李景奭等以爲: 廟號仁字, 包義, 禮, 智之德, 兼有萬善具足之義. 且憲文烈武四字, 實合撥亂反正中興之功業, 故廟號, 諡號, 既以此議定. 凡尊號, 諡號, 存亡雖殊, 徽稱則一也. 今加尊號於諡號之上, 恐非古禮”.

166)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1월 15일 계사, “正言李秉常上疏請勿受尊號, 上賜優批”;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1월 17일 을미, “史臣曰: 上之謙德至矣, 朝臣等不思將順之義, 終至強迫準請而後已. 使十餘年謙抑之德, 黷昧不揚, 獨不畏百世之譏議乎? 然,

대체적으로 아첨하는 것으로 여기고 겸양의 덕을 보이기 위해 절제하는 모습 보였다.¹⁶⁷⁾ 인조가 올린 추상존호는 인조가 즉위하면서 원종을 추존하여 존호를 올린 것이다. 또한 숙종 9년 올린 추상존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송시열이 태조와 태종의 시호를 더하는 의를 밝히면서 추상존호와 존호에 대한 논의로 새로 올리게 된 것이다.

영조는 이전과 달리 영조 자신이 여러 차례 존호를 받았으며, 先王인 효종·현종·숙종을 비롯한 先后 등에게 존호를 올렸다. 정조가 즉위하게 되면서는 영조의 맏아들로 정조의 양아버지가 된 진종이 추존되면서 존호를 받았다.

사도세자는 정조가 즉위한 이후 존호를 받았으며 현종이 아버지인 문조가 추존되면서 존호를 받았다. 그 외에는 조선조 말에 이르기까지 지나칠 정도로 존호를 자주 올리게 되었다. 현왕에게 올리는 가상존호뿐 아니라 선왕에게 추상존호하는 일이 잦았으며, 영조와 고종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영조의 경우 효종과 숙종에게 추상존호를 올렸다. 특히 숙종에게는 영조 29년(1753), 영조 52년(1776) 두 차례에 걸쳐 올렸다. 또한 사도세자에게도 추상존호를 올리며 애도하였다. 재위기간이 길었고 왕권 강화에 집중한 만큼 영조 생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존호를 올린 것이다.

정조는 자신의 양아버지인 진종을 추존하면서, 친아버지인 사도세자에게도 추상존호를 올렸다. 또한 영조에게는 두 차례의 존호를 올렸다. 현종 또한 자신의 아버지인 문조를 추존하면서, 순조에게도 추상존호를 올렸다.

철종은 추상존호를 올리는데 사도세자, 문조, 현종에게 각 한 차례씩 올렸고 순조에게 다섯 차례의 추상존호를 올렸다. 가장 많은 존호를 올린 고

朱子曰: ‘尊號若不是, 人君自理會得, 如何說今?’ 上之聽許太遽, 或疑當初聖志, 未出於堅定, 惜哉!’ .

167) 이와 관련하여 김종수는 1649년(효종 즉위), 1683년(숙종 9), 1705년(숙종 31), 1704년(숙종 30), 1713년(숙종 39)의 조선왕조실록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다(김종수,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종 대에는 고종 생전에 올린 가상존호와 선왕에게 올리는 추상존호를 합치면 총 30회에 이른다. 추상존호만 23회 올렸으며 특히 문조에게 11회 올렸다. 또 고종에게 올린 존호 또한 6회로 가장 많다. 국가의 변란이 많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상존호를 올려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표 2>을 통하여 조선시대를 통하여 존호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追上尊號와 追上諡號는 더욱 더 늘어났다. 이는 영조가 장수한 이유도 있겠으나 영조 스스로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면서 신하들에게 존호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니 이때부터 존호의 의미에서 신하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축소되면서 존호로서 왕의 정치적 역할을 가늠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후대 왕들이 자신이 존호를 받거나 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경우에 의례적으로 선대왕에게 존호나 시호를 追上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추상존호와 추상시호는 선대왕에 대해 엄밀한 재평가의 결과라기보다는 의례적인 행사로 변질되어 갔다.

<표 2> 왕에게 존호를 올린 횟수

왕(묘호)	존시를 올린 횟수	추상존호를 올린 횟수	상왕, 노상왕, 태상왕으로 존호를 올린 횟수	現王에게 존호를 올린 횟수
태조	·	4	·	·
정종	1	·	1	·
태종	·	4	2	·
세종	3	·	2	·
문종	1	·	·	·
단종	1	·	·	·
세조	·	1	1	1
예종	1	·	1	·
성종	1	1	·	·

왕(묘호)	존시를 올린 횟수	추상존호를 올린 횟수	상왕, 노상왕, 대상왕으로 존호를 올린 횟수	現王에게 존호를 올린 횟수
연산군	1	·	·	1
중종	·	·	·	·
인종	1	·	·	·
명종	1	·	·	·
선조	·	·	·	2
광해군	·	4	·	5
인조	·	1	·	·
효종	1	·	·	·
현종	1	·	·	·
숙종	3	2	·	1
경종	1	·	·	·
영조	1	4	·	4
정조	1	3	·	·
순조	1	·	·	1
헌종	1	3	·	·
철종	2	8	·	1
고종	1	23	·	6
순종	1	·	·	1

선왕에 대한 존승과 추상존호는 곧 왕위 계승의 정통성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선왕에 대한 추존에 대하여 적극적이었으며 상존호를 통해 왕위 계승이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국초에는 존호에 대한 체계도 잡혀있지 않았고 성리학 사회의 미덕인 겸덕을 이유로 꺼려하였다. 그러나 영조 이후부터는 주로 왕이 먼저 존호를 가상할 것을 신하들에게 하교하면 별다른 이론이 없이 존호를 정하고 바로 존호를 올렸다. 왕이 먼저 존호를 올릴 것을 대신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우 합의에 도달하는 정도가 빨랐다. 존호의례는 선대의 의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선왕에게 가상할 때에는 선대의 의례의 부족함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여 다시 올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상존호가 세조 이후 정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왕

의 업적이 존호를 올리는 당시의 정치적 견해와 맞아야 했기 때문에 상존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신들의 정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종과 순종의 경우에는 대외적인 압력에 대한 국체의 보존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추상존호의 경우 영조 이후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남발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의례화 되었다.

3. 現王에 대한 加上尊號

채위 시의 現王이 존호를 받는다는 것은 당대의 업적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치변란을 통해 집권한 초반 강력한 왕권에 대한 왕의 치세를 칭송하여 존호를 통해 계승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또한 뚜렷한 업적이나 공덕이 있는 경우에 받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긴 치세에 대한 칭송으로 남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세조, 연산군, 선조, 광해군, 고종의 경우를 통해 살펴해보겠다.

세조는 정치변란으로 인한 권력 교체로 왕위에 집권하면서 그 공덕을 치하하기 위하여 존호를 받았다. 세조 즉위 후 국왕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로 개편하며 강력한 왕권강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계유정난 이후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자 세조 3년(1457) 1월 영의정 정인지 등이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였다. 그 이유는 임금이 계책을 정하여 국가의 위난을 평정해서 종묘와 사직을 편안하게 한 공덕으로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한 것이다.¹⁶⁸⁾

168)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6일 신사, “議政府領議政鄭麟趾等, 以上定策靖難, 永安宗社, 肇稱殷禮, 親祀南郊, 稱述功德, 請上尊號. 其箋曰: 聖人大德, 蔚啓泰亨之期, 臣子至誠, 欲上徽美之號, 俯垂睿鑑, 優納卑懷. 恭惟協舜欽明, 邁湯勇智, 拔亂反正, 宗社綿億載之洪休, 尊祖配天, 禮樂回三代之盛制. 茲值精禋之舉, 敢薦丕顯之稱. 請上尊號曰承天體道烈文英武, 伏望曲循輿情, 亟賜俞允, 以答臣民之誓願, 永示子孫之儀刑. 巍乎功, 煥乎文, 益

이에 같은 해 3월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承天體道烈文英武’ 존호를 올리며 하례하였다. 조선시대에 재위 시 現王이 존호를 받은 것인 세조가 처음이다. 존호를 올리는 과정에서 세조역시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존호를 올리는 의례가 곧바로 진행이 된 것은 세조의 즉위로 인한 공덕을 칭송하여 순조롭게 왕위계승이 이어졌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연산군은 오류를 펼치고 칠덕을 베풀었다는 공덕으로 연산 11년(1505) 6월에 신료들이 청하여 ‘憲天弘道’의 존호를 올리고자 하였으나 지나치다며 거절하기도 하였는데, 같은 해 8월 군신과 왕세자로부터 존호를 받았다.¹⁶⁹⁾ 한차례 받은 존호는 중종반정 이후 사관에 의해 스스로 존송하였다고 비판받기도 하였다.¹⁷⁰⁾ 중종 원년(1506) 연산군이 받은 憲天弘道の 金印을 철폐하고¹⁷¹⁾ 연산군에 봉하였다.¹⁷²⁾ 연산군이 폐주가 되면서 당연히 연산군이 받은 존호를 고치는 것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다.¹⁷³⁾ 정쟁에서 패배한 왕은 당연히 왕위를 빼앗길 뿐 아니라 존호 역시 본인이 받은 것 혹은 선왕에게 올린 것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선조와 광해군은 전쟁 과정에서 사기 진작, 왕권과 정통성의 안정, 치세의 공덕, 종계변무 등의 이유로 존호를 받았다. 존호를 최대한 절제하려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전쟁과 전후 수습과정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존호를 이용한 정치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계변무와 같이 중국과의 외교관계의 전환점이자 조선 왕가 계통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有光於青簡；手之舞，足之蹈，庶少伸於丹衷。” .
 169) 『연산군일기』 59권 연산 11년 8월 26일 무인, “王御明政殿, 群臣奉冊寶, 獻尊號” .
 170)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일 무인, “又自尊崇曰: ‘憲天弘道經文緯武.’ 受賀頒赦. 自古荒亂之主雖多, 未有如燕山之甚者也” .
 171)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일 무인, “又啓曰: 廢王所用憲天弘道金印及尙瑞院所藏諸押與承命牌, 請皆毀之. 傳曰: ‘可.’ ” .
 172)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3일 기묘, “朴元宗等議, 封前王爲燕山君” .
 173)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5일 무술, “廢主自以爲大, 自加尊號. 【廢主於乙丑六月, 設尊崇都監, 自上尊號曰: ‘憲天弘道經文緯武加上, 慈順王大妃徽號曰: ‘和惠’ .】 故竝上大妃殿尊號, 改之爲當.” .

現王의 공덕을 치하하기 위해 존호를 올리는 경우 특히 겸덕이 중시되기 때문에 더욱 사양하는 모습을 보인다. 선조 대에는 긴 재위기간(1567년~1608년) 동안 임진왜란 등 잦은 변란이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면서 존호를 올리는 일이 많았는데, 선조 자신은 이를 물리치기도 하고 존호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선조 21년(1588)에는 宗系辨誣를 이유로 신료들이 ‘正倫立極盛德弘烈’를 존호로 올리는 과정을 통해 선조가 존호를 거절하고 결국 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후에 혼란한 국가의 상황을 들어 존호를 삭제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처음 존호를 올리기 위해 동·서반이 청하거나¹⁷⁴⁾ 2품 이상의 관료들이 존호를 올리는¹⁷⁵⁾ 등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선조가 윤택하지 않았으며 민망하고 심기가 크게 상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했다.¹⁷⁶⁾ 그러나 선조 22년 10월 성절서 공조참판 윤근수가 황제의 칙서와 《회전》을 가지고 연경에서 돌아오자 종계변무에 대한 논의가 더욱 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이에 12월부터 종계변무를 이유로 존호를 올리는 일에 대하여 다섯 번을 청하고 청하는 일이 계속되었다.¹⁷⁷⁾

174)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19일 신축, “東西班二品以上詣闕, 以宗系惡名得正事, 請上尊號于主上事, 入啓” .

175)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21일 계묘, “左相鄭惟吉, 率二品以上, 啓請上尊號(중략) 答曰: 不允.”;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윤6월 1일 임오, “上尊號, 更啓曰(중략) 答曰: 今又如是, 罔知所喻. 此事若少有毫分可堪之勢, 則前日詎敢有如彼之言? 至於頃日經筵, 又歷陳不當之意, 不圖微志未白, 朝廷又擾其爲, 驚愕悶迫, 難以盡言.” “上號事, 再啓, 答曰: 守宗廟二十年, 日夜恐有過濫之事, 獲戾于上下, 豈有揭號自顯之理? 若至於疚懷發病鬱鬱致疾, 則愛戴之誠, 果安在哉? 人主不患不尊, 安用號爲? 實是一駭怪無益之事, 願勿更言.”;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윤 6월 2일 계미, “上尊號, 三啓(중략) 四啓, (중략) 仍五啓曰: 物情方鬱, 臣等强拂聖教, 而今日批答, 以不過時月間爲教, 臣等不勝感激, 姑待後日, 退去. 答曰: 知道. 至極感喜.” .

176)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25일 정미. “二品以上, 上尊號事入啓, 答曰: 大概不圖權幸之途, 遭此悶迫之事, 予懷詎能知之? 朝廷如是啓之, 爲祖宗耳. 其意已領之, 反加駭怪之號於後嗣之身, 俾不得自安, 無面於臣民之上, 不敢知是何禮也. 不幾於徒爲虛文未節之歸耶? 近因此事, 心氣大傷.” .

177)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1일 갑신;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3일 병술;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7일 경인;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8일 신묘;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9일 임진;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0일 계사;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1일 갑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2일 을미;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7

결국 삼정승이 존호를 청한 후에야 이를 따르고 ‘正倫立極盛德洪烈’의 존호를 받았다.¹⁷⁸⁾ 선조 수정실록에도 상이 허락하지 않다가 오랜 뒤에야 억지로 따랐다고 실려있다.¹⁷⁹⁾ 그런데 선조실록에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는 과정과 이를 거절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만 삼정승이 청한 후 승인하는 과정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이것에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조는 곧 존호를 삭제하라는 명을 내리게 되는데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즉 시 2품 이상의 신료들이 명을 거두기를 청했으나 선조는 ‘결단코 그대로 둘 수 없어 속히 깎아내야 한다.’ 고 하였다.¹⁸⁰⁾ 대신들이 명을 거둘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복수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임진왜란에 집중해야 할 때에 이처럼 왕이 존호를 삭제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선조 25년(1592) 11월에도 뜻을 거두기를 청하는 신료들에게 또 다시 한번 존호 삭제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좌의정 윤두수 등이 禪位의 뜻을 거두기를 청하자 오히려 지금이 물러나기 합당한 때라고 하며 오히려 唐德宗의 故事¹⁸¹⁾까지 들어 존

일 경자

178)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28일 신축, “三公率百官, 請上尊號, 依啓.”; 『선조실록』 24권 선조 23년 2월 11일 계미, “上大殿尊號, 曰正倫立極盛德洪烈中殿尊號, 曰章聖.”.

179) 『선조수정실록』 24권 선조 23년 2월 1일 계유, “廷臣連請上尊號, 上不許, 久乃勉從, 上尊號曰正倫立極盛德弘烈”.

180)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10일 기사, “備忘記曰: 尊號之加, 非予本意. 今失國顛沛, 而此名猶存, 蒼黃之中, 專不省覺, 今始言之, 尊號斯速削除.”, “大臣二品以上啓曰: 當初尊號, 辨誣雪冤, 快洗祖宗數百年羞恥. (중략) 答曰: 予今得罪宗社, 此號決不可仍存, 宜速削改. 何必累啓?”.

181) 덕종은 대종(代宗)의 아들로 제9대 왕. 建中 원년(780) 1월에 연호를 고치고 군신들이 ‘聖神文武皇帝’란 尊號를 올렸다가 李希烈·朱泚의 난이 일어나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興元 원년(784) 1월에 전국에 사면령을 내리고 ‘聖神文武’한 존호를 삭제하였다. 《唐書》 권7 德宗本紀, 여기서는 선조 21년(1588) 3월에 李太祖에 대한 잘못된 종계(宗系)가 중국에서 바로잡혀지고 새로 개정된 《大明會典》 전질을 보내오자 대신들이 선조에서 그 공을 돌려 존호를 올렸는데 선조가 그 존호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호 삭제까지 명하였다. 그러나 윤두수 등이 세 번 아뢰고 兩司와 玉堂 및 정원이 모두 차자를 올리자 병 때문이라며 소란을 떠는 것이 싫어 후일로 미루겠다고 한발 물리선다.¹⁸²⁾ 그런데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가 존호를 삭제하여 스스로 貶 하라는 상소를 받고 다시 존호를 삭제할 것을 명한다. 당연히 신하들이 존호를 삭제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면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의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의논할 것을 아뢰었다.¹⁸³⁾ 그 다음날 바로 좌의정 윤두수 등이 존호를 펴손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면서 지나치게 겸양하여 사람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여론을 따르라고 청하고 나서야 선조가 존호를 삭제하는 것을 그만두었다.¹⁸⁴⁾

그리고 3년 뒤 선조 28년(1595) 선조가 비변사 당상과 인견할 때 윤선각과 정경세가 존호를 삭제하라는 명으로 백성들이 따르고 기뻐하였다고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8일 갑자 3번째 기사 주 181.).

182)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8일 갑자, “政院啓曰: 國家今日之禍, 誠開闢以來, 所未有也. 大小臣民之明目張膽, 緩死須臾, 見克復之一日者, 惟神謀睿算, 是賴是倚, 而頃者屢下未安之教, 群情懍懍, 久然後乃定. 不意昨夕, 申降前旨, 悲功有加焉. 臣等捧讀以還, 心膽墜地. (중략) 上曰: 非不欲策勵, 昏憤廢疾如此, 勢所難能, 此亦天也. 今雖退避, 身尙安逃乎? 惟望卿等, 幸哀憐, 俾遂予志. (중략) 子意已決, 斯速察行, 上曰: (중략) 至於尊號一事, 前亦有教, 尤不滿一哂. 有唐 德宗故事, 速可削減, 尤合事理. 不必更爲回啓, 只速施行.” , “尹斗壽等三啓, 兩司 【大司諫李海壽, 司諫李幼澄, 掌令李時彦, 獻納金廷時, 持平吉誨, 李光廷.】 玉堂 【應教具成, 正字尹敬立.】 政院皆上筭, 上曰: 因病痼, 欲順人情, 非有他意. 如是騷擾, 姑待後日.” , “尹斗壽等三啓, 兩司 【大司諫李海壽, 司諫李幼澄, 掌令李時彦, 獻納金廷時, 持平吉誨, 李光廷.】 玉堂 【應教具成, 正字尹敬立.】 政院皆上筭, 上曰: 因病痼, 欲順人情, 非有他意. 如是騷擾, 姑待後日” .

183)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13일 기해, “上教政院曰: 前日尊號削去事, 言之非一. 所謂尊號, 未知是何號也? 若曰: ‘斥賢用邪, 失性喪國殿下’ 云爾, 則當謹以受之矣. 所有尊號, 卽卽削減. 此意捧承傳. 【時有士人上章, 請削號自貶, 故有是命.】” , “政院啓曰: 尊號一事, 當初本非聖意, 群臣強請, 然後不得已勉副. 今奉聖教, 至令直捧承傳. 此事事體極重, 臣等不敢奉行. 至於下教之辭, 尤非臣子所忍聞者, 臣等不勝驚惶悶迫之意. 敢啓. 傳曰: 知道. 直捧承傳.” . “政院啓曰: 事體重大, 待明日通諭朝廷” .

184)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14일 경자, “左議政尹斗壽等啓曰: 方今大賊在前, 天兵在後, 四方之報, 陸續雲委而俱緊急. 君臣上下, 協心戮力, 以議規畫, 尙且不暇, 而每承聖教, 庭臣該歎, 伏閣號籟, 事涉相持. 討賊大計, 自爲餘事. 設令尊號無純孝格天之實, 有豐亨預大之名, 而義不可一日留諸身上, 國事至此, 則今之急務, 擊賊之外, 皆可徐議. 而況此一事, 其與唐宗之古事, 事體自別, 引以爲諭, 每執謙沖, 使群情自解, 大事不集. 請留三思, 俯循輿情. 上曰: 知道. 依啓” .

아되었다.¹⁸⁵⁾ 선조는 이를 후 비망기로 존호를 삭제하라는 명을 다시 내렸다.¹⁸⁶⁾ 그러자 삼정승을 비롯하여 많은 대신들이 겸양을 칭송하면서도 종계변무의 중요성을 들어 삭제의 명을 거들 것을 다시 청하였으나 선조는 존호를 삭제하라는 명을 내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¹⁸⁷⁾ 그 이후 종계변무로 올린 ‘正倫立極盛德洪烈’ 존호를 삭제한 기록이나 존호를 삭제하는 명령, 존호삭제 시행에 관한 기록이 없다. 다시 말해 ‘正倫立極盛德洪烈’는 삭제하지 않았다.

선조 37년(1604) 8월 5일에 대신들이 2품 이상을 거느리고 임진왜란 이후 나라를 再造한 공로로 존호를 청하였다. 이에 선조는 신료들과 중국 황제의 공으로 돌려 거절한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공로로 같은 해 6월 25일 공신을 대거 책봉하였다.¹⁸⁸⁾ 다시 말해 신하들이 왕에게 존호를 올리지 않으면 신하들에게만 임진왜란 이후 재조의 공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므로 왕에게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하여 史臣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까닭이 바른 것을 지키고 중국을 향한 의리에서 기인된 것이며 대신들이 힘껏 청한 것과 선조가 사양한 것 모두 도리에 맞는 것이라고 논하였다.¹⁸⁹⁾ 공로에 대한 존호를 올리는 것도 당연하고 조선

185)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4일 을유, “經世曰：小臣當變初持服時，得聞聖上欲下貶去尊號之教。百姓之心，皆感激懼欣，尚有所稱說。今若又聞此舉措，則四方人民，(其) [莫] 不鼓舞而趨之矣。世之遇此變，如人之遭父母喪，若過三年，則(慙) [漸] 不如初違違哀切之時。自上毋忘(愚) [遇] 變之初，使臣下皆懷憂悶之意，君臣上下，同心戮力，謀爲必復之計，則回天心復舊物不難矣。”

186)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6일 정해, “備忘記曰：今日幸免背芒，何時得去座針？日夜耿耿。尊號革除之事，斯速舉行。但此當諱於天朝。其頒教，則恐爲唐人所知。此等曲折，令禮曹察行。禮曹啓曰：因尹先覺所啓，有此傳教，減去尊號，事體極重。議大臣行之，何如？傳曰：不須議大臣。只曲折議之”

187)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6일 정해 ;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7일 무자 ;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8일 기축

188)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6월 25일 갑진, “大封功名，以自京城至義州，終始隨駕者，爲扈聖功臣，分爲三等，錫號有差；以征倭諸將及請兵糧使臣，爲宣武功臣，分三等，錫號有差；以討平李夢鶴，爲清難功臣，分三等，錫號有差(후략)”

189)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5일 계미, “史臣曰：上號之事，非古也。然人君苟有功德之可紀，則一時臣子，必以徽號爲請，而歷代或有行之者。今此壬辰之變，出於倉卒，而

초부터 이어져온 겸양의 덕으로 존호를 거절하는 것도 옳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후에도 대신들이 수십 차례 존호를 올리는 것을 청하였고 선조는 거절하였다. 선조 37년 8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일 신료들이 존호를 올리고 선조가 거절하는 상황이 한 달 여간 지속되었다.¹⁹⁰⁾ 선조는 일관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책임과 국가의 상황이 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으며 특히 겸양으로 후대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경계하려 하였다.¹⁹¹⁾ 그러다가 한 달여 만에 국가의 일을 돌보기 위해 존호를 받아들이나 종묘를 다시 세운 후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백관들이 존호 때문에 일을 폐하고 회맹까지 하며 서로 버티던 상황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것이다.¹⁹²⁾ 결국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10월 19일 존호를 ‘至誠大義格天熙運’으로 올렸다.¹⁹³⁾ 이처럼 선조는 중계변무와 임진왜란 재조의 공으로 받은 존호를 받는 과정에서 뿐 아니라 이를 국가적 상황을 핑계로 삭제를 명령하고

其所以致變之由，實出於守正向上之義，而恢復之功，亦出於至誠事大之致，則萬古之綱常寔立，君臣之大義不隳矣。揄揚之舉，烏可已也？廷請月餘，迫於群情，而勉強從之，則下之力請，上之克讓，可謂俱得其道矣。”

190)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6일 갑신 ;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7일 을유 ;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8일 병술;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9일 정해 ;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10일 무자;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11일 기축

191) 여기서 선조는 본인에게 올리는 호칭인 존호를 휘호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존호와 휘호가 혼칭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10일 무자, “徽號豈可加之於有罪之身”). 『선조실록』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서 존호, 휘호, 시호를 혼칭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김종수는 혼칭 사례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김종수,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례 해설집』).

192) 『선조실록』 178권 선조 37년 9월 7일 갑인, “大臣率百官啓曰：臣等之請進尊號，非欲鋪張功烈，以爲誇耀之具，特以聖明之德，質天地而無愧，傳萬世而有辭，不容泯滅故也，而每承聖批，貶損太過。臣等雖無狀，如有一毫貽羞於聖躬，致議於後世，則何敢導君父於過舉，期於必回天意至此哉？(중략) 如以遭罹禍患之故，爲羞恥，爲得罪，則是昆夷之難，亦可謂大王之恥，而得罪於後世乎？臣等區區之意，實以扶植綱常爲重。伏願聖明，毋執謙沖，快從輿望。答曰：百僚廢事，論之至此，上下相持，一月于茲，至於退定會盟，事體可駭，不勝痛迫。不敢以予之得罪，而不顧國事。勢已至此，但今宗廟未建，何敢及於他事？宗廟復立後，當從卿等之請”。

193)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19일 을축, “王世子進箋于大殿曰：值千載之熙運，景命維新；加八字之徽稱，褥儀斯舉。求諸往牒，未之前聞。恭惟正倫立極，盛德洪烈。至誠大義，格天熙運”。

이를 신하들이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광해군은 現王으로서 여섯 차례 존호를 받아 고종 다음으로 많이 받았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존호에 관련된 기록도 광해군의 기록이 중초본 614건, 정초본 526건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폐위되면서 광해군이 받은 존호도 모두 삭제되었으며 광해군이 추상한 존호 역시 삭제되었다.¹⁹⁴⁾

광해군에게 처음 올린 존호인 ‘體天興運峻德弘功’은 이평이 상존호에 대한 상소를 올린 것이 시작¹⁹⁵⁾이 되었다. 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임진왜란 때 監撫하는 임무를 받아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동남쪽으로 나가서 충청도와 경기의 형세가 통하도록 했으며, 關右에 나아가 주둔하여 격문을 띄워 군사를 모집하여 백성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다투어 적을 죽여 호남으로 길이 통할 수 있게 되고 國脈이 다시 보존되는 등 임진왜란을 평정한 仁君이기 때문이다.¹⁹⁶⁾ 그러나 이 역시도 선조와 마찬가지로 광해군 4년 5월 11일부터 6월 6일 까지 빈청, 양사, 홍문관, 옥당, 정원, 종실 등이 몇 차례씩 지속적으로 존호를 올리는 일을 청하였으나 이를 운허하지 않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다.¹⁹⁷⁾

194)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8월 30일 기축, “十月丁卯, 改題宣祖及懿仁王后廟主, 只存舊號, 竝去追上尊號.” .

195) 『광해군 일기』 중초본 53권 광해 4년 5월 2일 을미 “壬子五月初二日 乙未 榮川人李坪上疏, 極論討逆稽緩之失, 大爲媚詞, 以中上意. 大概請追刑柳永慶等, 請上尊號, 請錄勳臣, 請以逆賊 黨兇書頒示中外等事也” .

196) 『광해군 일기』 중초본 53권 광해 4년 5월 11일 갑진 “賓廳啓曰: 只以壬辰之事言之, 當西塞蒼黃之日, 受監撫之任, 奉廟社主, 進往東南, 仗大義, 決大計, 通湖, 旬聲勢, 觸冒危險, 出駐關右, 傳檄召募, 民皆思奮, 爭起殺賊, 湖路得達, 國脈再存. 及東南稍定, 還駐成川, 控扼賊衝, 積貯芻糧, 以待天兵. 獎率三軍, 身履戎行, 皇帝知聖上功德, 特賜專勅, 許令權摠全, 慶軍務, 遂駐駕湖南, 以成中興偉烈 (중략) 答曰: 號事, 決非涼德所堪”, “賓廳再啓尊號事 答曰: 予意已諭.” 三啓. 答曰: 已諭”, “兩司合司前啓永慶追刑事. 新啓: 自古帝王, 有大功德者, 莫不尊崇, 以垂後世, 昭揭之典, 其可獨廢於今日乎? 亟遵尊號之請, 以慰宗社, 以答臣民”, “玉堂 弘文館筭子上尊號事, 永慶追刑事. 批答與答兩司同” .

197) 『광해군 일기』 중초본 53권 광해 4년 5월 11일 갑진, “賓廳啓曰: 請上顯號, 以慰祖宗眷佑之靈, 以答臣民顛望之心” ; 『광해군 일기』 중초본 53권 광해 4년 5월 12일 을사 ; 『광해군 일기』 중초본 53권 광해 4년 5월 13일 병오, ; 『광해군 일기』 중초본 53권

결국 6월 6일 좌의정 이덕형이 올린 네 번째 상소에서 광해군이 때를 기다려 따르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광해군은 국가 업무의 공백을 이유로 스스로 거짓되게 하는 치욕을 받는 것이 낫다는 이유를 든다. 이후에도 한 달여간 선조가 버티고 대신들은 끊임없이 존호를 올리는 경우가 여러 차례 생긴다. 기간이 한 달이 지나면서 신료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며 존호를 받는다. 선조가 임진왜란 재조의 공으로 ‘至誠大義格天熙運’을 신하들이 올렸을 때의 과정과 흡사하며 존호를 광해군이 받아들이는 이유도 같다. 이 존호를 받은 이후 절차, 올리는 날짜 등에 대하여 논의 끝에 광해군 4년(1612) 10월 19일 ‘體天興運峻德弘功’라는 존호를 올렸다.¹⁹⁸⁾

또한 광해 9년 12월 예조에서 민인백의 상소를 회계하여 광해군 4년(1612)에 받은 ‘준덕홍공’은 종묘사직을 지킨 공에 부족하기 때문에 존호를 더 올릴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광해군이 다른 상존호 요청과는 다르게 임진년에 종묘사직을 지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며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¹⁹⁹⁾ 존호를 더 올리는 것임에도 승낙하는 모습에서

광해 4년 5월 14일 정미,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15일 무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16일 기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17일 경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18일 신해,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19일 임자,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21일 갑인,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22일 을묘,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23일 병진,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25일 무오,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28일 신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29일 임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3권 광해 4년 5월 30일 계해,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4권 광해 4년 6월 1일 갑자,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4권 광해 4년 6월 2일 을축,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4권 광해 4년 6월 3일 병인,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4권 광해 4년 6월 4일 정묘, ; 『광해군 일기』 중추본 54권 광해 4년 6월 5일 무진.

198) 『광해군 일기』 중추본 58권 광해 4년 10월 19일 기묘 “上王御仁政殿. 領議政李德馨等率百官, 上尊號曰‘體天興運峻德弘功’大赦.”

199) 『광해군 일기』 중추본 122권 광해 9년 12월 5일 병신, “故前日儒疏極言: ‘駐駕伊川, 保護廟社, 終成傾否之大勳’云云矣. 今者閔仁伯所陳, 蓋出於此, 論臣民所同之願, 於此可見. 請令廟堂, 更爲議定, 加上尊號. 傳曰: 顧予眇末, 以積禍餘生, 逮茲晚節, 累膺虛號, 亦已多矣, 何用又加重得罪戾乎? 第此壬辰奉廟社艱險之事, 列聖在天之靈, 實所鑑臨,

광해군이 임진왜란을 겪으며 의병을 모집하고 활동하는 것과 이후 수습책과 종묘와 사직을 지켜낸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신주를 중도에 묻어두고 가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지킨 것과 ‘종묘와 사직이 여기에 있는데 나만 홀로 어디에 가겠는가’ 라는 표현²⁰⁰⁾에서 찾을 수 있다. 상존호의 날을 윤달이기 때문에 5월 3일로 결정²⁰¹⁾하려 하였으나 광해군의 안질로 존호를 올리는 날을 물려 9월에 ‘隆奉顯保懋定重熙’ 를 올렸다.²⁰²⁾ 왕실을 지키고 왕위를 지켰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²⁰³⁾

광해군의 경우 조선 중기였음에도 공덕에 대한 존호를 올렸다. 우선 광해군 8년(1616) 5월 삼사에서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며, 그 사유로 聖祖와 先王의 지극히 원통한 일을 깨끗이 풀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는데 臨海·永昌·晉陵·綾昌을 죽여 역적을 토벌한 공로를 일컬은 것이었다.²⁰⁴⁾ 당연히 광해군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이후에도 삼사, 영의정, 2품 이상, 종실 등이 몇 차례씩 지속적으로 청하고 광해군이 윤택하지 않는 과정이 반복되

誠沒世不忘，永有辭於千億者也。依所啓施行”。

200) 『광해군 일기』 중추본 122권 광해 9년 12월 10일 신축, “聖上親奉廟社，跋涉窮谷，「廟社在此，予獨焉往」之教(중략) 幸賴聖孝不匱，至誠彌篤，欲埋中道，不從群情(중략)”。

201) 『광해군 일기』 중추본 125권 광해 10년 3월 6일 을축, “親蠶以四月二十九日退定。上號則閏月行之未妥，以五月初三日，問于日官，改定付標，下諭八方”。

202) 『광해군 일기』 중추본 132권 광해 10년 9월 29일 갑인, “戊午九月二十九日甲寅王御仁政殿，受尊號，(百官以奉陪廟社功，加上尊號曰) ‘隆奉顯保懋定重熙’。頒教，百官加資，赦宥如式。【以壬辰陪奉廟社功也。】(王御仁政殿，受之，加百官資，赦雜犯死罪以下，頒教中外)”。

203) 정우택은 광해군이 받은 여섯 번의 존호 중 임진왜란에 종묘사직을 지킨 것에 대한 호감도가 큰 것에 대하여 왕실을 지키고 왕위를 지켰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의도는 왕권 강화에 집착하는 광해군의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하였다. (정우택, 「광해군대 정치론의 분화와 개혁 정책」,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9, 58쪽)

204) 병진년 10월에 올렸는데 臨海·永昌·晉陵·綾昌을 죽인 공로이다(『광해군 일기』 중추본 103권 광해 8년 5월 16일 을유, “聖祖,先王至冤極痛，至于今日，俱已昭雪，一國含生，莫不懼。第念聖上至孝盛烈，度越前後，禮部讚揚，皇上褒美，四海之內，孰不嘆服? 臣等昨昨庭賀時，欲因請上尊號，而日勢忙迫，未及陳列，今幸入侍，敢以三司之意先稟”;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3권 광해 8년 10월 10일 정미, “王以追刑悌男，御正殿，受加上尊號曰‘聖英肅欽文仁武’”.)

었다.²⁰⁵⁾ 이러한 과정 끝에 광해군 8년(1616) 6월 7일 백관, 종실, 양사, 옥당이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자 백관들이 직무를 하지 않고 서로 한 달여 간 버티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옥사를 다 마친 뒤 따르겠다고 하였다.²⁰⁶⁾ 옥사를 마친 후에 계청을 듣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백관을 비롯하여 속히 거행할 것을 청하는 모습을 보인다.²⁰⁷⁾ 예조가 존호를 올리는 절차를 아뢰고 후 존호를 올릴 때 사용할 방물물선은 지난해의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하였다.²⁰⁸⁾ 광해군이 親鞫하는 등 계속 推鞫이 이어지고 있으면서도 승정원에서는 예조의 상존호 시행 절목이 난리 직후인 임자년임을 비관하며 경인년 전례에 따라 더 크게 진행할 것을 청한다.²⁰⁹⁾ 또한 이때에 비망기로 선왕에 대한 祖號를 올릴 것을 비망기로 전교하기도 하였다.²¹⁰⁾ 이 과정에서 백관들은 역적을 토벌한 공로를 이유로 존호를 더 올리기를

205)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3권 광해 8년 5월 16일 을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3권 광해 8년 5월 17일 병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3권 광해 8년 5월 19일 무자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3권 광해 8년 5월 20일 기축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3권 광해 8년 5월 21일 경인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3권 광해 8년 5월 22일 신묘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3권 광해 8년 5월 25일 갑오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3권 광해 8년 5월 28일 정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3권 광해 8년 5월 29일 무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4권 광해 8년 6월 2일 신축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4권 광해 8년 6월 3일 임인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4권 광해 8년 6월 4일 계묘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4권 광해 8년 6월 5일 갑진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4권 광해 8년 6월 6일 을사 등.

206)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4권 광해 8년 6월 7일 병오, “百僚曠職, 強論至此, 上下相持, 已踰數旬. 不敢以予之得罪萬世, 而不顧國事. 但鞫逆方急, 何可他及? 獄事完畢後, 當勉從卿等之請” .

207)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4권 광해 8년 6월 8일 정미, “王既許畢獄後勉從, 而群臣猶請亟舉” .

208)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4권 광해 8년 6월 10일 기유, “禮曹啓: “上號, 既允群請, 都監堂上, 郎廳急速差出, 上號吉日推擇, 箋文等事, 次第舉行.” 從之.”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4권 광해 8년 6월 12일 신해, “上號方物物膳, 依上年例, 只兩殿, 東宮封進事, 察行” .

209)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5권 광해 8년 7월 2일 경오, “政院啓曰: “今見禮曹公事, 上尊號時應行節目, 依壬子年例磨鍊矣. 今此上尊號, 誠一國無前無後之大慶. 亂後凡事, 未備則已, 自目今恢復已久, 國家大小之事, 既盡修舉. 上尊號及上壽宴節目, 不可只舉壬子草創時例而爲之. 如事之極難, 勢所未及者外, 其餘諸事, 一依庚寅年前例舉行事, 令禮官更議以處.” 傳曰: “允.” .

210)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5권 광해 8년 7월 12일 경진, “今宜先上尊號於先王, 先二后, 竝上先王祖號, 親祭告廟後, 定號上箋, 合於事理” .

청하였다.²¹¹⁾ 광해군이 윤택하지 않고 백관들이 다시 청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²¹²⁾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양사와 홍문관에서 김제남 추형이 급한데 한갓 존호 올리는 일을 급선무로 삼았다며 체직을 청하였다.²¹³⁾ 이에 대하여 광해군은 사직하지 말라고 하며 큰 의리를 밝히고 왕법을 바로 하는 일을 직무로 삼고 아첨하지 말 것을 전하였다. 또한 광해군이 24일 내린 전교에서 김제남의 정형이 시행되지 않았고 역적토벌 법도가 없다는 것이 국가가 위태롭고 국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며 존호를 올리는 것에 대해 괴이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위태함까지 이유를 들어 일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대신들을 책망하면서 존호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8월 1일에 따르겠다고 하였는데도 종실과 양사 등이 계속해서 존호를 청하였다. 이때 왕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미 애써 따르기로 하였다’ 며²¹⁴⁾ 신하들의 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는 모습을 연출한다. 특히 世祖가 남교에서 제사를 올린 뒤 존호를 받은 고사의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이른다.²¹⁵⁾ 또한 광해군은 건강 문제를

211)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5권 광해 8년 7월 23일 신묘, “百官請以前後討逆功, 加上尊號” .

212)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5권 광해 8년 7월 24일 임진, “百官請加上尊號”, “승司又請加號, 答與百官同”;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5권 광해 8년 7월 25일 계사,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5권 광해 8년 7월 26일 갑오,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5권 광해 8년 7월 27일 을미,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5권 광해 8년 7월 28일 병신,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5권 광해 8년 7월 29일 정유,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5권 광해 8년 7월 30일 무술,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5권 광해 8년 8월 1일 기해.

213)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6권 광해 8년 7월 25일 계사, “追刑悌男之議, 鞠廳已爲回啓, 臣等不卽舉義追刑, 徒以上號爲急, 所論失其先後, 使逆魁尙保兇骸, 臣等之罪, 至此大矣. 請遞臣等之職.” 答曰: “勿辭. 以明大義, 正王法爲職事, 毋徒爲誇張稱美之言, 自歸於容悅之地.” , “則悌男之尙延追刑, 已極神人之憤. 而臣等之以請號爲先者, 三誣既辨, 兪音已降, 一國同慶, 涓吉將行. 若以癸丑之神功, 未及今日之禱禮, 則摹天畫日之議, 大有所欠缺, 故先此後彼, 致勤嚴旨, 臣等之不職, 至此大矣. 不勝惶恐, 伏地待罪. 傳曰: “論思之職, 當明大義, 正王法而已. 勿待罪, 更加盡職.” ” .

214)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6권 광해 8년 8월 1일 기해, “此非必上之號. 第緣群工廢職, 日威造庭, 玆用屈意勉從”, “迫於群情, 已爲勉從矣” .

215)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6권 광해 8년 8월 2일 경자, “世祖以靖難事, 親祀南郊後, 受尊號 ° 既有祖宗朝古事, 詳考實錄, 一依世祖朝古事, 詳考察行事, 言于禮官” .

거론하고, 더불어 겨울이 다가올 때 하늘에 대한 경외심으로 덕을 닦아야 하며, 두 번째 존호를 한 달 안에 올리는 것이 감당할 수 없다며 존호를 미루고자²¹⁶⁾ 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존호 올리는 일을 물리지 말 것에 대한 청을 올리고 광해군이 이를 물리치는 과정²¹⁷⁾을 거쳐 이욱고 김제남을 추형한 일로 신하들이 ‘神聖英肅欽文仁武’ 존호를 올렸다.²¹⁸⁾ 그리고 다음 해에 세 가지 무고를 변론하여 해명한 업적으로 ‘敍倫立紀明誠光烈’ 을 올리는 대례를 거행하였다.²¹⁹⁾

다음 해 9월에는 역적인 許筠을 주벌한 공으로 대신들이 왕의 존호를 올리는 일을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왕이 따르지 않다가²²⁰⁾ 공신 책정 후 따르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백관들은 공신 의결 전에 올리기를 청하여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이를 수락하는데 존호를 올리는 것을 사양하는 것에 비해 빠른 수락이었다.²²¹⁾ 그러다가 존호를 올리는 예를 늦추어 날을 잡는데 비망기에는 정월 중 택일하라고 하였으나 기일이 촉박하고 변방의 일을 염려하자 광해군도 형편을 보아 처치하라 전교하였다.²²²⁾ 이

- 216)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7권 광해 8년 9월 26일 갑오, “近來非但予候不平, 尙未快差, 日晷極短, 寒節又迫. 加以天地示警, 非一非再. 此正對越寅畏, 小心修省之時. 何可肆然誇張, 膺莫大之號, 受中外之賀哉? 自顧涼德, 無任兢惕, 況功勳亦未及勘定. 癸丑上號以正月, 辨誣上號以二月退行事, 言于禮官” .
- 217)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7권 광해 8년 9월 26일 갑오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7권 광해 8년 9월 28일 병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7권 광해 8년 9월 29일 정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7권 광해 8년 10월 1일 무술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7권 광해 8년 10월 2일 기해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7권 광해 8년 10월 3일 경자 ;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7권 광해 8년 10월 6일 계묘.
- 218) 『광해군 일기』 중추본 108권 광해 8년 10월 10일 병진, “王以追刑悌男, 御正殿, 受加上尊號曰‘聖英肅欽文仁武’ .
- 219) 『광해군 일기』 중추본 120권 광해 9년 10월 30일 신유, “丁巳十月三十日辛酉領議政奇自獻以下陪冊寶, 加上尊號曰‘敍倫立紀明誠光烈.’ 【以辨三誣也.】” .
- 220) 『광해군 일기』 중추본 144권 광해 11년 9월 25일; 『광해군 일기』 중추본 144권 광해 11년 9월 26일 을사; 『광해군 일기』 중추본 144권 광해 11년 9월 27일 병오; 『광해군 일기』 중추본 144권 광해 11년 9월 29일 무신; 『광해군 일기』 중추본 144권 광해 11년 10월 1일 경술; 『광해군 일기』 중추본 144권 광해 11년 10월 2일 신해; 『광해군 일기』 중추본 144권 광해 11년 10월 4일 계축.
- 221) 『광해군 일기』 중추본 145권 광해 11년 10월 4일 계축, “雖或有收錄之舉, 安敢先議於上號之前乎”, “當於議勳之後, 勉從卿等之請, 宜量予意, 亟停勿煩” .

에 날을 다시 정하여 4월 9일 ‘睿哲莊毅章憲順靖’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한편 3일 뒤에는 존호를 올리는 예와 왕비 親蠶禮에 불참한 신하들을 나무라기도 하였다.²²³⁾

마지막으로 중국 조정에서 칙서를 내려 금과 예물을 하사하여, 황제의 칙서가 내려온 것에 대하여 광해군 14년(1622) 6월 승정원이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존호 올릴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따르지 않고 벼락이 친 것을 이유로 존호를 올리는 일을 중지시키기도 하였다.²²⁴⁾ 그리고 9월에는 친제를 올리는 대례가 가까이 오고 역적과 변방의 경보가 시급하여 존호를 다음 해로 미루어²²⁵⁾ 9월 16일 존호 전문을 올리고²²⁶⁾ 같은 해 11월 ‘建義守正彰道崇業’이란 호를 더 올렸다.²²⁷⁾

광해군은 가장 많은 존호를 받았음에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겸덕하며 지속적으로 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존호를 올리는 예에 불참하는 신하에 대하여 나무라기도 하였다. 모순적인 태도처럼 보이나 존호를 올리는 과정 자체가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222) 『광해군 일기』 중추본 145권 광해 11년 10월 21일 경오, “而伏觀下該曹備忘, 有‘正月間改擇日退行’之教, 臣等區區之意, 都監所幹, 惟在冊文製述刊之玉冊, 措備儀物, 涓吉奉行而已, 凡厥應行之事, 有司存, 則舉而措之, 豈有忙迫之事乎? 況邊事可虞之機, 正屬歲翻之後 (중략) 傳曰: 然一邊次第造備, 一邊觀勢處置”.

223) 『광해군 일기』 중추본 151권 광해 12년 4월 12일 기미 “上號`親蠶, 莫大之禮, 而外命婦無一人入參, 寧堤君 錫齡妻, 以進書啓, 而昨日以 稱病不參, 極爲不當, 事甚可駭. 行公推考, 使速入參於兩禮”.

224) 『광해군 일기』 중추본 178권 광해 14년 6월 17일 신사; 『광해군 일기』 중추본 178권 광해 14년 6월 18일 임오; 『광해군 일기』 중추본 178권 광해 14년 6월 19일 계미; 『광해군 일기』 중추본 178권 광해 14년 6월 29일 기사; 『광해군 일기』 중추본 178권 광해 14년 6월 30일 갑오; 『광해군 일기』 중추본 178권 광해 14년 7월 1일 을미; 『광해군 일기』 중추본 178권 광해 14년 7월 3일 정유; 『광해군 일기』 중추본 178권 광해 14년 7월 10일 갑진, “如無益不急貽譏取笑上號之禮”.

225) 『광해군 일기』 중추본 178권 광해 14년 9월 7일 경자, “領相旣知親祭大禮之當前, 討逆邊警之方急, 而以不關些小之嫌, 遽投辭章, 不顧國事, 則有何慄悚之意? 予近日氣不平, 冬深則尤難行禮, 或令世子`大臣代行告廟之禮, 而上號必欲行之, 則更觀賊勢, 明春退行”.

226) 『광해군 일기』 중추본 181권 광해 14년 9월 16일 기유, “尊號上箋”.

227) 『광해군 일기』 중추본 183권 광해 14년 11월 8일 경자, “傳曰: 上號大禮, 承旨不可不備. 右副承旨朴弘道命招, 使之察任”, “王以天朝賜勅獎諭兼賜金幣, 上尊號曰‘建義守正彰道崇業’”.

했다고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다.

선조와 광해군은 전쟁 과정에서 사기진작, 왕권과 정통성의 안정, 종묘와 사직의 보존 등의 이유로 존호를 받았으나 조선 초기의 영향으로 한 달 여간 칭을 거절하다가 국가의 일이 멈추어 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존호를 받아들인다. 특히 광해군에게 생전에 올린 존호 중 요청을 물리치는 횟수가 가장 적어 광해군이 임진왜란의 공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중계변무를 이유로 선조와 광해군 모두 존호를 받았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계통을 바로잡은 것에 대한 공덕에 대한 존호였다. 따라서 이후 중국으로부터 조선 국가 혈통의 정당성을 공인받아 외교관계 설정에서 이전보다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외세의 침략에 대하여 이로 인한 왕의 정치적 공백이나 권력 약화, 국가의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존숭을 통해 신하들과 논의과정을 거쳐 정통성과 공덕을 확인받아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왕들에게 올리는 존호는 초반에 검양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사후 존시나 추상존호를 올린 반면 영조부터 뚜렷하게 現王에 대한 존호를 올리는 사례가 많아졌다. 영조대의 상존호는 정국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²²⁸⁾ 고종은 先王에게 추상존호를 가장 많이 올렸고 본인도 많은 존호를 받았다. 고종 9년(1872) 12월에 이최응을 비롯하여 대신들이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들을 본받았으며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백성들을

228) 김백철은 영조가 존호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국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영조 전반기에 신료들의 강력한 청원 활동을 바탕으로 실행된 존호가상과 후방기의 별도의 대처분을 내린 뒤 신속히 윤택한 존호는 여러모로 그 맥락이나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1차 존호인 영조 16년(1740)의 존호가상으로 고양된 국왕의 권위로 임인년의 옥안 反案하였다고 보았다. 2차 존호인 영조 29년(1753)의 존호가상은 균역법의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 후부터는 오랜 토론 끝에 타협을 찾고 그것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존호를 가상한 것에 비해 특정한 정국 변동을 계기로 존호가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그것이 3차 존호인 영조 31년(1755)부터 을해옥사, 4차 존호인 영조 47년(1771) 김치인사건, 5차 존호인 영조 52년(1775) 대리청정과 관련하여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백철, 『두 얼굴의 영조』, 태학사, 2014, 279-302쪽.)

사랑한 그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훌륭한 덕은 사람들의 몸에 폭 배고 사람들의 이목에 무르익었습니다. 위로는 祖宗의 공적을 빛내고 아래로는 후손들에게 좋은 법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한 것이 시작이었다. 고종은 이를 계속 거절하면서 ‘응대하는 것도 지루하다’는 표현까지 하였다.²²⁹⁾ 결국 12월 20일에 이르러 신하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마지못해 따른다고 하며 존호를 받기 위한 이유를 도리어 신하들에게 물었다. 또한 홍순목의 건의에 따라 존호를 올리기 위한 도감을 설치하는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²³⁰⁾ 이달 24일 구체적인 존호를 올렸는데 ‘統天隆運肇極敦倫’이라 하였다.²³¹⁾

고종 22년(1885) 9월에 영의정 심순택, 행 관중추부사 김홍집, 김병시가 또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한 것을 시작으로 빈청에서도 여러 차례 존호를 올렸다. 이에 대해 고종은 헛된 이름을 올리는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하며 거절하였다.²³²⁾ 이후에 왕세자가 상소문을 올려 존호를 올릴 것을 요청한 끝에 ‘正聖光義明功大德’²³³⁾의 존호를 올렸다.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쳐 ‘堯峻舜徽禹謨湯敬’²³⁴⁾의 존호를 올렸

229)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2월 16일 병인;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2월 17일 정묘, “批曰: 酬應亦復支離矣.”;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2월 18일 무진;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2월 19일 기사.

230)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2월 20일 경오, “今因卿等之終始力請, 不得不勉從之. 而予心愧忸, 當復何居?”, (중략) “昔我英廟朝上號時, 輒有仁元聖母加上尊號之禮, 斯爲我家之所已行, 而亦有年前廷臣之援此議禮者矣.” 大王大妃殿 `王大妃殿`大妃殿加上尊號, 自當設都監舉行矣”.

231)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2월 24일 갑술 “大殿尊號望 ‘統天隆運肇極敦倫’; 大王大妃殿加上尊號望 ‘協天’; 王大妃殿加上尊號望 ‘貞徽’; 大妃殿加上尊號望 ‘粹寧’; 中宮殿尊號望 ‘孝慈’”.

232)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9월 22일 정사;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9월 23일 무오

233) 『고종실록』 25권 고종 25년 1월 15일 정묘 “賓廳啓: 大殿加上尊號望 ‘正聖光義明功大德’; 大王大妃殿加上尊號望 ‘昌福’; 王大妃殿加上尊號望 ‘莊昭’; 中宮殿加上尊號望 ‘元聖’”.

234)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12월 17일 무자 “賓廳議啓: 大殿加上尊號望 ‘堯峻舜徽禹謨湯敬.’ 大王大妃殿加上尊號望 ‘熙祥’, 王大妃殿加上尊號望 ‘粹顯’, 中宮殿加上尊號望 ‘正化’”.

다. 또한 고종이 왕위에 등극한 지 30년(1893)이 된 것을 기념하여 ‘應命立紀至化神烈’ 을 올렸다.²³⁵⁾

고종은 1897년부터 황제로 즉위해야한다는 상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 최영, 권달섭, 임상준, 강무형 등은 이미 황제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황제로 즉위할 것을 주청하였다.²³⁶⁾ 결국 10월 3일 고종은 마지못해 애써 따르겠다고 하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禮儀를 참작하여 행할 것을 답하며 청을 받아들였다.²³⁷⁾

고종 또한 광해군과 마찬가지로 대신들과 오래도록 대치하며 존호를 받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광해군의 존호가 공적에 대한 것이라면 고종은 재위기간의 치세에 대한 칭송인 경우이다. 그리고 고종은 1897년 국격이 대한제국으로 승격함에 따라 황제로 존송되고 이후 일제의 압력을 받으면서 국가의 존망에 대한 위기를 스스로를 격상시킴으로서 황제의 존재를 알려 침략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였다.

고종은 1897년부터 황제로 즉위해야한다는 상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 최영, 권달섭, 임상준, 강무형 등은 이미 황제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황제로 즉위할 것을 주청하였다.²³⁸⁾ 결국 10월 3일 고종은 마지못해 애써 따르겠다고 하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禮儀를 참작하여 행할 것을 답하며 청을 받아들였다.²³⁹⁾

235) 『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 6월 24일 경술 “賓廳啓;翼宗大王追上尊號望 ‘剛粹景穆峻惠衍祉’, 神貞王后追上尊號望 ‘睿憲敦章’, 大殿加上尊號望 ‘應命立紀至化’, 神烈王大妃殿加上尊號望 ‘懿獻’, 中宮殿加上尊號望 ‘合天’ ”.

236)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5월 1일 양력, “以詔以勅, 旣行皇帝之制, 而尙居君主之位”;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5월 9일 양력;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5월 16일 양력;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5월 26일 양력 등.

237)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3일 양력, “大同之情, 不可終孤, 積費商量, 茲不得已勉從. 此大事, 宜其斟酌禮儀而行也” .

238)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5월 1일 양력, “以詔以勅, 旣行皇帝之制, 而尙居君主之位”;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5월 9일 양력;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5월 16일 양력;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5월 26일 양력 등.

239)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3일 양력, “大同之情, 不可終孤, 積費商量, 茲不得已勉從. 此大事, 宜其斟酌禮儀而行也” .

특히 재위기간이 44년에 이르는 고종의 경우 장수를 경하하는 존호를 가장 많이 올렸다. 고종 34년(1897, 광무 원년)에 황제로 칭할 것을 백관들이 아뢰었다. 고종 36년(1899, 광무 3)에는 황태자가 상소문을 올려 고종이 50세가 되는 경사를 축하하고 존호로써 축하할 것을 아뢰어²⁴⁰⁾ ‘巍勳洪業啓基宣曆’을 올렸다.²⁴¹⁾ 고종 37년(1900, 광무 4) 12월에는 내년 황제의 성수가 51세가 되고 등극한 지 40년(1903, 광무 7)이 된 것을 축하²⁴²⁾하며 ‘乾行坤定英毅弘休’라는 존호를 올리고 대사령을 반포하였다.²⁴³⁾ 고종에게 올린 존호는 앞서 처음 받은 존호의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왕의 치세나 재위기간에 대한 공덕을 경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위하고 있는 現王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는 대신들이 지속적으로 奏請을 하여야 하였으며 왕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부담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후까지 불리는 호칭에 스스로를 칭송하여 자신 뿐 아니라 왕조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만큼 덕이 없다는 이유이다. 조선초기부터 겸양을 미덕으로 여겨 거절해오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뚜렷한 공덕이 없거나 왕의 권력이 강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현왕의 공덕을 경하하는 존호의 경우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여 받은 경우가 많다. 앞서 선왕에게 올리는 경우에서와 같이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정치변화가 있을 때 존호를 통해 국가의 혼란한 상황 이후 흔들린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사건 종료 이후 존호를 올려 왕의 국가 운영을 독려하

240)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22일 양력, “皇太子上疏曰:明年即我父皇陛下聖壽, 將躋五旬之慶年也 (중략) 上告下布, 進號節慶, 明年應行之節, 竝亟下成命, 俾伸區區之私, 千萬至祝” .

241)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30일 양력, “又以明成皇后追上尊號望 ‘洪功’, 議定上奏” .

242)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2월 22일 양력, “ 明年即我父皇陛下聖壽望六旬 御極四十年之兩大慶湊臻之慶年也, 此又我家罕有之大慶也 (중략) 明年月正元日告布稱賀之儀, 加上尊號” .

243) 『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3월 5일 양력, “御中和殿, 受賀, 頒赦” .

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비상시기를 이유로 받은 존호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인하였다. 또한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와 같은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대응과 종계변무와 같이 중국과의 대외관계 설정의 변화에 따른 정통성 확립의 경우에도 현왕에게 존호를 올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현왕에게도 존호를 올리는 일이 빈번해 지면서 왕의 치세에 대한 칭송으로 올리기도 하였다. 한번 존호를 올릴 때에 대한 주청의 횟수는 적었으나 조선 후기에도 대신들의 지속적인 주청이 있어야 했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사후 호칭 중 왕과 왕비의 덕을 칭송하는 조선시대 왕의 존호 기능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유형화하여 현실정치에서 사용된 상존호의 정치적·의례적 기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상존호의 의례적 기능이다. 첫째, 왕이 아닌 선대 중 양부를 추존한 경우이다. 성리학의 발달로 인해 왕위 계승자가 혈통으로만 이어지지 않고 位次의 정통성이 확고해지면서 양자가 왕위계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養子로 입적하여 왕위 계승한 이후 養父에 대한 존숭은 순조로웠다. 당연히 宗統의 양자로 입적한 것인데 양부는 세자에서 왕으로 즉위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도 있어 왕으로 추존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종과 문조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들은 왕위 정통성을 이어받은 상태에서 즉위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큰 반발 없이 추존되고 존호를 받았다. 이처럼 양부 혹은 친부를 추존하고 상존호하는 과정에서 신료들과의 논의를 통해 現王의 권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갔다.

둘째, 왕실 여성들에게도 존호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를 지위의 격상, 수렴청정, 私親, 장수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가 각각 자리에 오를 때에 존호를 부여하여 존숭의 모습을 보였다. 수렴청정은 비정상적인 정치형태로 국정을 이끌어간 공을 치하하는 것이나 수렴청정을 한 왕후 6명 중 순원왕후에게 두 차례 올린 것이 전부이다. 순원왕후는 재임기간만 55년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수렴청정을 오래한 왕후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렴청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다고 해서 반드시 존호를 올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자인 왕위 계승자가 늘어나고 왕이 어리거나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왕실의 여성어른이 많아지게

되자, 기존의 왕후-왕대비-대왕대비만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존호를 올려 차별화하였다. 대왕대비가 살아있어 대왕대비로 오를 수 없는 왕대비나 이미 대왕대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지위가 없는 경우 존호를 부여함으로써 존승을 통해 지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경하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왕의 私親의 문제는 왕의 혈통적 약점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왕의 생모를 왕비로 추존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는 후궁에서 왕비에 오른 후 아들을 낳은 것이다. 그러나 왕비로 존승되지 못한 경우에는 왕비와는 다른 계통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후대에 이르러 적장자가 계승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가능하여 종묘에서도 따로 칠궁으로 모신 것이다. 특히 이런 경우 시호를 올렸으나 하나 이상은 올리지 않았다. 또한 장수한 경우 국가의 경사로 존호를 올렸다. 왕이 장수한 경우에 존호를 많이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장수를 축하하는 것 보다는 그 이전에 재위기간 동안 겪은 정치변란 등의 이유가 더 많다. 그러나 왕후의 경우 대체로 장수하면 대왕대비에 올랐기 때문에 존호를 많이 받았다.

다음으로 상존호의 정치적 기능이다. 첫째, 왕이 아닌 선대 중 親父에게 상존호를 올린 경우이다. 왕위 계승자가 양자로 입적한 경우 왕의 친부를 존승하여 존호를 올리거나 대원군이라 불렀다. 왕의 친부에 대한 호칭을 정하는 것이 출생 배경과 정치 상황에 달랐다. 왕세자를 거친 덕종과 장조의 경우와 왕세자를 거치지 않은 원종, 덕흥군의 경우가 있다. 성종의 친부인 덕흥군은 건국 시조의 조상이 아닌 추존 왕이 종묘에 오르는 일에 대한 사례가 없어 정통의 서열 문제를 들어 성종 자신의 친부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때에 존호를 올리는 문제보다는 종묘에 부묘하는 문제로 신료들과 격론이 이어졌다. 또한 장조는 정조에 의한 추존이 논의 되었다가 정조의 급서로 중단되었던 것이 철종과 고종에 의해 추존되었다. 철종은 자신의 왕위 정통성의 취약점을 사도세자의 혈통

으로 정당화하려 존호를 올렸다. 고종 역시 대한 제국으로 국격을 승격하면서 종계만으로 계승한 혈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국격에 따라 선대 왕에게 ‘황제’ 추존을 위해 장조로 승격한 것이다. 왕세자를 거치지 않은 정원군의 경우 인조의 강력한 추진으로 대신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10년 만에 추진하였다. 인조 또한 반정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아직 位次 중심의 정통론과 일상생활에서 『가례』의 사상적, 예학적 배경이 자리잡지 못한 배경도 있다. 반면 덕흥군의 추존은 서자출신 왕인 선조의 정통성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었으나 성리학 이해의 심화와 예학의 발전으로 더 이상 왕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先王에 대한 가상존호 및 추상존호를 올린 경우이다. 이를 대내외적인 정치변화에 따라 선왕에게 존호를 올린 경우와 상존호가 점차 의례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내부적 정치변란, 전쟁 이후 전란 수습 등 대내외적인 정치변화로 인한 정치공백 상황에서 先王에게 존호를 올려 정통성을 확보하여 기틀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상존호는 대내외적 정치변란 사건의 종결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 위기상황에서는 존승을 통하여 안정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우선 조선 초기 왕자의 난, 계유정난 등 왕위 계승상의 정변이 대표적이다. 왕자의 난을 통해 정권장악 과정에서 선양을 통해 상왕, 태상왕으로 추존하였으며 이때에 본인이 존호를 받기 보다는 상왕과 태상왕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정권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정치변란으로 집권한 경우도 왕위 계승문제이므로 정통성을 선대에 대한 추존으로 인정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친부, 양부의 추존보다 더욱 정통성 문제가 민감하였고 정권 초반부터 왕권이 강력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었다. 또한 상왕, 태상왕의 존호는 생전에 올리면서 계통의 정당성과 왕위 계승 후 정권장악을 하였고 권력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후대의 왕이 선대의 왕

의 업적을 칭송하며 추상존호를 올렸다. 광해군은 선조에게 두 차례 올렸는데 이는嫡子가 아닌 것에 대한 불안함인 동시에 당시 사관의 표현대로 스스로 받은 존호가 많아 이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여겨진다. 또한 숙종은 공정대왕과 노산군을 추존하면서 존호를 올리고, 존시와 존호를 올리는 법을 다시 의논하면서 이에 따라 태조와 태종에게 존호를 올렸다. 이는 예론과 의례의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조는 효종, 현종, 숙종에게 추상존호를 올리면서 대신들에게 존호를 올릴 것을 요구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후 헌종, 철종, 고종, 순종역시 선대를 추존하였는데 특히 고종의 경우 외세에 의한 국가의 위기를 국격의 격상과 그에 따른 추존, 상존호를 통해 정통성을 명백히 하여 국가의 안정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였다. 한편 존호가 조선후기로 갈수록 차츰 禮號化되었다. 존호를 받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겸덕의 이유로 사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영조 이후 점차 禮號化되면서 존호가 남발되고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의례적인 행사에만 머물게 되었다. 존호는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전에 수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거나 왕비와 왕대비, 대왕대비가 여러 명 생존하거나 장수한 경우 왕들이 존호를 많이 받게 되었다. 왕비나 왕대비, 대왕대비에 올릴 때 당연히 신하들이 주청하여 왕에게도 존호를 올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공로를 치하하여 포상하거나 공신을 책봉하게 되면 그 덕을 왕의 치세로 돌려 존호를 올리는 등 의례적 행사가 된 것이다. 또한 조선 초기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존호를 후하게 올리고 그 절차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간소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재위 시의 現王에게 존호를 올린 경우이다. 또한 업적이나 공덕이 있는 경우 올리는데 현왕에게 올리는 존호는 공덕을 치하할 경우 특히 겸덕을 이유로 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선왕에게 올리는 경우는 신하

들이 청하기도 하지만 왕이 존호를 올릴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선 초기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존호를 후하게 올리고 그 절차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간소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와 같은 외부적 침략에 대한 대응과 종계변무와 같이 중국과의 대외관계 설정의 변화에 따른 정통성 확립의 경우 존호를 올렸다. 대외적인 정치변화에 대한 극복으로 인한 경우는 先王뿐만 아니라 現王에게도 올렸다. 선조와 광해군은 전쟁 과정에서 사기진작, 왕권과 정통성의 안정, 종묘와 사직의 보존 등의 이유로 존호를 받았으나 조선 초기의 영향으로 한 달여간 청을 거절하다가 국가의 일이 멈추어 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인다. 특히 광해군에게 생전에 올린 존호 중 요청을 물리치는 횟수가 가장 적어 광해군이 임진왜란의 공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종계변무를 이유로 선조와 광해군 모두 존호를 받았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계통을 바로잡은 것에 대한 공덕으로 외교적 관계설정에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존호의 의례화 흐름은 현왕에게 올리는 존호에도 이어져 특히 고종의 경우 왕의 치세에 대한 칭송으로 존호를 올리기도 하였다.

향후 조선왕조실록 사료에서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역사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존호가 가졌던 기능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존호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신료들의 다양한 해석과, 이들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각 견해를 판단하고 수용하거나 축출하는 왕의 의지를 볼 수 있는데 당시 정치적 상황과 결부시켜 의미를 분석하여 상존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고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추후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純祖再尊文祖初尊)上號都監儀軌』.
『(文祖)上號都監儀軌』.
『朝鮮王朝實錄』.
『(英祖六尊號莊祖再)尊號都監儀軌』.
『(莊獻世子追上尊號惠嬪追上)尊號都監儀軌』.

2. 단행본

- 김백철, 『두 얼굴의 영조』, 태학사, 2014.
김종수,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배현숙, 『한국사론 45: 한불수교 120년사의 재조명 江都奎章外閣收藏의 王室身分關係資料研究』 32-34, 국사편찬위원회, 2007.
신명호, 『조선의 왕』, 가람기획, 1998.
신명호, 『조선왕실의 책봉의례』, 세상출판사, 2016.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장서각 소장 의궤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한영우, 『조선왕조의 의궤: 국가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05.

3. 학술논문

- 권용란, 「조선시대 왕실 조상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3.

- 김중수, 「尊號·尊崇·上號都監儀軌 명칭에 대한 소고」, 『온지논총』 12호, 온지학회, 2005.
- 김중수, 「왕대비 加上尊號儀의 의례와 음악: 정조대(1776~1800) 『尊號都監儀軌』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47호, 한국국악학회, 2011.
- 김중수, 「조선시대 大殿·中殿·尊號儀禮의 변천과 用樂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49호, 한국국악학회, 2012.
- 김중수, 「조선시대 대왕대비·왕대비 尊號儀禮의 정비과정과 用樂의 변천」, 『한국음악사학보』 52호, 한국국악학회, 2012.
- 신명호, 「조선시대 국왕호칭의 종류와 의미」, 『역사와 경계』 52집, 부산경남사학회, 2004.
- 이현진, 「인조대 원종추승론의 추이와 성격」,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99.
- 임민혁, 「조선시대 종법제 하의 조·종과 묘호 논의」, 『동서사학』 8집, 한국동서사학회, 2001.
- 임민혁, 「고·순종의 호칭에 관한 이론과 왕권의 정통성」, 『사학연구』 78호, 한국사학회, 2005.
- 임혜련, 「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정비과정」, 『조선시대사학보』 제27집, 조선시대사학회, 2003.
- 정우택, 「광해군대 정치론의 분화와 개혁 정책」,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9.
- 정해득, 「사도세자 현창의 전개과정」, 『역사문화논총』 8호, 역사문화연구소, 2014.
- 지두환, 「조선전기 묘제에 관한 일고찰」, 『한국문화』 제4집, 서울대학교 학술문화연구소, 1983

황정연, 「조선 태조비 神德王后 貞陵의 조성과 封陵 고찰」, 『서강인문
논총』 46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4. 기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부록

<부표 1> 조선시대 왕의 존호

왕	시호	존호	존호 설행시기	존호 횟수	비고	생존기간 (재위기간)	즉위 나이
목조	없음	*仁文聖穆	1411년 (태종 11)	1회	목왕 (1392, 태조 1)	추존	추존
익조	없음	*康惠聖翼	1411년 (태종 11)	1회	익왕 (1392, 태조 1)	추존	추존
도조	없음	*恭毅聖度	1411년 (태종 11)	1회	도왕 (1392, 태조 1)	추존	추존
환조	없음	*淵武聖桓	1411년 (태종 11)	1회	환왕 (1392, 태조 1)	추존	추존
태조	康獻	啓運神武	1400년 (정종 2)	1회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1408 년(태종 8)에 이르러서야 '康獻' 이라 는 시호를 받 음.	1335~1408년 (1392~1398년)	57세
		*至仁聖文	1422년 (정종 4)	1회			
		*正義光德	1683년 (숙종 9)	1회			
		*應天肇通 光勳永命	1871년 (고종 8)	1회			
정종	恭靖	仁文恭睿	1400년 (정종 2)	4회	·	1357~1419년 (1398~1400년)	41세
		*溫仁恭勇 順孝	1419년 (세종 1)				
		*溫仁順孝	1420년 (세종 2)				
		*懿文莊武	1681년 (숙종 7)				

왕	시호	존호	존호 설행시기	존호 횟수	비고	생존기간 (재위기간)	즉위 나이
태종	恭定	聖德神功	1418년 (세종 1)	4회	·	1367~1422년 (1400~1418년)	34세
		*文武光孝	1422년 (세종 4)				
		*叡哲成烈	1683년 (숙종 9)				
		*建天體極 大正啓佑	1871년 (고종 8)				
세종	莊憲	*英文睿武 仁聖明孝	1450년 (문종 1)	1회	·	1397~1450년 (1418~1450년)	22세
문종	恭順	*欽明仁肅 光文聖孝	1452년 (단종 1)	1회	·	1414~1452년 (1450~1452년)	37세
단종	없음	恭懿溫文	1455년 (세조 1)	2회	·	1441~1457년 (1452~1455년)	12세
		*純定安莊 景順敦孝	1698년 (숙종 24)				
세조	惠莊	承天體道烈 文英武	1457년 (세조 3)	2회	·	1417~1468년 (1455~1468년)	39세
		*至德隆功 聖神明睿欽 肅仁孝	1468년 (예종 1)				
예종	襄悼	*欽文聖武 懿仁昭孝	1469년 (성종 1)	1회	·	1450~1469년 (1468~1469년)	19세

왕	시호	존호	존호 설행시기	존호 횟수	비고	생존기간 (재위기간)	즉위 나이
덕종	懷簡	*宣肅恭顯 溫文懿敬	1475년 (성종 6)	1회	1471년 (성종 2) 추존	1438~1457년	
성종	康靖	*仁文憲武 欽聖恭孝	1495년 (연산군 1)	1회	.	1457~1494년 (1469~1494년)	13세
연산 군	없음	憲天弘道經 文緯武	1505년 (연산군 11)	1회	폐위로 삭제	1476~1506년 (1494~1506년)	19세
중종	恭僖	*徽文昭武 欽仁誠孝	1545년 (인종 1)	1회	.	1488~1544년 (1506~1544년)	19세
인종	榮靖	*獻文懿武 章肅欽孝	1545년 (명종 1)	1회	.	1515~1545년 (1544~1545년)	30세
명종	恭憲	獻毅昭文光 肅敬孝	.	1회	.	1534~1567년 (1545~1567년)	12세
선조	昭敬	正倫立極盛 德洪烈	1590년 (선조 23)	6회	인조 때 삭제	1552~1608년 (1567~1608년)	16세
		至誠大義格 天熙運	1604년 (선조 37)				
		*啓統光憲 凝道隆祚	1616년 (광해군 8)				
		*貽謨垂裕 廣休延慶	1621년 (광해군 13)				
		*顯文毅武 聖睿達孝	1608년 (광해군 1)				
		*景命神曆 弘功隆業	1892년 (고종 29)				

왕	시호	존호	존호 설행시기	존호 횟수	비고	생존기간 (재위기간)	즉위 나이
광해 군		體天興運俊	1612년	6회	폐위로 삭제	1575~1641년 (1608~1623년)	34세
		德弘功	(광해군 4)				
		神聖英肅欽	1616년				
		文仁武	(광해군 8)				
		敍倫立紀明	1617년				
		誠光烈	(광해군 9)				
		隆奉顯保懋	1618년				
		定重熙	(광해군 10)				
睿哲莊毅章	1620년	폐위로 삭제					
憲順靖	(광해군 12)						
建義守正彰	1622년	폐위로 삭제					
道崇業	(광해군 14)						
원종	恭良	*敬德仁憲 靖穆章孝	1632년 (인조 10)	1회	1627년 (인조 5) 추존	1580~1619	
인조	莊穆	*憲文烈武	1649년	2회	.	1595~1649년 (1623~1649년)	29세
		明肅純孝	(효종 1)				
		*開天肇運	1899년				
		正紀宣德	(고종 36)				
효종	忠宣	*宣文章武	1659년	3회	효종 이후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청나라가 시호를 내렸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음.	1619~1659년 (1649~1659년)	31세
		神聖賢仁	(현종 1)				
		*明義正德	1740년 (영조 16)				
		*欽天達道	1899년				
		光毅弘烈	(고종 36)				
현종	莊恪	*純文肅武	1674년	2회	.	1641~1674년 (1659~1674년)	19세
		敬仁彰孝	(숙종 1)				
		*昭休衍慶	1772년				
		敦德綏成	(영조 48)				

왕	시호	존호	존호 설행시기	존호 횟수	비고	생존기간 (재위기간)	즉위 나이
숙종	僖順	顯義光倫睿	1713년	5회	·	1661~1720년 (1674~1720년)	14세
		聖英烈	(숙종 39)				
		*章文憲武	1720년				
		敬明元孝	(경종 1)				
		*裕謨永運	1753년				
		洪仁峻德	(영조 29)				
		*配天合道	1776년				
경종	恪愍	啓休篤慶	(영조 52)	1회	·	1688~1724년 (1720~1724년)	33세
		*正中協極	1890년				
영조	莊順	*德文翼武	1724년	9회	·	1694~1776년 (1724~1776년)	31세
		純二宣孝	(영조 1)				
		至行純德	1740년				
		英謨毅烈	(영조 16)				
		章義弘倫	1753년				
		光仁敦禧	(영조 29)				
		體天建極	1756년				
		聖功神化	(영조 32)				
		大成廣運	1772년				
		開泰基永	(영조 48)				
		堯明舜哲	1776년				
		乾健坤寧	(영조 52)				
		翼文宣武	1776년				
熙敬顯孝	(정조 1)						
配命垂純	1782년						
景曆洪休	(정조 16)						
中和隆道	1889년						
肅莊彰勳	(고종 26년)						
正文宣武	1889년						
熙敬顯孝	(고종 26년)						

왕	시호	존호	존호 설행시기	존호 횟수	비고	생존기간 (재위기간)	즉위 나이
진중	恪愍	*溫良睿明 哲文孝章	1776년 (정조 1)	1회	1776년 (정조 1) 추존		
장조	없음	*思悼	1762년 (영조 38)	6회	1899년 (고종 36) 추존	1735~1762년	
		*綏德敦慶	1783년 (정조 7)				
		*弘仁景祉	1784년 (정조 8)				
		*章倫隆範	1795년 (정조 19)				
		基命彰休	1899년 (고종 36)				
		*神文桓武	1855년 (철종 6)				
		*贊元憲誠	1855년 (철종 6)				
정조	恭宣	*文成武烈	1800년 (순조 1)	2회	.	1752~1800년 (1766~1800년)	25세
		聖仁莊孝	1899년 (고종 36)				
		*敬天明道	1899년 (고종 36)				
		洪德顯謨	1899년 (고종 36)				
순조	宣恪	*淵德顯道	1827년 (순조 27)	9회	.	1790~1834년 (1800~1834년)	11세
		景仁純禧	1848년				
		*體聖凝命	1848년				
		欽光錫慶	1853년 (철종 4)				
		*繼天配極	1853년 (철종 4)				
		隆元敦休	1857년 (철종 8)				
		*懿行昭倫	1857년 (철종 8)				
熙化浚烈	1858년 (철종 9)						
		*大中至正	1858년 (철종 9)				
		洪勳哲謨	1858년 (철종 9)				

왕	시호	존호	존호 설행시기	존호 횟수	비고	생존기간 (재위기간)	즉위 나이
		*乾始泰亨 昌運弘基	1861년 (철종 12)				
		*高明博厚 剛健粹精	1862년 (철종 13)				
		*啓統垂曆 功裕範	1879년 (고종 16)				
		*文安武靖 英敬成孝	1834년 (헌종 1)				
문조	康穆	*敦文顯武 仁懿孝明	1834년 (헌종 1)	14 회	·	1809~1830년	
		*體元贊化 錫極定命	1847년 (헌종 13)				
		*成憲英哲 睿誠淵敬	1853년 (철종 4)				
		*隆德純功 篤休弘慶	1866년 (고종 3)				
		*洪運盛烈 宣光濬祥	1867년 (고종 4)				
		*堯欽舜恭 禹勤湯正	1868년 (고종 5)				
		*啓天建統 神勳肅謨	1875년 (고종 12)				
		*乾大坤厚 廣業永祚	1876년 (고종 13)				
		*莊義彰倫 行健配寧	1878년 (고종 15)				
		*基泰垂裕 熙範昌禧	1882년 (고종 19)				

왕	시호	존호	존호 설행시기	존호 횟수	비고	생존기간 (재위기간)	즉위 나이
		*立經亨道 成獻昭章 *致中達和 繼曆協紀 *剛粹景穆 峻惠衍祉 *宏猷愼徽 綏緒佑福	1886년 (고종 23) 1890년 (고종 27) 1892년 (고종 29) 1901년 (고종 38)				
헌종	莊肅	*經文緯武 明仁哲孝 *體健繼極 中正光大 *至聖廣德 弘運章化	1850년 (철종 1) 1853년 (철종 4) 1866년 (고종 3)	3회	.	1827~1849년 (1834~1849년)	8세
철종	忠敬	熙倫正極 粹德純聖 *文顯武成 獻仁英孝 *欽命光道 敦元彰化	1863년 (철종 14) 1863년 (고종 1) 1866년 (고종 3)	3회	.	1831~1863년 (1849~1863년)	19세
고종	없음	統天隆運 肇極敦倫 正聖光義 明功大德 堯峻舜徽 禹謨湯敬 應命立紀 至化神烈 巍勳洪業 啓基宣曆	1872년 (고종 9) 1888년 (고종 25) 1889년 (고종 26) 1892년 (고종 29) 1899년 (고종 36)	7회	.	1852~1919년 (1863~1907년)	12세

왕	시호	존호	존호 설행시기	존호 횟수	비고	생존기간 (재위기간)	즉위 나이
		乾行坤定 英毅弘休 文憲武章 仁翼貞孝	1901년 (고종 38) 1918년 (순종 1)				
순종	없음	文溫武寧 敦仁誠敬	1926년	1회	.	1874~1926년 (1907~1910년)	34세

* 『조선왕조실록』에서 재정리함.

<부표 2> 조선시대 왕비의 존호

제왕	왕후	칭호	재위 기간	생존 기간	존호(설행시기)	비고 (존호횟수)
목조 (穆祖)	효공왕후 (孝恭王后)	추존	?	?	孝妃(태조1) 孝恭王后(태종11)	· (2회)
익조 (翼祖)	정숙왕후 (貞淑王后)	추존	?	?	貞妃(태조1) 貞淑王后(태종11)	· (2회)
도조 (度祖)	경순왕후 (敬順王后)	추존	?	?	敬妃(태조1) 敬順王后(태종11)	· (2회)
환조 (桓祖)	의혜왕후 (懿惠王后)	추존	?	?	懿妃(태조1) 懿惠王后(태종11)	· (2회)
태조 (太祖)	신의왕후 (神懿王后)	추존	추존	1337~ 1391년 (55년)	承仁順聖神懿太后 (태종8) 承仁順聖神懿王后 (숙종9)	개국 전 사망 (2회)
	신덕왕후 (神德王后)	왕비	1392~ 1396년	1356~ 1396년 (41세)	神德王后(태조5) 順元顯敬(현종10)	태종에 의해 후 궁으로 강등, 현종 때 복위 (2회)
정종 (定宗)	정안왕후 (定安王后)	왕비	1398~ 1400년	1355~ 1412년 (59세)	順德(정종2) 溫明莊懿(숙종7)	최초 왕 대비 (2회)
		왕대비	1400~ 1412년			
태종 (太宗)	원경왕후 (元敬王后)	왕비	1400~ 1418년	1365~ 1420년 (56세)	厚德(태종18) 彰德昭烈(세종6)	(2회)
		왕대비	1418~ 1420년			
세종 (世宗)	소헌왕후 (昭憲王后)	왕비	1418~ 1446년	1395~ 1446년 (52세)	宣仁齊聖(문종13)	(1회)
문종 (文宗)	현덕왕후 (顯德王后)	왕비	1436~ 1441년	1418~ 1441년 (24세)	仁孝順惠(단종2)	(1회)
단종 (端宗)	정순왕후 (定順王后)	왕비	1454~ 1455년	1440~ 1521년 (82세)	懿德(세조1) 端良齊敬(숙종24)	왕대비 폐출 (2회)
		왕대비	1455~ 1457년			

제왕	왕후	칭호	재위 기간	생존 기간	존호(설행시기)	비고 (존호 횟수)	
세조 (世祖)	정희왕후 (貞熹王后)	왕비	1455~ 1468년	1445~ 1499년 (55세)	慈聖(세조3) 欽仁景德宣烈明順元 淑徽愼惠懿(예종1) 神憲(성종2)	정비, 성종 수 렴청정 (3회)	
		왕대비	1469~ 1494년				
		대왕 대비	1494~ 1498년				
덕종 (德宗)	소혜왕후 (昭惠王后)	왕비	1470~ 1475년	1437~ 1504년 (68세)	仁粹(성종2) 慈淑(연산군3) 徽肅明懿(연산군10)	정비, 추존(성 종 즉위 후) (3회)	
		왕대비	1475~ 1494년				
		대왕 대비	1494~ 1504년				
예종 (睿宗)	장순왕후 (章順王后)	왕비	1460~ 1461년	1445~ 1461년 (17세)	徽仁昭德(성종2)	정비, 세자빈 때 사망, 예종 즉 위후 추 존 (1회)	
		안순왕후 (安順王后)	왕비	1468~ 1469년	1447~ 1498년 (52세)	仁惠(성종2) 明懿(연산군3) 昭徽齊淑(연산군5)	계비 (3회)
			왕대비	1469~ 1494년			
성종 (成宗)	공혜왕후 (恭惠王后)	왕비	1469~ 1474년	1456~ 1474년 (19세)	徽懿愼肅(연산군2)	(1회)	
	폐비 윤씨 (廢妃尹氏)	왕비	1476~ 1479년	1455~ 1482년 (28세)		폐위 후 사사됨	
	정현왕후 (貞顯王后)	왕비	1480~ 1495년	1462~ 1530년 (69세)	慈順(연산군3) *和惠(연산군11) 昭懿欽淑(중종25)	왕 3대 를 지나 고도 대 왕 대 비 가 되지 못함 (3회)	
왕대비		1495~ 1506년 1506~ 1530년					

제왕	왕후	칭호	재위 기간	생존 기간	존호(설행시기)	비고 (존호 횟수)
연산군 (燕山君)	폐비 신씨 (廢妃愼氏)	왕비	1494~ 1506년	1476~ 1536년 (61세)	齊仁元德(연산군11)	거창군 부인으로 강등 (1회)
중종 (中宗)	단경왕후 (端敬王后)	왕비	1506년 9월 18일~ 9월 25일	1487~ 1557년 (71세)	恭昭順烈(영조15)	폐위 (1회)
	장경왕후 (章敬王后)	왕비	1507~ 1515년	1491~ 1515년 (25세)	淑愼明惠(중종10) 宣昭懿淑(명종2)	(2회)
	문정왕후 (文定王后)	왕비	1517~ 1544년	1501~ 1565년 (65세)	聖烈(명종2) 仁明(명종2)	계비, 명종 수렴청정 (2회)
왕대비		1544~ 1545년				
대왕 대비		1545~ 1565년				
인종 (仁宗)	인성왕후 (仁聖王后)	왕비	1544~ 1545년	1514~ 1577년 (64세)	孝順(선조10) 恭懿(명종2)	정비, 왕 3대 를 지나 고도 대 왕 대 비 가 되지 못함. (2회)
		왕대비	1545~ 1577년			
명종 (明宗)	인순왕후 (仁順王后)	왕비	1545~ 1567년	1532~ 1575년 (44세)	宣烈懿聖(선조8)	정비, 선조 수 렴청정 (1회)
		왕대비	1567~ 1575년			
선조 (宣祖)	의인왕후 (懿仁王后)	왕비	1569~ 1600년	1555~ 1600년 (46세)	章聖(선조23) 徽烈(선조37) 貞憲(광해군2) 敬穆(고종29) *顯淑, 莊淑, 明德 (광해군8)	정비 (5회)

제왕	왕후	칭호	재위 기간	생존 기간	존호(설행시기)	비고 (존호 횟수)
	인목왕후 (仁穆王后)	왕비	1602~ 1608년	1584~ 1632년 (49세)	昭聖(선조37) 貞懿(광해군2) 明烈(인조2) 光淑莊定(인조10) 正肅(고종29)	계비, 1618~ 1623년 폐위 후 복위 (5회)
왕대비		1608~ 1618년 1623~ 1624년				
대왕대 비		1624~ 1632년				
광해군 (光海 君)	폐비 유씨 (廢妃柳氏)	왕비	1608~ 1623년	1575~ 1623년 (49세)		폐위
원종 (元宗)	인헌왕후 (仁獻王后)	왕비	추존	1578~ 1626년 (49세)	敬毅貞靖(인조10)	인조 생 모 (1회)
인조 (仁祖)	인렬왕후 (仁烈王后)	왕비	1623~ 1635년	1594~ 1636년 (43세)	正裕(고종36) 明德貞順(효종2)	정비 (2회)
		왕비	1638~ 1649년	1624~ 1688년 (65세)	慈懿(효종2) 恭愼(현종2) 徽獻(숙종2) 康仁(숙종12) 淑穆(고종36)	계비, 예 송 논 쟁 중심 인물 (5회)
		왕대비	1649~ 1659년			
대왕 대비	1659~ 1688년					
효종 (孝宗)	인선왕후 (仁宣王后)	왕비	1649~ 1659년	1618~ 1674년 (57세)	孝肅(현종2) 敬烈明獻(현종15)	(2회)
		왕대비	1659~ 1674년			
현종 (顯宗)	명성왕후 (明聖王后)	왕비	1659~ 1674년	1624~ 1683년 (60세)	顯烈(숙종2) 禧仁(영조48) 貞獻文德(숙종9)	(3회)
		왕대비	1674~ 1683년			
숙종 (肅宗)	인경왕후 (仁敬王后)	왕비	1674~ 1680년	1661~ 1680년 (20세)	光烈(숙종39) 孝莊明顯(경종2) 宣穆(영조29) 惠聖(영조52) 純懿(고종27)	정비 (5회)

제왕	왕후	칭호	재위 기간	생존 기간	존호(설행시기)	비고 (존호 횟수)	
	인현왕후 (仁顯王后)	왕비	1681~ 1689년 1694~ 1701년	1667~ 1701년 (35세)	孝敬(숙종39) 淑聖(영조29) 莊純(영조52) 元化(고종27) 懿烈貞穆(경종2)	계비, 1689~ 1694년 폐위 후 복위 (5회)	
	희빈 장씨 (禧嬪張氏)	왕비	1689~ 1694년	1659~ 1701년 (43세)		궁녀에 서 왕 비였 다가 강등	
	인원왕후 (仁元王后)	왕비	1702~ 1720년	1724~ 1757년	1687~ 1757년 (71세)	惠順(숙종39) 慈敬(경종2) 獻烈(영조2) 光宣(영조16) 顯翼(영조16) 康聖(영조23) 貞德(영조27) 壽昌(영조28) 永福(영조29) 隆化(영조32) 徽靖(영조52) 正運(고종27) 定懿章穆(영조33)	계비 (13회)
		왕대비	1720~ 1724년				
경종 (景宗)	단의왕후 (端懿王后)	추존	추존	1686~ 1718년 (33세)	恭孝定穆(영조2)	세자빈 때 사망 (1회)	
	선의왕후 (宣懿王后)	왕비 왕대비	1720~ 1724년 1724~ 1730년	1705~ 1730년 (26세)	敬純(영조2) 孝仁惠睦(영조6)	(2회)	
영조 (英祖)	정성왕후 (貞聖王后)	왕비	1724~ 1757년	1692~ 1757년 (34세)	惠敬(영조16) 莊愼(영조28) 康宣(영조32) 恭翼(영조48) 仁徽(영조52) 昭獻(정조2) 元烈(고종27) 端穆章和(정조2)	정비 (8회)	

제왕	왕후	칭호	재위 기간	생존 기간	존호(설행시기)	비고 (존호횟수)
	정순왕후 (貞純王后)	왕비	1759~ 1776년	1745~ 1805년 (61세)	睿順(영조48) 聖哲(영조52) 莊僖(정조2) 惠徽(정조7) 翼烈(정조8) 明宣(정조11) 綏敬(정조19) 光獻(순조4) 隆仁(순조4) 正顯(고종26) 昭肅靖憲(순조5)	계비, 순조 수 렴청정 (11회)
왕대비		1776~ 1800년				
대왕 대비		1800~ 1805년				
진종 (眞宗)	효순왕후 (孝純王后)	추존	추존	1715~ 1751년 (37세)	敬純(영조2) 獻烈(영조2) 光宣(영조16) 顯翼(영조16) 康聖(영조23) 貞德(영조27) 壽昌(영조28) 永福(영조29) 隆化(영조32) 徽靖(영조52) 徽貞賢淑孝純(정 조즉위)	추존 (11회)
장조 (莊祖)	헌경왕후 (獻敬王后)	추존	추존	1735~ 1815년 (81세)	孝康(정조2) 慈禧(정조7) 貞宣(정조8) 徽穆(정조19) 裕靖(철종5) 仁哲啓聖(고종36)	추존 (6회)
정조 (正祖)	효의왕후 (孝懿王后)	왕비	1776~ 1800년	1753~ 1821년 (69세)	莊徽(고종36) 睿敬慈粹(순조21)	(2회)
왕대비	1800~ 1821년					
순조 (純祖)	순원왕후 (純元王后)	왕비	1802~ 1834년	1789~ 1857년 (69세)	明敬(순조27) 文仁(헌종3) 光聖(헌종7) 隆禧(헌종14)	정비 헌종, 철종 수 렴청정

제왕	왕후	칭호	재위 기간	생존 기간	존호(설행시기)	비고 (존호횟수)	
		왕대비	1834년		正烈(철종2) 宣徽(철종3) 英德(철종4) 慈獻(철종8) 顯倫(철종9) 洪化(철종12) 神運(철종13) 粹穆(철종16) 睿成弘定(철종8)	(13회), 수림청 정의공 으로 올 린 존호 2회 (光聖, 宣徽)	
		대왕 대비	1834~ 1857년				
문조 (文祖)	신정왕후 (神貞王后)	세자빈	1819~ 1830년	1808~ 1890년 (83세)	孝裕(헌종3) 獻聖(헌종14) 宣敬(철종2) 正仁(철종4) 慈惠(철종10) 弘德(고종1) 純化(고종3) 文光(고종3) 元成(고종4) 肅烈(고종5) 明粹(고종6) 協天(고종10) 隆穆(고종12) 壽寧(고종14) 禧康(고종15) 顯定(고종16) 徽安(고종20) 欽倫(고종23) 洪慶(고종24) 泰運(고종25) 昌福(고종25) 熙祥(고종27) 懿謨(고종36) 睿憲敦章(고종29) 啓祉(고종39) 景勳哲範(고종27)	정비, 고종 수 림청정 (26회)	
		왕대비	1834~ 1857년				
		대왕 대비	1857~ 1890년				
헌종 (憲宗)	효현왕후 (孝顯王后)	왕비	1837~ 1843년	1828~ 1843년 (17세)	端聖(철종4) 粹元(고종3) 敬惠靖順(철종3) 孝顯(헌종9)	(4회)	

제왕	왕후	칭호	재위 기간	생존 기간	존호(설행시기)	비고 (존호 횟수)
	효정왕후 (孝定王后)	왕비	1844~ 1849년	1831~ 1903년 (73세)	明憲(철종2) 淑敬(철종4) 睿仁(철종10) 正穆(고종1) 弘聖(고종3) 章純(고종3) 貞徽(고종10) 莊昭(고종25) 端禧(고종27) 粹顯(고종27) 懿獻(고종29) 康綏(고종36) 裕寧(고종39) 慈溫恭安(고종41)	(14회)
		대비	1849~ 1857년			
		왕대비	1857~ 1897년			
		태후	1897~ 1903년			
철종 (哲宗)	철인왕후 (哲仁王后)	왕비	1851~ 1863년	1837~ 1878년 (42세)	明純(철종14) 徽聖(고종3) 正元(고종3) 粹寧(고종10) 敬獻莊穆(고종15)	(5회)
		대비	1863~ 1878년			
고종 (高宗)	명성태황후 (明成太皇后)	황후	1866~ 1895년	1851~ 1895년 (45세)	孝慈(고종9) 元聖(고종25) 正化(고종26) 合天(고종29) 洪功(고종37) 誠德(고종39) 齊徽烈穆(순종14)	(7회)
순종 (純宗)	순명효황후 (純明孝皇后)	왕세자 빈	1882~ 1897년	1872~ 1904년 (33세)	敬顯(순종 21) 成徽 純明孝皇后(고종 41)	(3회)
		황태자 비	1897~ 1904년			
	순정효황후 (純貞孝皇后)	황후	1907~ 1910년	1894~ 1966년 (73세)		
		이왕비	1910~ 1926년			
이왕 대비	1926~ 1947년					

*황정연, 「조선 태조비 神德王后 貞陵의 조성과 封陵 고찰」, 『서강인문논총』 46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253-254쪽을 참고하여 『조선왕조실록』에서 재정리함.